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0.11

주 성 훈

## 예산현안분석 제38호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총괄 | 김호성 (예산분석실장)

조정 |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

임재봉 (법안비용추계2팀장)

작성 | 주성훈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분석관)

지원 | 조혜정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현안분석」은 국회가 관심 있게 다룰 재정 현안이나 정책 이슈에 대해 객관성 있는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팀 02-788-4650 bce@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0. 11

주 성 훈



# 목 차

## 요 약

### I. 서 론 / 23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3
- 2. 연구내용 ..... 25

### II. 다문화가족 현황 / 26

- 1. 다문화가족 정의 ..... 26
- 2. 국제결혼 현황 ..... 28
- 3.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 32
- 4. 결혼이민자 자녀현황 ..... 36
- 5.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현황 ..... 38

### III.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및 평가 / 50

- 1.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 50
  - 가. 개요 ..... 50
  - 나. 법무부 소관 사업 ..... 53
  - 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 ..... 54

|                              |    |
|------------------------------|----|
| 라.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         | 56 |
| 마.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         | 56 |
|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       | 58 |
| 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 .....       | 61 |
| 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       | 61 |
| 자.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         | 62 |
| 차.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         | 62 |
| 2.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 | 69 |
| 3.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    | 69 |
| 가. 유사사업 중복 검토 .....          | 69 |
| 나. 부부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 70 |
| 다. 해체 다문화가족 보호 필요 .....      | 71 |
| 라. 다문화전문인력 효율적 운영 필요 .....   | 72 |

#### IV. 외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시사점 / 74

|                     |     |
|---------------------|-----|
| 1. 개요 .....         | 74  |
| 2. 동화주의 유형 .....    | 76  |
| 가.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 | 76  |
| 나. 독일의 다문화정책 .....  | 82  |
| 다. 일본의 다문화정책 .....  | 91  |
| 3. 다문화주의 유형 .....   | 97  |
| 가. 미국의 다문화정책 .....  | 97  |
| 나.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 | 102 |
| 다. 호주의 다문화정책 .....  | 109 |
| 4. 실용주의 유형 .....    | 113 |

|                                  |     |
|----------------------------------|-----|
| 가. 덴마크의 다문화정책 .....              | 113 |
| 5. 정책적 시사점 .....                 | 118 |
| 가.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정책 필요 .....       | 118 |
| 나. 정책총괄부처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 119 |
| 다.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       | 120 |

## V.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 운용 및 제도 개선 과제 / 122

|                                   |     |
|-----------------------------------|-----|
| 1. 예산 운용 .....                    | 122 |
| 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이관 ..... | 122 |
| 나.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        | 127 |
|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인력 인건비 지원 .....    | 134 |
| 라.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   | 140 |
| 2.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 .....   | 146 |
|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급 .....     | 146 |
| 나. 거점센터 시도별 1개소 설치 .....          | 150 |
| 다.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       | 152 |
|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제도 개선 .....        | 154 |
| 3. 입법 과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방향 .....  | 156 |
| 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법적 근거 마련 .....     | 156 |
| 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      | 161 |
|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별 업무 규정 .....      | 165 |

## VI. 결 론 / 169

### 참고문헌

## 부 록

|                                |     |
|--------------------------------|-----|
| 1. 결혼이민자 현황 .....              | 173 |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 177 |
| 3. 시·도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 .....     | 182 |
| 4.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 ..... | 194 |
|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창업지원연계실적 .....  | 206 |

## 표 목차

|   |    |
|---|----|
| [표 1]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현황 .....                 | 27 |
| [표 2] 결혼이민자 지역별 현황 .....                  | 27 |
| [표 3] 국제결혼 연도별 추이 .....                   | 28 |
| [표 4] 국제결혼 국적별 현황 .....                   | 29 |
| [표 5] 국제결혼 도농별 현황 .....                   | 30 |
| [표 6] 농림어업종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 | 31 |
| [표 7] 국제결혼 시·도별 현황 .....                  | 31 |
| [표 8] 국제결혼 시·군·구별 현황 .....                | 32 |
| [표 9]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                  | 33 |
| [표 10] 결혼이민자의 입국년도 .....                  | 33 |
| [표 1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입국년도 .....            | 35 |
| [표 12]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별 분류 .....              | 36 |
| [표 13] 결혼이민자 자녀 시·도별 분류 .....             | 37 |
| [표 14]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보육·교육시설 이용비율 .....     | 38 |
| [표 15]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                 | 39 |
| [표 16] 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 시·도 분포 .....           | 40 |
| [표 17] 결혼이민자의 연령분포 .....                  | 41 |
| [표 18]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연령분포 .....              | 42 |
| [표 19]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평균 연령 .....           | 43 |
| [표 20] 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 .....                  | 44 |
| [표 2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학력수준 .....            | 45 |
| [표 22] 결혼이민자 학력수준별 배우자의 학력수준 분포 .....     | 46 |
| [표 23]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              | 47 |

|  |     |
|--|-----|
| [표 24]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월평균 가구소득 .....             | 48  |
| [표 2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처별 예산현황 .....                | 51  |
| [표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세부 구성단계 .....                  | 54  |
| [표 27]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 .....        | 58  |
| [표 2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현황 .....                    | 64  |
| [표 2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성과 .....                  | 65  |
| [표 3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적 .....                   | 66  |
| [표 31]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 현황 .....                | 66  |
| [표 32]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현황 .....               | 67  |
| [표 3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현황 .....                | 67  |
| [표 34]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참여를 위한 지원 요구 설문조사 결과 ..... | 71  |
| [표 35] 다문화전문인력 양성 현황 .....                     | 72  |
| [표 36] 프랑스 이민자 및 외국인 변화추이 .....                | 76  |
| [표 37] 프랑스 이민자 구성 .....                        | 77  |
| [표 38] 독일 외국인 인구 추이 .....                      | 82  |
| [표 39] 독일 출생률 .....                            | 83  |
| [표 40] 독일 시기별 이주민 정책 .....                     | 86  |
| [표 41] RAA의 주요 언어 프로그램 .....                   | 91  |
| [표 42] 일본 국적별 외국인 등록자 추이 .....                 | 92  |
| [표 43] 다문화공생플랜의 주요 내용 .....                    | 94  |
| [표 44] 다문화공생 관련 단체 역할분담 .....                  | 97  |
| [표 45] 미국 영주권 취득자의 출신지역 및 출신국가 .....           | 98  |
| [표 46] 캐나다 이민자 추이 .....                        | 102 |
| [표 47]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세부내용 .....                   | 108 |
| [표 48] 호주 해외출생자 규모 .....                       | 109 |
| [표 49] 덴마크 내 이민자 및 이민후손의 출신국가별 분류 .....        | 114 |
| [표 5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연도별 예산재원 추이 .....       | 123 |
| [표 51]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                       | 124 |

|  |     |
|--|-----|
| [표 52] 결혼이민자의 취업직종 .....                     | 131 |
| [표 5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움 .....       | 132 |
| [표 54]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만난 경로 .....               | 135 |
| [표 55] 결혼이민자의 결혼특성별 배우자관계 만족도 .....          | 136 |
| [표 56] 결혼이민자 국적별 상담현황 .....                  | 137 |
| [표 57] 결혼이민자 상담주제 .....                      | 138 |
| [표 5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세부명세 .....              | 139 |
| [표 59]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사업 대상아동 정부추계 .....         | 141 |
| [표 60] 2011년 보육시설 이용률 추정 .....               | 141 |
| [표 61]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폭 추정 .....                 | 142 |
| [표 62] 다문화아동 보육시설 이용현황 .....                 | 142 |
| [표 63]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월평균 가구소득 .....           | 144 |
| [표 6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내역 .....              | 146 |
| [표 6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 결혼이민자 수 .....            | 148 |
| [표 66]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배분현황 .....               | 149 |
| [표 67] 거점센터 현황 .....                         | 150 |
| [표 68] 병합형센터 지정현황 .....                      | 152 |
| [표 6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실적 .....               | 156 |
| [표 7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이용비율 .....                | 157 |
| [표 71]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생활에서 현재 가장 힘든 점 ..... | 159 |
| [표 7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별 주요 업무 .....             | 165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성과 ..... | 65  |
| [그림 2] 독일 외국인 인구 추이 .....     | 83  |
| [그림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도 .....  | 129 |

## 요 약

- 본 보고서는 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06년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족 현황, 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과제별로 개선과제 제시
  - 예산 운용의 경우 2011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보육료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등 예산편성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원 필요,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등 운영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방향도 입법과제로 제시

## II. 다문화가족 현황

### □ 다문화가족 정의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한국인(출생), 귀화+한국인(출생)인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제2조)
- 결혼이민자 수는 181,671명(2010년 1월 기준)
  - 성별로는 여성 161,999명(89.7%), 남성 19,672명(10.3%)
  - 결혼이민자 자녀는 121,935명(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87.2% 차지)

### □ 국제결혼 현황

-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2005년 13.5%를 정점으로 2009년 10.8%를 차지하고 2004년 이후 10% 이상 계속 유지

- 농어촌지역 농림어업종사자 38.7%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2009년 기준)

#### □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181,711명 중 중국(한국계)이 59,346명(32.7%), 중국(한족 등) 51,348명(28.3%)으로 중국 출신이 61%를 차지
- 2000년대 초기에는 중국(한국계), 태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가 주로 입국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중국(한족 등)으로 범위 확대

#### □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현황

- 결혼이민자 거주지역은 동 지역 거주비율 72.1%, 읍·면 지역 거주비율 27.9%로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
-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20대 이하가 전체의 41.3%를 차지
  - 여성 결혼이민자(33.3세)와 한국인 남편(43.2세)간 평균연령 차이는 약 10세(캄보디아는 17.5세, 베트남은 17.0세)
- 여성 결혼이민자의 36.1%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
  -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간 학력수준 격차가 심하여 초등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여성 결혼이민자 51%가 한국인 배우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
- 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음.
  - 한국복지패널(2009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32만원이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78.6%가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저소득층에 해당
  - 월평균 100~200만원 미만이 38.4%, 200~300만원 미만이 18.7%

### Ⅲ.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및 평가

#### 1.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2010년 11월 현재 8개 부처에서 30개 세부사업을 수행
  - 예산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으로 급증
  - 2011년 예산안은 88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57억원(41%) 증액
  -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안의 특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행 159개소에서 200개소로 지원 대상 확대(114억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 수행 인력을 현행 2,491명에서 3,200명으로 확대(242억원)
    - 보건복지부가 다문화가정보육료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112억원)

[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처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명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총계                               | 32,581 | 47,274 | 62,914 | 88,668 |
| [여성가족부]                          | 24,062 | 29,551 | 41,937 | 55,524 |
| 다문화가족지원                          | 816    | 814    | 1,275  | 1,489  |
|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br>중개업 관리 | 279    | 100    | 450    | 994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2,920  | 4,994  | 8,278  | 11,378 |
|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 18,152 | 18,943 | 24,354 | 33,708 |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관리                | 1,500  | 1,350  | -      | 1,494  |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 16,652 | 16,652 | 19,800 | 24,194 |
|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      | 941    | 2,400  | 2,400  |
|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 -      | 473    | 2,154  | 4,418  |
|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 -      | -      | 2,000  | 1,785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895    | 3,500  | 4,730  | 4,770  |
|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 176    | 2,298  | 2,249  | 2,539  |
| - 이주여성 긴급구호 및 상담전화 운영            | 719    | 1,202  | 2,481  | 2,231  |
| 여성일자리 창출 및 기반조성                  | -      | 200    | 850    | 1,400  |
|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 -      | 200    | 850    | 1,400  |
| 다문화 농촌정착지원                       | 1,000  | 1,000  | -      | -      |
| [법무부]                            | 1,530  | 3,660  | 4,670  | 4,788  |
|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 1,530  | 2,460  | 1,861  | 1,868  |
| 사회통합이수제                          | -      | 1,200  | 2,809  | 2,920  |
| [교육과학기술부]                        | 3,934  | 6,500  | 6,200  | 6,300  |
|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 434    | 800    | 500    | 600    |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      | 2,200  | 1,500  | 1,500  |
| - 다문화가정 학생 1:1멘토링 근로장학금<br>지원    | -      | 2,200  | 1,500  | 1,500  |
|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지원                  | 3,500  | 3,500  | 4,200  | 4,200  |
| [고용노동부]                          | -      | 52     | 467    | -      |
|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 -      | 52     | 50     | -      |
|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br>개발·연구     | -      | 52     | 50     | -      |
| 민간취업기관지원                         | -      | -      | 417    | -      |
|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                | -      | -      | 417    | -      |
| [행정안전부]                          | 469    | 2,429  | 820    | 1,360  |
|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 469    | 2,429  | 820    | 1,360  |
| -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 169    | 510    | 250    | 250    |
| - 다문화정착을 위한 지도자교육                | -      | 928    | 348    | 348    |
|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개선            | 300    | 180    | 180    | 700    |
| - 지자체 공무원 순회교육, 외국인주민 실<br>태조사   | -      | 38     | 42     | 42     |

| 세부사업 명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 외국인주민 취업안내교육 등          | -            | 773          | -            | -             |
| -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           | -            | -            | -            | 20            |
| <b>[문화체육관광부]</b>          | <b>2,586</b> | <b>4,048</b> | <b>5,644</b> | <b>5,982</b>  |
|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 650          | 580          | 356          | 83            |
|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원 양성지원        |              |              |              |               |
| 선진도서관 추진 및 미래지향서비스 환경개선   | -            | 182          | 347          | 570           |
| -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     |              |              |              |               |
| 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               | 54           | 82           | 580          | 560           |
| -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래동화 콘텐츠 개발보급 | 39           | 50           | 500          | 500           |
| - 다문화체험전시                 | 15           | 32           | 80           | 60            |
| 디지털정보자원 확충                | 150          | 50           | 100          | 80            |
| - 디브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       |              |              |              |               |
|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 -            | 800          | 1,970        | 1,970         |
| 국립중앙박물관                   | 63           | 37           | 37           | 37            |
| - 다문화교육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       |              |              |              |               |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 100          | 100          | 1,100        | 1,500         |
| - 다문화가족 생활체육지원            |              |              |              |               |
| 이주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 | -            | 500          | 750          | 750           |
| 국립어린이박물관 운영               | -            | 95           | 17           | 17            |
| -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문화체험교육    |              |              |              |               |
|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          | 169          | 202          | 150          | 200           |
| -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조사          |              |              |              |               |
| 공연활동 지원                   |              |              | 200          | 190           |
| - 다문화가정대상 초청축제            |              |              |              |               |
|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              |              | 12           | -             |
| - 다문화가정 대상 세계악기 체험        |              |              |              |               |
| 국악원 공연활동                  |              |              | 25           | 25            |
| -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연            |              |              |              |               |
|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 1,400        | 1,420        | -            | -             |
| <b>[농림수산식품부]</b>          | <b>-</b>     | <b>426</b>   | <b>1,176</b> | <b>1,176</b>  |
| 농업인 교육훈련                  | -            | 426          | 1,176        | 1,176         |
| - 이주여성농업인교육               |              |              |              |               |
| <b>[방송통신위원회]</b>          | <b>-</b>     | <b>608</b>   | <b>2,000</b> | <b>2,387</b>  |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 -            | 608          | 2,000        | 2,387         |
|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제작           |              |              |              |               |
| <b>[보건복지부]</b>            | <b>-</b>     | <b>-</b>     | <b>-</b>     | <b>11,151</b> |
| 영유아보육료지원                  | -            | -            | -            | 11,151        |
| - 다문화가정보육료지원              |              |              |              |               |

## 2.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시·도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수행
  - 16개 시·도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60억원, 2009년 143억원, 2010년 97억원, 2011년 예산안은 108억원을 편성
  - 16개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46억원, 2009년 110억원, 2010년 127억원, 2011년 예산안은 167억원을 편성

## 3.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 유사사업 중복 검토
  - 결혼이민자 일자리 제공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유사한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
  - 다문화 인식개선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사한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
  -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육사업”을 수행
- 부부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한 부부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필요
- 해체 다문화가족 보호 필요
  -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소가 중앙 1개소, 지역 6개소가 설치된 것에

불과하여 16개 시·도에 1개씩 상담소가 설치되도록 예산증액 필요

- 가정해체 이후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안정, 취업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필요

#### □ 다문화전문인력 효율적 운영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의 다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안 모색
-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IV. 외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다문화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다문화정책 선행유형 검토 필요

#### □ 동화주의 유형

- 프랑스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프랑스가 추구하는 공화주의에 동화시키기 위한 동화주의 모델 추구
  - 프랑스는 혁명 이념인 공화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다문화정책 채택
- 독일 정부는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여 국적 및 난민, 이민, 망명 등 이주와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단일과정으로 규정하여 참여를 의무화
  -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연방정부의 권한, 역할 및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일본 다문화정책의 특징은 지방정부 중심의 다문화공생정책 추진
  - 일본은 중앙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앙정부는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

#### □ 다문화주의 유형

-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다원주의
  - 공적 영역에서는 미국적 가치로의 통합을 강조하는 동화주의를 강조하지만, 사적 영역은 다양한 소수집단의 적응과 문화존중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를 인정
- 캐나다 정부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정책으로 채택
  -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을 토대로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합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주의는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기초 정책으로 정착
- 호주정부는 1973년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

#### □ 실용주의 유형

- 덴마크 다문화정책은 덴마크 사회의 필요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철저한 실용주의에 기반

#### □ 정책적 시사점

-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필요
  -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로 하달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위주의 정책 수행
  - 중앙이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전반적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 부여
  -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활성화할 필요

- 정책총괄부처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프랑스는 4개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 를 신설하였고, 독일은 “이민과 난민을 위한 연방청” 을 연방 내무부에 신설
  -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처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면 유사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을 방지하고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 미국의 Even Starts 프로그램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에 부분적으로 도입 가능
  - 호주의 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 독일의 RAA 프로그램은 독일어 교육뿐만 아니라 모국어 교육에도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다문화 언어교육에서 참고

#### IV.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 운용 및 제도개선 과제

##### 1. 예산 운용

######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이관

- 여성발전기금 편성의 문제점
  -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는 여성발전기금이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기금 스스로 존치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일반회계로 이관필요
  - 기금은 부담금의 축소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동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경정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는 등 사업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 일반회계보다 취약
  -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기금사업이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필요

#### □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중복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유사한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사업효율성 검토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는 취·창업지원은 연계실적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센터가 취·창업교육이라기 보다는 문화강좌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효율성 검토 필요
-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조정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된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등에 한정되고 연계실적이 7.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통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일원화 필요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인력 인건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지원사업의 문제점
  - 상담인력의 92.4%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어 상담사업 질 저하
  - 서울 영등포구는 상담인력을 2명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나 부산 사상구는 상담인력을 65명 확보. 그러나 결혼이민자 수는 서울 영등포구가 4,404명이고 부산 사상구는 734명으로 상담인력 운영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 상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 여성가족부가 지침에서 다문화가족센터가 수행할 기본사업으로 “상담

지원”을 규정한 것이라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인원 및 상담실적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 □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 소득상위 30%(2010년 436만원-4인기준) 이상에 속하는 가구는 다문화가정일지라도 생활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득계층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소득기준 설정 필요

## 2.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센터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임
- 사업대상인 결혼이민자 수, 한국어교육인원·상담실적 등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기본운영비 차등배분 기준 마련

#### □ 거점센터 시·도별 1개소 설치

- 거점센터 권역별 선정의 문제점
  - 권역별로 지정되어 현행 행정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매칭(matching)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거점센터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
- 6개 권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점센터를 16개 시·도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확대 필요

#### □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 2010년 지정된 병합형센터의 경우 수도권(75%)을 위주로, 시(91%)

지역에 위치한 건강가정센터 위주로 지정하여 사업수행기관이 수도권 위주 또는 도시 위주로 편중되어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제도 개선

- 사업수행이 우수한 센터에 대하여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고 센터평가를 취합하여 시·도별 평균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 사업수행이 우수한 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체계 마련 필요

3. 입법 과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 방향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한국어교육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어교육 확대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필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52호)을 근거로 설치
-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별 업무 규정

- 현행법을 개정하여 중앙센터-광역센터-지역센터의 센터별 구분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 필요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 형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결혼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이르러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5년 13.5%를 정점으로 2004년 이후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종사자의 38.7%(2009년 기준)는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6~7년이 경과하면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의 3명 중 1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나 단일민족에 대한 신념이 뿌리 깊은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여 다문화사회로 진행하는데 험로가 예측된다.

최근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고<sup>1)</sup> 단순노무직이 대다수인 한국인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43세이다. 향후 10년 내지 15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 예상되므로 다문화가족 소득수준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현재 만 12세 이하가 대다수(87.2%)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빈곤, 사회적 차별 등에 따른 정체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를

---

1)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78.6%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이므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구소득(332만원)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정신 병력이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가 피살되거나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논란이 되는 등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배우자 상호간에 도구적 성격이 가미되어 한국인 남편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생활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갈등상황에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족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갈등이 발생할 경우 결혼이민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지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06년 12억원, 2007년 39억 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2008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 예산안 887억원으로 다문화가족 증가와 더불어 사업예산도 급증하는 실정이다. 서민희망·미래대비를 위한 2011년 예산안의 경우 서민희망 취약계층별 4대 과제의 하나로 “함께 하는 다문화 사회” 건설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을 확대하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06년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족 현황,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를 살펴본 후 개선과제를 예산 운용, 제도 개선 및 입법 과제의 영역에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 운용의 경우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

2)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한 최근 3년간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상담건수가 2008년 2만 6634건에서 2009년 5만 49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등 예산편성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원 필요,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등 운영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방향도 입법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개 부처(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현황을 국적, 자녀, 사회·인구학적 현황(거주지역, 연령, 소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유사사업 중복 여부, 다문화전문인력 효율적 활용 등을 검토한다. 셋째, 외국의 다문화정책을 동화주의 유형(프랑스, 독일, 일본), 다문화주의 유형(미국, 캐나다, 호주), 실용주의 유형(덴마크)으로 나누어 검토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본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개선과제를 3개 분야(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 과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연도별 추이와 국제결혼의 국적별, 도농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고, 결혼이민자의 국적현황, 자녀현황, 결혼이민자 사회·인구학적 현황을 거주지역, 가구소득, 연령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Ⅲ장은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를 살펴본 후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평가한다. 제Ⅳ장은 주요 선진국의 다문화정책을 정책방향, 제도(법령 및 기관),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다. 제Ⅴ장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 과제의 세 분야로 나누어 검토한다.

## Ⅱ. 다문화가족 현황

### 1. 다문화가족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sup>3)</sup>는 다문화가족을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한국인(출생), 귀화+한국인(출생)인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가족 등은 현행법의 다문화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자료<sup>4)</sup>에 따르면,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는 181,671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5.9%에 해당하고 2009년도 167,090명에 비하여 14,581명(8.7%)이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161,999명(89.7%)이고 남성이 19,672명(10.3%)이다. 국적취득자가 56,584명(31.1%)이고, 국적미취득자가 125,087명(68.9%)이다.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4)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조사」

[표 1]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현황

(단위: 명)

| 결혼 이민자  |        |         |         |        |         |        |       |        |
|---------|--------|---------|---------|--------|---------|--------|-------|--------|
| 계       |        |         | 국적 미취득자 |        |         | 국적 취득자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181,671 | 19,672 | 161,999 | 125,087 | 15,876 | 109,211 | 56,584 | 3,796 | 52,788 |

주: 2010. 1. 기준

자료: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10)

[표 2] 결혼이민자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 주민등록인구     | 외국계주민     |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         |        |
|----|------------|-----------|---------------|---------|--------|
|    |            |           | 계             |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  |
| 합계 | 49,773,145 | 1,139,283 | 181,671       | 125,087 | 56,584 |
| 서울 | 10,208,302 | 336,221   | 41,123        | 29,455  | 11,668 |
| 부산 | 3,543,030  | 41,365    | 7,875         | 5,456   | 2,419  |
| 대구 | 2,489,781  | 26,002    | 5,321         | 3,774   | 1,547  |
| 인천 | 2,710,579  | 63,575    | 11,344        | 7,172   | 4,172  |
| 광주 | 1,433,640  | 16,632    | 3,538         | 2,498   | 1,040  |
| 대전 | 1,484,180  | 19,699    | 3,900         | 2,853   | 1,047  |
| 울산 | 1,114,866  | 19,354    | 3,416         | 2,335   | 1,081  |
| 경기 | 11,460,610 | 337,821   | 49,855        | 32,576  | 17,279 |
| 강원 | 1,512,870  | 19,041    | 4,504         | 3,034   | 1,470  |
| 충북 | 1,527,478  | 30,138    | 5,664         | 3,798   | 1,866  |
| 충남 | 2,037,582  | 48,874    | 8,781         | 6,033   | 2,748  |
| 전북 | 1,854,508  | 28,450    | 7,051         | 5,126   | 1,925  |
| 전남 | 1,913,004  | 31,305    | 7,945         | 5,760   | 2,185  |
| 경북 | 2,669,876  | 46,658    | 8,906         | 6,324   | 2,582  |
| 경남 | 3,250,176  | 66,800    | 10,834        | 7,724   | 3,110  |
| 제주 | 562,663    | 7,348     | 1,614         | 1,169   | 445    |

주: 2010. 1. 기준

자료: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10)

## 2. 국제결혼 현황

### 가. 국제결혼 연도별 추이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1,605건으로 2.46배 증가하였다. 국제결혼 추세는 2005년 42,356건을 정점으로 2007년 37,560건, 2008년 36,204건, 2009년 33,300건으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2.87배에 증가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5년 13.5%를 정점으로 2009년에 10.8%를 차지하여 2004년 이후 10%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 3] 국제결혼 연도별 추이

(단위: 건, %)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총 혼인건수       | 332,090 | 318,407 | 304,877 | 302,503 | 308,598 | 314,304 | 330,634 | 343,559 | 327,715 | 309,759 |
| 외국인과 혼인      | 11,605  | 14,523  | 15,202  | 24,776  | 34,640  | 42,356  | 38,759  | 37,560  | 36,204  | 33,300  |
| 총 혼인건수 대비구성비 | 3.5     | 4.6     | 5.0     | 8.2     | 11.2    | 13.5    | 11.7    | 10.9    | 11.0    | 10.8    |
| 증 감          | 1,782   | 2,918   | 679     | 9,574   | 9,864   | 7,716   | -3,597  | -1,199  | -1,356  | -2,904  |
| 증 감 률        | 18.1    | 25.1    | 4.7     | 63.0    | 39.8    | 22.3    | -8.5    | -3.1    | -3.6    | -8.0    |
| 한국남성 + 외국여성  | 6,945   | 9,684   | 10,698  | 18,751  | 25,105  | 30,719  | 29,665  | 28,580  | 28,163  | 25,142  |
| 증 감 률        | 29.3    | 39.4    | 10.5    | 75.3    | 33.9    | 22.4    | -3.4    | -3.7    | -1.5    | -10.7   |
| 한국여성 + 외국남성  | 4,660   | 4,839   | 4,504   | 6,025   | 9,535   | 11,637  | 9,094   | 8,980   | 8,041   | 8,158   |
| 증 감 률        | 4.6     | 3.8     | -6.9    | 33.8    | 58.3    | 22.0    | -21.9   | -1.3    | -10.5   | 1.5     |

자료: 2009년 혼인통계 결과(통계청, 2010.3)

### 나. 국제결혼 국적별 분류

2009년을 기준으로 출신국적별로 분류하면,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중국 11,364건(45.2%), 베트남 7,249건(28.8%), 필리핀 1,643건(6.5%), 일본

1,140건(4.5%) 순이고, 외국인 남성의 국적은 일본 2,743건(34.1%), 중국 2,101건(26.1%), 미국 1,347건(16.8%)의 순이다.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이 2007년 1,804건에서 2008년 659건으로 전년보다 1,145건이 감소한 것은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강화에 원인이 있다.

[표 4] 국제결혼 국적별 현황

(단위: 건, %)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비율    |
|---------------|-------|-------|--------|--------|--------|--------|--------|--------|--------|--------|-------|
| 한국남자+<br>외국여자 | 6,945 | 9,684 | 10,698 | 18,751 | 25,105 | 30,719 | 29,665 | 28,580 | 28,163 | 25,142 | 100.0 |
| 중 국           | 3,566 | 6,977 | 7,023  | 13,347 | 18,489 | 20,582 | 14,566 | 14,484 | 13,203 | 11,364 | 45.2  |
| 베트남           | 77    | 134   | 474    | 1,402  | 2,461  | 5,822  | 10,128 | 6,610  | 8,282  | 7,249  | 28.8  |
| 필 리 핀         | 1,174 | 502   | 838    | 928    | 947    | 980    | 1,117  | 1,497  | 1,857  | 1,643  | 6.5   |
| 일 본           | 819   | 701   | 690    | 844    | 809    | 883    | 1,045  | 1,206  | 1,162  | 1,140  | 4.5   |
| 캄보디아          | 1     | 2     | 2      | 19     | 72     | 157    | 394    | 1,804  | 659    | 851    | 3.4   |
| 태 국           | 240   | 182   | 327    | 345    | 324    | 266    | 271    | 524    | 633    | 496    | 2.0   |
| 미 국           | 231   | 262   | 267    | 322    | 341    | 285    | 331    | 376    | 344    | 416    | 1.7   |
| 몽 골           | 64    | 118   | 194    | 320    | 504    | 561    | 594    | 745    | 521    | 386    | 1.5   |
| 우즈베키스탄        | 43    | 66    | 183    | 328    | 247    | 332    | 314    | 351    | 492    | 365    | 1.5   |
| 네 팔           | 2     | 2     | 21     | 22     | 32     | 16     | 33     | 82     | 159    | 316    | 1.3   |
| 러시아           | 70    | 155   | 236    | 297    | 315    | 234    | 203    | 152    | 110    | 139    | 0.6   |
| 기 타           | 658   | 583   | 443    | 577    | 564    | 601    | 669    | 749    | 741    | 777    | 3.1   |
| 한국여자+<br>외국남자 | 4,660 | 4,839 | 4,504  | 6,025  | 9,535  | 11,637 | 9,094  | 8,980  | 8,041  | 8,158  | 100.0 |
| 중 국           | 210   | 222   | 263    | 1,190  | 3,618  | 5,037  | 2,589  | 2,486  | 2,101  | 2,617  | 32.1  |
| 일 본           | 2,630 | 2,664 | 2,032  | 2,250  | 3,118  | 3,423  | 3,412  | 3,349  | 2,743  | 2,422  | 29.7  |
| 미 국           | 1,084 | 1,113 | 1,204  | 1,222  | 1,332  | 1,392  | 1,443  | 1,334  | 1,347  | 1,312  | 16.1  |
| 캐나다           | 150   | 164   | 172    | 219    | 227    | 283    | 307    | 374    | 371    | 332    | 4.1   |
| 영국            | 64    | 69    | 86     | 88     | 120    | 104    | 136    | 125    | 144    | 166    | 2.0   |
| 호 주           | 78    | 78    | 90     | 109    | 132    | 101    | 137    | 158    | 164    | 159    | 1.9   |
| 독일            | 82    | 94    | 81     | 94     | 109    | 85     | 126    | 98     | 115    | 110    | 1.3   |
| 파키스탄          | 36    | 63    | 126    | 130    | 100    | 219    | 150    | 134    | 117    | 104    | 1.3   |
| 기 타           | 326   | 372   | 450    | 723    | 779    | 993    | 794    | 922    | 939    | 936    | 11.5  |

자료: 2009년 혼인통계 결과(통계청, 2010.3)

## 다. 국제결혼 도농별 분류

2009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비중은 농어촌지역(읍·면부)이 12.9%로 도시지역(동부) 7.2%보다 높다. 2009년 혼인한 농림어업종사자는 5,640명이고, 그 중 35.2%에 해당하는 1,987명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였다. 2009년 혼인한 농어촌지역(읍·면부)의 농림어업종사자 38.7%가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였다.

[표 5] 국제결혼 도농별 현황

(단위: 건, %)

|      |      | 혼인건수<br>(A) | 한국인 남성과<br>외국인 여성의<br>혼인 |         | 농림어업종사<br>남성의 혼인 |         | 농림어업종사<br>남성과 외국 여성과<br>혼인 |         |
|------|------|-------------|--------------------------|---------|------------------|---------|----------------------------|---------|
|      |      |             | 건수(B)                    | 비율(B/A) | 건수(C)            | 비율(C/A) | 건수(D)                      | 비율(D/C) |
| 2008 | 계    | 327,715     | 28,163                   | 8.6     | 6,459            | 2.0     | 2,472                      | 38.3    |
|      | 동부   | 262,357     | 19,893                   | 7.6     | 1,499            | 0.6     | 434                        | 29.0    |
|      | 읍·면부 | 57,035      | 7,853                    | 13.8    | 4,959            | 8.7     | 2,038                      | 41.1    |
| 2009 | 계    | 309,759     | 25,142                   | 8.1     | 5,640            | 1.8     | 1,987                      | 35.2    |
|      | 동부   | 248,050     | 17,846                   | 7.2     | 1,295            | 0.5     | 307                        | 23.7    |
|      | 읍·면부 | 52,919      | 6,839                    | 12.9    | 4,341            | 8.2     | 1,679                      | 38.7    |
| 증감률  | 계    | -5.5        | -10.7                    | -       | -12.7            | -       | -19.6                      | -       |
|      | 동부   | -5.5        | -10.3                    | -       | -13.6            | -       | -29.3                      | -       |
|      | 읍·면부 | -7.2        | -12.9                    | -       | -12.5            | -       | -17.6                      | -       |

자료: 2009년 혼인통계 결과(통계청, 2010.3)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1,987건 중 베트남 931건, 중국 523건, 캄보디아 204건의 순이다.

[표 6] 농림어업종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단위: 건)

| 2008  |       |     |     |     | 2009  |     |     |      |     |
|-------|-------|-----|-----|-----|-------|-----|-----|------|-----|
| 계     |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기타  | 계     | 베트남 | 중국  | 캄보디아 | 기타  |
| 2,472 | 1,290 | 673 | 207 | 302 | 1,987 | 931 | 523 | 204  | 329 |

자료: 2009년 혼인통계 결과(통계청, 2010.3)

## 라. 국제결혼 시·도별 분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비율은 “특별시·광역시”보다 “도”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09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여성과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13.3%), 전라북도(11.9%), 충청남도(10.9%)의 순서이다. 외국인 여성과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구례군(32.4%), 청양군(28.8%), 부여군(25.8%), 강진군(25.6%), 보성군(24.8%)의 순서이다.

[표 7] 국제결혼 시·도별 현황

(단위: 건, %)

| 시·도 | 혼인건수(A) |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B) |         |
|-----|---------|-------------------|---------|
|     |         | 한국인 남성            | 비중(B/A) |
| 전국  | 309,759 | 25,142            | 8.1     |
| 서울  | 68,841  | 4,936             | 7.2     |
| 부산  | 18,614  | 1,233             | 6.6     |
| 대구  | 12,844  | 753               | 5.9     |
| 인천  | 16,643  | 1,442             | 8.7     |
| 광주  | 8,088   | 563               | 7.0     |
| 대전  | 8,885   | 693               | 7.8     |
| 울산  | 7,267   | 455               | 6.3     |
| 경기  | 73,403  | 6,019             | 8.2     |
| 강원  | 8,081   | 779               | 9.6     |
| 충북  | 8,666   | 746               | 8.6     |
| 충남  | 12,708  | 1,382             | 10.9    |
| 전북  | 9,606   | 1,141             | 11.9    |
| 전남  | 10,051  | 1,337             | 13.3    |
| 경북  | 14,499  | 1,221             | 8.4     |
| 경남  | 19,494  | 1,658             | 8.5     |
| 제주  | 3,279   | 327               | 10.0    |

자료: 2009년 혼인통계 결과(통계청, 2010.3)

[표 8] 국제결혼 시·군·구별 현황

(단위: 건, %)

| 순위 | 시·군·구 | 혼인건수(A) | 한국인 남성과<br>외국인 여성(B) |             |
|----|-------|---------|----------------------|-------------|
|    |       |         |                      | 비중<br>(B/A) |
| 1  | 구례군   | 136     | 44                   | 32.4        |
| 2  | 청양군   | 160     | 46                   | 28.8        |
| 3  | 부여군   | 283     | 73                   | 25.8        |
| 4  | 강진군   | 168     | 43                   | 25.6        |
| 5  | 보성군   | 226     | 56                   | 24.8        |
| 6  | 진안군   | 121     | 29                   | 24.0        |
| 7  | 봉화군   | 151     | 35                   | 23.2        |
| 8  | 곡성군   | 128     | 29                   | 22.7        |
| 9  | 영양군   | 81      | 18                   | 22.2        |
| 10 | 부안군   | 269     | 59                   | 21.9        |
| 11 | 고창군   | 243     | 53                   | 21.8        |
| 12 | 장성군   | 239     | 51                   | 21.3        |
| 13 | 예산군   | 435     | 92                   | 21.1        |
| 14 | 금산군   | 289     | 61                   | 21.1        |
| 15 | 보은군   | 145     | 30                   | 20.7        |
| 16 | 청도군   | 184     | 37                   | 20.1        |
| 17 | 순창군   | 140     | 28                   | 20.0        |
| 18 | 함평군   | 181     | 36                   | 19.9        |
| 19 | 함양군   | 173     | 33                   | 19.1        |
| 20 | 김제시   | 437     | 83                   | 19.0        |

자료: 2009년 혼인통계 결과(통계청, 2010.3)

### 3.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 가. 출신국적별 분류

결혼이민자를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59,346명(32.7%), 중국(한국계 제외) 51,348명(28.3%), 베트남 34,640명(19.1%), 필리핀 10,610명(5.8%), 일본 5,326명(2.9%)의 순서이다. 2009년 12월에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3,230명이다. 전체 결혼이민자 181,671명 중 중국 출신이 110,694명으로 60.9%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 계       | 중국<br>(한국계) | 중국<br>(한족등) | 베트남    | 필리핀    | 일본    | 동남아<br>(기타) | 몽골    | 태국    | 기타     |
|----|---------|-------------|-------------|--------|--------|-------|-------------|-------|-------|--------|
| 계  | 181,671 | 59,346      | 51,348      | 34,640 | 10,610 | 5,326 | 4,204       | 2,602 | 2,272 | 11,323 |
| 남성 | 19,672  | 8,785       | 4,250       | 179    | 240    | 557   | 139         | 44    | 59    | 5,419  |
| 여성 | 161,999 | 50,561      | 47,098      | 34,461 | 10,370 | 4,769 | 4,065       | 2,558 | 2,213 | 5,904  |

주: 2010. 1. 기준

자료: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10)

### 나. 입국시기별 분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2000년 이후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81.1%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입국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후반부로 오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결혼이민자도 1990년대 중반부터 입국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5)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5년 전후를 비교할 때 입국비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여성 결혼이민자와 다른 차이점으로서 남성 결혼이민자는 2000년 이후 꾸준한 비율로 입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결혼이민자의 입국년도

(단위: %, 명)

| 구분 | 1990년<br>이전 | 1990~<br>1994년 | 1995~<br>1999년 | 2000~<br>2004년 | 2005년<br>이후 | 계(수)           |
|----|-------------|----------------|----------------|----------------|-------------|----------------|
| 전체 | 1.1         | 3.3            | 14.6           | 27.0           | 54.1        | 100.0(121,979) |
| 여성 | 0.8         | 2.9            | 14.3           | 26.3           | 55.7        | 100.0(111,409) |
| 남성 | 4.2         | 7.4            | 17.0           | 34.1           | 37.3        | 100.0( 10,571)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5) 김승권 외 7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21쪽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캄보디아 출신의 95.6%, 베트남 출신의 87.6%, 중국 한족 등 출신의 67.9%, 몽골 출신의 55.7%, 필리핀 출신의 44.7%가 2005년 이후 입국하였다. 우리나라 혼인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2000년대 이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였고, 2000년대 초기에는 중국 한국계,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가 주로 입국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중국 한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입국년도

(단위: %, 명)

| 구분              | 1990년<br>이전 | 1990~<br>1994년 | 1995~<br>1999년 | 2000~<br>2004년 | 2005년<br>이후 | 계(수)           |
|-----------------|-------------|----------------|----------------|----------------|-------------|----------------|
| <b>전체 결혼이민자</b> |             |                |                |                |             |                |
| 전체              | 1.1         | 3.3            | 14.6           | 27.0           | 54.1        | 100.0(121,978) |
| 중국(한국계)         | 0.7         | 5.7            | 23.7           | 38.0           | 31.8        | 100.0( 37,601) |
| 중국(한족등)         | 0.7         | 1.9            | 9.4            | 21.5           | 66.5        | 100.0( 33,332) |
| 베트남             | 0.1         | 0.2            | 1.6            | 10.8           | 87.4        | 100.0( 23,473) |
| 필리핀             | 0.3         | 1.9            | 16.2           | 37.2           | 44.3        | 100.0( 8,028)  |
| 몽골              | 0.5         | -              | 12.3           | 32.1           | 55.1        | 100.0( 1,703)  |
| 태국              | 0.1         | 0.5            | 11.9           | 51.7           | 35.7        | 100.0( 1,542)  |
| 캄보디아            | 0.1         | 0.0            | 0.4            | 3.8            | 95.6        | 100.0( 2,312)  |
| 일본              | 6.9         | 10.8           | 39.4           | 21.1           | 21.8        | 100.0( 5,241)  |
| 북미·호주·서유럽       | 7.2         | 5.6            | 20.7           | 40.5           | 25.9        | 100.0( 2,302)  |
| 기타              | 3.8         | 4.8            | 16.9           | 38.6           | 35.9        | 100.0( 6,444)  |
| <b>여성 결혼이민자</b> |             |                |                |                |             |                |
| 전체              | 0.8         | 2.9            | 14.3           | 26.3           | 55.7        | 100.0(111,408) |
| 중국(한국계)         | 0.7         | 5.5            | 24.9           | 38.6           | 30.4        | 100.0( 33,990) |
| 중국(한족등)         | 0.5         | 1.8            | 9.2            | 20.6           | 67.9        | 100.0( 30,607) |
| 베트남             | 0.1         | 0.2            | 1.5            | 10.7           | 87.6        | 100.0( 23,359) |
| 필리핀             | 0.2         | 1.4            | 16.2           | 37.5           | 44.7        | 100.0( 7,907)  |
| 몽골              | 0.5         | 0.0            | 12.1           | 31.7           | 55.7        | 100.0( 1,676)  |
| 태국              | 0.1         | 0.5            | 12.0           | 51.6           | 35.7        | 100.0( 1,528)  |
| 캄보디아            | 0.1         | 0.0            | 0.4            | 3.9            | 95.6        | 100.0( 2,308)  |
| 일본              | 5.9         | 10.3           | 41.8           | 20.9           | 21.1        | 100.0( 4,825)  |
| 북미·호주·서유럽       | 11.1        | 8.5            | 19.0           | 34.7           | 26.6        | 100.0( 504)    |
| 기타              | 2.9         | 2.2            | 11.4           | 39.7           | 43.8        | 100.0( 4,702)  |
| <b>남성 결혼이민자</b> |             |                |                |                |             |                |
| 전체              | 4.2         | 7.4            | 17.0           | 34.1           | 37.3        | 100.0( 10,570) |
| 중국(한국계)         | 1.1         | 7.9            | 12.7           | 32.8           | 45.6        | 100.0( 3,612)  |
| 중국(한족등)         | 3.5         | 3.5            | 10.6           | 31.7           | 50.7        | 100.0( 2,724)  |
| 일본              | 19.0        | 15.6           | 11.8           | 23.8           | 29.8        | 100.0( 416)    |
| 북미·호주·서유럽       | 6.1         | 4.8            | 21.2           | 42.1           | 25.8        | 100.0( 1,796)  |
| 기타              | 5.8         | 12.3           | 30.5           | 34.8           | 16.5        | 100.0( 2,022)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 4. 결혼이민자 자녀현황

결혼이민자 자녀는 121,935명으로 2009년에 비하여 14,246명이 증가하였다. 2007년 44,000명, 2008년 58,000명, 2009년 108,00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분류하면 만 6세 이하가 75,776명으로 전체 자녀의 62.1%를 차지하고, 만 7~12세 이하가 30,587명으로 25.1%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87.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정책에서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아울러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12]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별 분류

(단위: 명, %)

| 구 분 | 계       | 만 6세 이하 | 만 7~12세 | 만 13~15세 | 만 16~18세 |
|-----|---------|---------|---------|----------|----------|
| 인원  | 121,935 | 75,776  | 30,587  | 8,688    | 6,884    |
| 비율  | 100     | 62.1    | 25.1    | 7.1      | 5.6      |

자료: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10)

[표 13] 결혼이민자 자녀 시·도별 분류

(단위: 명)

| 구분 | 합 계     | 만 6세 이하 | 만 7세~12세 | 만 13~15세 | 만 16~18세 |
|----|---------|---------|----------|----------|----------|
| 합계 | 121,935 | 75,776  | 30,587   | 8,688    | 6,884    |
| 서울 | 19,014  | 11,044  | 5,230    | 1,477    | 1,263    |
| 부산 | 5,698   | 3,511   | 1,422    | 427      | 338      |
| 대구 | 3,904   | 2,484   | 974      | 265      | 181      |
| 인천 | 7,805   | 4,378   | 2,141    | 693      | 593      |
| 광주 | 2,752   | 1,806   | 653      | 154      | 139      |
| 대전 | 2,881   | 1,800   | 653      | 244      | 184      |
| 울산 | 2,798   | 1,793   | 620      | 218      | 167      |
| 경기 | 29,953  | 17,616  | 8,009    | 2,350    | 1,978    |
| 강원 | 3,900   | 2,510   | 939      | 289      | 162      |
| 충북 | 4,710   | 3,045   | 1,158    | 311      | 196      |
| 충남 | 6,953   | 4,648   | 1,602    | 430      | 273      |
| 전북 | 5,849   | 3,898   | 1,366    | 330      | 255      |
| 전남 | 7,453   | 4,951   | 1,805    | 393      | 304      |
| 경북 | 7,715   | 5,244   | 1,685    | 461      | 325      |
| 경남 | 9,260   | 6,187   | 2,047    | 570      | 456      |
| 제주 | 1,290   | 861     | 283      | 76       | 70       |

자료: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10)

다문화가족 미취학 자녀의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은 57.0%이고, 이용기관은 어린이집 이용률 57.5%, 유치원 이용률 40.0%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시설이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낮은 취업률에 기인한다.<sup>6)</sup>

6) 김승권 외 7인, 전체서 374쪽

[표 14]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보육·교육시설 이용비율

(단위: %, 명)

| 구분       | 시설 이용률   |      | 보내는 시설 또는 기관 |      |      |     | 계(수)          |
|----------|----------|------|--------------|------|------|-----|---------------|
|          | (분석대상)   | 이용률  | 유치원          | 어린이집 | 사설학원 | 기타  |               |
| 전체 결혼이민자 |          |      |              |      |      |     |               |
| 전체       | (50,165) | 57.0 | 40.0         | 57.5 | 1.2  | 1.4 | 100.0(28,277) |
| 동부       | (32,902) | 57.3 | 40.0         | 57.0 | 1.3  | 1.7 | 100.0(18,680) |
| 읍·면부     | (17,263) | 56.3 | 39.8         | 58.4 | 0.9  | 0.9 | 100.0( 9,597) |
| 여성 결혼이민자 |          |      |              |      |      |     |               |
| 전체       | (47,553) | 56.7 | 40.1         | 57.4 | 1.1  | 1.4 | 100.0(26,676) |
| 동부       | (30,626) | 56.9 | 40.4         | 56.7 | 1.2  | 1.6 | 100.0(17,251) |
| 읍·면부     | (16,927) | 56.4 | 39.7         | 58.5 | 0.9  | 0.9 | 100.0( 9,425) |
| 남성 결혼이민자 |          |      |              |      |      |     |               |
| 전체       | ( 2,612) | 61.5 | 37.4         | 59.0 | 1.8  | 1.8 | 100.0( 1,601) |
| 동부       | ( 2,276) | 63.1 | 36.0         | 59.9 | 2.0  | 2.0 | 100.0( 1,430) |
| 읍·면부     | ( 336)   | 50.9 | 48.5         | 51.5 | -    | -   | 100.0( 171)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 5.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현황<sup>7)</sup>

### 가. 결혼이민자 거주지역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은 동 지역 거주비율 72.1%, 읍·면 지역 거주비율 27.9%로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70.3%, 남성 결혼이민자의 90.3%가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 결혼이민자가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29.7%)가 남성 결혼이민자(9.7%)보다 약 3배 정도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7)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를 요약하여 정리

[표 15]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단위: 명, %)

| 구분 | 동            | 읍·면          | 계              |
|----|--------------|--------------|----------------|
| 전체 | 94,911(72.1) | 36,791(27.9) | 131,702(100.0) |
| 여성 | 84,503(70.3) | 35,643(29.7) | 120,146(100.0) |
| 남성 | 10,436(90.3) | 1,120(9.7)   | 11,536(100.0)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을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포함), 몽골,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경기, 경북, 경남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는 경기와 전남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는 경기, 대전, 전남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우리나라 특정 지역의 국제결혼을 알선할 때 특정한 국가를 선택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16] 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 시도 분포

(단위: %)

| 구분 | 출신 국적             |                   |                   |                   |                   |                   |                   |                   |                   |                   |
|----|-------------------|-------------------|-------------------|-------------------|-------------------|-------------------|-------------------|-------------------|-------------------|-------------------|
|    | 중국<br>(한국계)       | 중국<br>(한족등)       | 베트남               | 필리핀               | 몽골                | 태국                | 캄보<br>디아          | 일본                | 북미<br>호주<br>서유럽   | 기타                |
| 서울 | 27.4              | 26.8              | 8.1               | 8.9               | 15.5              | 11.4              | 5.9               | 18.3              | 41.7              | 27.4              |
| 부산 | 4.4               | 4.5               | 5.7               | 4.3               | 2.1               | 3.6               | 4.5               | 3.6               | 6.8               | 5.5               |
| 대구 | 3.0               | 3.1               | 4.9               | 2.3               | 1.1               | 2.7               | 3.8               | 2.5               | 4.1               | 3.2               |
| 인천 | 7.7               | 7.8               | 3.5               | 4.2               | 6.8               | 6.5               | 2.3               | 3.5               | 3.1               | 6.8               |
| 광주 | 1.9               | 1.9               | 2.4               | 3.3               | 2.7               | 2.8               | 3.1               | 2.4               | 2.3               | 1.3               |
| 대전 | 1.9               | 1.9               | 1.9               | 3.9               | 0.8               | 0.9               | 11.0              | 1.7               | 1.7               | 1.3               |
| 울산 | 1.6               | 1.6               | 3.7               | 1.6               | 3.1               | 1.2               | 2.4               | 0.9               | 2.1               | 1.2               |
| 경기 | 28.3              | 28.5              | 15.7              | 16.3              | 31.3              | 28.0              | 12.4              | 20.4              | 22.1              | 27.8              |
| 강원 | 2.1               | 2.1               | 3.5               | 6.0               | 2.1               | 3.7               | 4.6               | 5.2               | 1.9               | 2.4               |
| 충북 | 2.5               | 2.5               | 4.7               | 4.8               | 8.5               | 5.2               | 3.4               | 3.7               | 1.5               | 2.0               |
| 충남 | 4.1               | 4.2               | 8.1               | 9.1               | 5.7               | 8.2               | 7.1               | 7.4               | 2.1               | 4.3               |
| 전북 | 3.0               | 3.0               | 6.0               | 8.5               | 3.0               | 4.1               | 9.2               | 6.3               | 1.4               | 2.0               |
| 전남 | 2.9               | 2.9               | 7.9               | 12.1              | 6.8               | 7.5               | 10.7              | 9.5               | 0.8               | 2.1               |
| 경북 | 3.3               | 3.3               | 10.8              | 5.5               | 4.2               | 6.4               | 7.3               | 5.9               | 2.4               | 8.4               |
| 경남 | 5.0               | 5.1               | 11.6              | 7.0               | 5.7               | 7.1               | 11.1              | 7.3               | 4.5               | 3.6               |
| 제주 | 0.9               | 0.9               | 1.4               | 2.2               | 0.6               | 0.7               | 1.3               | 1.5               | 1.4               | 0.7               |
| 전체 | 100.0<br>(40,000) | 100.0<br>(35,914) | 100.0<br>(25,688) | 100.0<br>( 8,748) | 100.0<br>( 1,830) | 100.0<br>( 1,726) | 100.0<br>( 2,628) | 100.0<br>( 5,443) | 100.0<br>( 2,428) | 100.0<br>( 7,298)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 나. 결혼이민자 연령분포

결혼이민자의 연령분포는 24세 이하(18.6%)와 25~29세(18.0%) 연령층의 합이 36.6%로 20대가 가장 많고, 30대 연령층 34.6%, 40대 연령층 20.1%, 50세 이상 연령층 8.6%이다. 결혼이민자의 연령분포는 성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24세 이하(21.1%), 25~29세(20.2%)로 20대 이하가 41.3%인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는 40대(30.5%)가 가장 많다.

[표 17] 결혼이민자의 연령분포

(단위: %, 명)

| 구분       | 출신국가              |                   |                   |                  |                  |                  |                  |                  |                  |                  |                    |
|----------|-------------------|-------------------|-------------------|------------------|------------------|------------------|------------------|------------------|------------------|------------------|--------------------|
|          | 중국<br>(한국계)       | 중국<br>(한족등)       | 베트남               | 필리핀              | 몽골               | 태국               | 캄보<br>디아         | 일본               | 북미<br>호주<br>서유럽  | 기타               | 전체                 |
| 전체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24세 이하   | 2.5               | 10.5              | 63.2              | 18.6             | 14.6             | 4.0              | 68.3             | 0.6              | 0.9              | 10.8             | 18.6               |
| 25~29세   | 11.5              | 22.8              | 25.7              | 23.1             | 28.5             | 18.4             | 28.2             | 5.8              | 12.9             | 22.2             | 18.0               |
| 30~34세   | 17.5              | 21.5              | 7.1               | 23.3             | 27.4             | 29.1             | 2.6              | 15.7             | 25.8             | 27.8             | 17.2               |
| 35~39세   | 22.7              | 19.2              | 2.7               | 19.4             | 18.1             | 27.1             | 0.5              | 22.1             | 21.8             | 21.1             | 17.4               |
| 40~49세   | 29.3              | 20.4              | 1.0               | 14.4             | 10.3             | 20.4             | 0.3              | 47.3             | 23.0             | 14.5             | 20.1               |
| 50세 이상   | 16.5              | 5.6               | 0.2               | 1.2              | 1.0              | 1.1              | 0.1              | 8.5              | 15.6             | 3.7              | 8.6                |
| 계(수)     | 100.0<br>(39,998) | 100.0<br>(35,913) | 100.0<br>(25,688) | 100.0<br>(8,748) | 100.0<br>(1,830) | 100.0<br>(1,726) | 100.0<br>(2,628) | 100.0<br>(5,443) | 100.0<br>(2,428) | 100.0<br>(7,299) | 100.0<br>(131,702) |
| 여성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24세 이하   | 2.5               | 11.1              | 63.4              | 18.8             | 14.7             | 4.1              | 68.4             | 0.6              | 2.7              | 14.5             | 21.1               |
| 25~29세   | 12.3              | 23.7              | 25.7              | 23.3             | 28.3             | 18.6             | 28.1             | 6.0              | 16.9             | 26.7             | 20.2               |
| 30~34세   | 18.4              | 21.7              | 7.0               | 23.2             | 27.6             | 29.2             | 2.6              | 15.9             | 27.5             | 28.8             | 17.6               |
| 35~39세   | 23.2              | 19.6              | 2.7               | 19.2             | 18.1             | 27.0             | 0.5              | 23.0             | 17.8             | 15.9             | 16.7               |
| 40~49세   | 28.3              | 19.4              | 1.0               | 14.3             | 10.3             | 20.4             | 0.3              | 48.7             | 20.1             | 10.8             | 18.1               |
| 50세 이상   | 15.2              | 4.4               | 0.1               | 1.1              | 0.9              | 0.8              | 0.1              | 5.9              | 14.9             | 3.3              | 6.4                |
| 계(수)     | 100.0<br>(36,044) | 100.0<br>(32,912) | 100.0<br>(25,553) | 100.0<br>(8,603) | 100.0<br>(1,799) | 100.0<br>(1,703) | 100.0<br>(2,622) | 100.0<br>(4,994) | 100.0<br>(556)   | 100.0<br>(5,316) | 100.0<br>(120,102) |
| 남성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24세 이하   | 1.7               | 3.6               | -                 | -                | -                | -                | -                | 1.1              | 0.4              | 2.5              | 2.1                |
| 25~29세   | 4.2               | 12.4              | -                 | -                | -                | -                | -                | 3.3              | 11.7             | 11.3             | 8.9                |
| 30~34세   | 9.6               | 19.4              | -                 | -                | -                | -                | -                | 13.4             | 25.3             | 24.8             | 17.8               |
| 35~39세   | 18.0              | 14.8              | -                 | -                | -                | -                | -                | 11.6             | 22.9             | 33.9             | 20.9               |
| 40~49세   | 37.9              | 30.6              | -                 | -                | -                | -                | -                | 32.6             | 23.8             | 22.6             | 30.5               |
| 50세 이상   | 28.6              | 19.2              | -                 | -                | -                | -                | -                | 37.9             | 15.8             | 4.9              | 19.7               |
| 계(수)     | 100.0<br>(3,948)  | 100.0<br>(2,987)  | -                 | -                | -                | -                | -                | 100.0<br>(448)   | 100.0<br>(1,874) | 100.0<br>(2,300) | 100.0<br>(11,556)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4세 이하 여성 결혼이민자의 45.4%가 40대 이상의 배우자와 살고 있고, 25~29세 여성 결혼이민자의 45.7%가 40대 이상의 배우자와 살고 있으므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큰 연령 차이를 보였다.

[표 18]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연령분포

(단위: %, 명)

| 결혼이민자<br>연령 | 배우자 연령    |       |       |       |       |           | 계(수)           |
|-------------|-----------|-------|-------|-------|-------|-----------|----------------|
|             | 24세<br>이하 | 25~29 | 30~34 | 35~39 | 40~49 | 50세<br>이상 |                |
| 전체          | 0.5       | 2.9   | 9.2   | 23.3  | 46.1  | 18.0      | 100.0(122,582) |
| 여성 결혼이민자    |           |       |       |       |       |           |                |
| 24세 이하      | 1.4       | 3.0   | 13.6  | 36.6  | 42.7  | 2.7       | 100.0( 23,467) |
| 25~29세      | 0.3       | 5.5   | 15.0  | 33.5  | 41.4  | 4.3       | 100.0( 22,856) |
| 30~34세      | 0.2       | 1.2   | 10.7  | 29.8  | 52.5  | 5.7       | 100.0( 20,176) |
| 35~39세      | 0.1       | 0.5   | 2.5   | 16.8  | 66.4  | 13.7      | 100.0( 18,864) |
| 40~49세      | 0.1       | 0.1   | 0.3   | 3.2   | 52.7  | 43.6      | 100.0( 20,086) |
| 50세 이상      | 0.1       | 0.0   | 0.2   | 0.3   | 7.0   | 92.5      | 100.0( 6,530)  |
| 남성 결혼이민자    |           |       |       |       |       |           |                |
| 24세 이하      | 34.8      | 29.7  | 5.1   | 14.5  | 13.8  | 2.2       | 100.0( 138)    |
| 25~29세      | 6.5       | 46.5  | 28.7  | 10.8  | 5.9   | 1.6       | 100.0( 929)    |
| 30~34세      | 2.6       | 24.3  | 41.8  | 20.9  | 9.3   | 1.0       | 100.0( 1,938)  |
| 35~39세      | 1.0       | 10.4  | 25.7  | 40.5  | 20.6  | 1.8       | 100.0( 2,215)  |
| 40~49세      | 0.4       | 1.5   | 9.4   | 28.8  | 49.3  | 10.6      | 100.0( 3,313)  |
| 50세 이상      | 0.1       | 0.5   | 0.7   | 5.4   | 23.5  | 69.8      | 100.0( 2,061)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남성 결혼이민자(41.6세)와 한국인 배우자(40.3세) 간의 평균연령 차이는 1.3세에 불과하여 남성 결혼이민자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연령층에서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33.3세)와 한국인 남편(43.2세)간 평균연령 차이는 약 10세로 나이차가 많이 났고 특히 캄보디아는 17.5세, 베트남은 17.0세의 연령 차이를 보였다.

[표 19]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평균 연령

(단위: 세)

| 구분       | 여성 결혼이민자    |       |                             | 남성 결혼이민자    |       |                             |
|----------|-------------|-------|-----------------------------|-------------|-------|-----------------------------|
|          | 부인<br>본인(A) | 남편(B) | 부인과<br>남편의<br>연령차이<br>(B-A) | 남편<br>본인(C) | 부인(D) | 부인과<br>남편의<br>연령차이<br>(C-D) |
| 전체       | 33.3        | 43.2  | 9.9                         | 41.6        | 40.3  | 1.3                         |
| 중국(조선족)  | 39.5        | 46.2  | 6.7                         | 45.0        | 43.2  | 1.8                         |
| 중국(한족 등) | 33.9        | 42.7  | 8.8                         | 41.0        | 40.6  | 0.4                         |
| 베트남      | 24.3        | 41.3  | 17.0                        | 30.1        | 34.0  | -3.9                        |
| 필리핀      | 31.7        | 42.6  | 10.9                        | 36.8        | 36.6  | 0.2                         |
| 몽골       | 31.3        | 41.3  | 10.0                        | 32.9        | 39.2  | -6.3                        |
| 태국       | 34.5        | 41.6  | 7.1                         | 39.3        | 32.8  | 6.5                         |
| 캄보디아     | 23.5        | 41.0  | 17.5                        | 30.6        | 25.0  | 5.6                         |
| 일본       | 40.0        | 42.3  | 2.3                         | 48.3        | 43.8  | 4.5                         |
| 북마호주서유럽  | 38.3        | 40.3  | 2.0                         | 39.7        | 36.5  | 3.2                         |
| 기타       | 32.0        | 40.9  | 8.9                         | 37.2        | 37.7  | 0.5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 다. 결혼이민자 학력수준

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가 42.4%, 중학교 26.6%, 대학 이상 21.7%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42.3%, 중학교 27.7%, 대학 이상 20.6%인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은 대학 이상 40.1%, 고등학교 34.5%, 중학교 18.9%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36.1%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는 40.6%가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어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이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

(단위: %, 명)

| 구분      | 전체        |       | 여성        |       | 남성       |       |
|---------|-----------|-------|-----------|-------|----------|-------|
|         | (수)       | 비율    | (수)       | 비율    | (수)      | 비율    |
| 전체      | (131,702) | 100.0 | (118,961) | 100.0 | (11,428) | 100.0 |
| 초등학교 이하 | ( 10,868) | 8.3   | ( 10,126) | 8.4   | ( 626)   | 5.4   |
| 중학교     | ( 35,080) | 26.6  | ( 33,290) | 27.7  | ( 2,183) | 18.9  |
| 고등학교    | ( 55,831) | 42.4  | ( 50,808) | 42.3  | ( 3,984) | 34.5  |
| 대학 이상   | ( 28,612) | 21.7  | ( 24,736) | 20.6  | ( 4,636) | 40.1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대학 이상의 고학력의 비율이 높은 출신국가는 몽골(61.3%), 일본(60.5%) 필리핀(57.5%) 등이고, 학력수준이 낮은 출신국가는 캄보디아(중학교 이하 66.4%), 베트남(중학교 이하 61.8%) 등이다.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한국계 및 중국 한족 등의 경우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가 각각 34.8%, 36.8%의 비율을 보였다

[표 2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학력수준

(단위: %, 명)

| 구분               | 초등학교 이하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이상 | 계(수)           |
|------------------|---------|------|------|-------|----------------|
| 전체 결혼이민자         |         |      |      |       |                |
| 전체               | 8.2     | 27.2 | 42.0 | 22.5  | 100.0(130,390) |
| 중국(한국계)          | 6.0     | 28.8 | 52.2 | 13.0  | 100.0( 39,733) |
| 중국(한족 등)         | 5.2     | 31.6 | 44.2 | 19.0  | 100.0( 35,657) |
| 베트남              | 20.0    | 41.8 | 34.2 | 4.0   | 100.0( 25,214) |
| 필리핀              | 1.6     | 2.7  | 38.1 | 57.5  | 100.0( 8,669)  |
| 몽골               | 1.8     | 10.0 | 26.8 | 61.3  | 100.0( 1,818)  |
| 태국               | 14.4    | 16.9 | 37.1 | 31.5  | 100.0( 1,712)  |
| 캄보디아             | 31.4    | 35.0 | 23.8 | 9.9   | 100.0( 2,534)  |
| 일본               | 0.3     | 1.1  | 38.1 | 60.5  | 100.0( 5,425)  |
| 북마호주서유럽          | 0.7     | 0.1  | 5.2  | 93.9  | 100.0( 2,413)  |
| 기타               | 3.1     | 8.1  | 34.1 | 54.7  | 100.0( 7,215)  |
| 여성 결혼이민자         |         |      |      |       |                |
| 전체               | 8.5     | 28.0 | 42.7 | 20.8  | 100.0(118,961) |
| 중국(조선족)          | 5.9     | 28.3 | 52.6 | 13.2  | 100.0( 35,816) |
| 중국(한족 등)         | 4.8     | 32.1 | 44.5 | 18.5  | 100.0( 32,725) |
| 베트남              | 20.0    | 41.9 | 34.1 | 4.0   | 100.0( 25,086) |
| 필리핀              | 1.6     | 2.7  | 38.3 | 57.3  | 100.0( 8,538)  |
| 몽골               | 1.7     | 10.2 | 26.6 | 61.5  | 100.0( 1,788)  |
| 태국               | 14.6    | 16.9 | 36.8 | 31.7  | 100.0( 1,689)  |
| 캄보디아             | 31.4    | 35.0 | 23.8 | 9.8   | 100.0( 2,529)  |
| 일본               | 0.2     | 1.0  | 39.5 | 59.3  | 100.0( 4,988)  |
| 북마호주서유럽          | 1.4     | 0.0  | 7.4  | 91.1  | 100.0( 552)    |
| 기타               | 3.6     | 9.5  | 35.7 | 51.2  | 100.0( 5,250)  |
| 남성 결혼이민자         |         |      |      |       |                |
| 전체               | 5.5     | 19.1 | 34.9 | 40.6  | 100.0( 11,429) |
| 중국(조선족)          | 7.0     | 33.3 | 48.4 | 11.3  | 100.0( 3,916)  |
| 중국(한족 등)         | 9.8     | 25.3 | 40.4 | 24.5  | 100.0( 2,933)  |
| 일본               | 1.1     | 2.3  | 22.0 | 74.5  | 100.0( 436)    |
| 북마호주서유럽          | 0.5     | 0.2  | 4.5  | 94.8  | 100.0( 1,861)  |
| 기타 <sup>8)</sup> | 2.2     | 5.5  | 31.7 | 60.7  | 100.0( 2,283)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8) 남성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적이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인 경우는 "기타"에 포함.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간 학력수준 격차가 심하여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여성 결혼이민자 51.0%가 배우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중학교 이하 학력의 여성 결혼이민자 65.7%가 배우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2] 결혼이민자 학력수준별 배우자의 학력수준 분포

(단위: %, 명)

| 결혼이민자<br>학력수준 | 배우자 학력수준   |      |      |       | 계(수)           |
|---------------|------------|------|------|-------|----------------|
|               | 초등학교<br>이하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이상 |                |
| 전체 결혼이민자      |            |      |      |       |                |
| 전체            | 6.7        | 17.2 | 51.2 | 24.9  | 100.0(119,326) |
| 초등학교 이하       | 28.0       | 21.9 | 38.5 | 11.6  | 100.0( 9,214)  |
| 중학교           | 6.3        | 29.7 | 49.4 | 14.6  | 100.0( 31,796) |
| 고등학교          | 4.8        | 13.8 | 62.5 | 18.9  | 100.0( 50,302) |
| 대학 이상         | 3.6        | 7.7  | 37.0 | 51.8  | 100.0( 28,014) |
| 여성 결혼이민자      |            |      |      |       |                |
| 초등학교 이하       | 26.6       | 22.4 | 39.1 | 11.9  | 100.0( 8,655)  |
| 중학교           | 6.2        | 28.3 | 50.2 | 15.3  | 100.0( 29,811) |
| 고등학교          | 4.9        | 13.5 | 62.4 | 19.2  | 100.0( 46,647) |
| 대학 이상         | 3.9        | 8.4  | 39.8 | 47.9  | 100.0( 23,553) |
| 남성 결혼이민자      |            |      |      |       |                |
| 초등학교 이하       | 49.8       | 15.1 | 29.0 | 6.1   | 100.0( 558)    |
| 중학교           | 7.5        | 49.5 | 37.7 | 5.3   | 100.0( 1,984)  |
| 고등학교          | 3.6        | 17.5 | 64.4 | 14.6  | 100.0( 3,656)  |
| 대학 이상         | 1.9        | 4.2  | 21.9 | 72.0  | 100.0( 4,460)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 라. 결혼이민자 소득수준

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아 월평균 가구소득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고, 200~300만원 미만이 18.7%이다. 저소득층

인 100만원 미만이 21.3%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고, 고소득층인 500만원 이상은 2.1%에 불과하다. 한국복지패널(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32만 2천원이고 여성 결혼이민자 78.6%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이므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구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 구분       | 50만원 미만 | 50~100만원 | 100~200만원 | 200~300만원 | 300~400만원 | 400~500만원 | 500~600만원 | 600~700만원 | 700만원 이상 | 모르겠다 | 계(수)               |
|----------|---------|----------|-----------|-----------|-----------|-----------|-----------|-----------|----------|------|--------------------|
| 전체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전체       | 5.1     | 16.2     | 38.4      | 18.7      | 5.7       | 1.8       | 0.9       | 0.5       | 0.7      | 12.0 | 100.0<br>(126,312) |
| 동        | 4.7     | 15.2     | 39.0      | 20.1      | 6.5       | 2.1       | 1.0       | 0.5       | 0.9      | 9.9  | 100.0<br>( 91,444) |
| 읍·면      | 6.3     | 18.8     | 36.6      | 15.0      | 3.7       | 1.0       | 0.6       | 0.3       | 0.5      | 17.3 | 100.0<br>( 34,868) |
| 여성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전체       | 5.1     | 16.4     | 38.6      | 18.5      | 5.4       | 1.6       | 0.8       | 0.4       | 0.6      | 12.5 | 100.0<br>(115,235) |
| 동        | 4.6     | 15.3     | 39.5      | 20.0      | 6.2       | 1.9       | 0.9       | 0.4       | 0.7      | 10.4 | 100.0<br>( 81,398) |
| 읍·면      | 6.3     | 18.9     | 36.5      | 14.8      | 3.5       | 0.9       | 0.5       | 0.3       | 0.5      | 17.7 | 100.0<br>( 33,837) |
| 남성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전체       | 5.4     | 14.7     | 36.0      | 20.4      | 8.1       | 4.1       | 2.1       | 1.1       | 2.0      | 6.0  | 100.0<br>( 11,078) |
| 동        | 5.4     | 14.6     | 35.7      | 20.4      | 8.2       | 4.1       | 2.1       | 1.1       | 2.1      | 6.2  | 100.0<br>( 10,046) |
| 읍·면      | 5.8     | 15.8     | 38.9      | 19.9      | 7.4       | 4.7       | 1.6       | 0.9       | 0.9      | 4.4  | 100.0<br>( 1,032)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필리핀(28.7%), 중국 한국계(24.7%), 캄보디아(23.7%), 베트남(22.5%), 태국(2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명)

| 구분        | 50만원 미만 | 50~100만원 | 100~200만원 | 200~300만원 | 300~400만원 | 400~500만원 | 500~600만원 | 600~700만원 | 700만원 이상 | 모르겠다 | 계 (수)              |
|-----------|---------|----------|-----------|-----------|-----------|-----------|-----------|-----------|----------|------|--------------------|
| 전체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전체        | 5.1     | 16.2     | 38.4      | 18.7      | 5.7       | 1.8       | 0.9       | 0.5       | 0.7      | 12.0 | 100.0<br>(126,310) |
| 중국(한국계)   | 5.7     | 19.0     | 40.8      | 20.4      | 5.8       | 1.7       | 0.6       | 0.2       | 0.4      | 5.4  | 100.0<br>( 38,736) |
| 중국(한족 등)  | 4.4     | 14.3     | 39.8      | 21.0      | 6.7       | 2.0       | 0.9       | 0.4       | 0.6      | 9.9  | 100.0<br>( 34,914) |
| 베트남       | 5.1     | 17.4     | 38.1      | 14.6      | 2.4       | 0.6       | 0.3       | 0.2       | 0.2      | 21.0 | 100.0<br>( 24,258) |
| 필리핀       | 9.0     | 19.7     | 29.2      | 8.3       | 3.8       | 0.9       | 1.3       | 1.0       | 1.8      | 25.1 | 100.0<br>( 7,811)  |
| 몽골        | 4.9     | 12.7     | 44.3      | 17.2      | 5.6       | 0.8       | 0.8       | 0.3       | 0.4      | 12.9 | 100.0<br>( 1,780)  |
| 태국        | 5.5     | 15.6     | 39.2      | 20.0      | 4.9       | 1.2       | 0.7       | 1.0       | 0.7      | 11.3 | 100.0<br>( 1,687)  |
| 캄보디아      | 8.6     | 15.1     | 38.3      | 12.0      | 3.1       | 0.7       | 0.2       | 0.1       | 0.2      | 21.6 | 100.0<br>( 2,450)  |
| 일본        | 3.2     | 13.2     | 37.3      | 23.5      | 7.9       | 3.0       | 1.5       | 0.6       | 1.0      | 8.8  | 100.0<br>( 5,238)  |
| 북미·호주·서유럽 | 2.1     | 1.4      | 7.7       | 24.7      | 18.5      | 12.9      | 9.6       | 5.2       | 7.0      | 10.8 | 100.0<br>( 2,316)  |
| 기타        | 2.9     | 11.6     | 38.0      | 19.8      | 8.9       | 3.4       | 1.5       | 0.7       | 1.7      | 11.5 | 100.0<br>( 7,075)  |
| 여성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전체        | 5.1     | 16.4     | 38.6      | 18.5      | 5.4       | 1.6       | 0.8       | 0.4       | 0.6      | 12.5 | 100.0<br>(115,232) |
| 중국(한국계)   | 5.5     | 19.0     | 40.5      | 20.5      | 5.9       | 1.7       | 0.6       | 0.2       | 0.4      | 5.6  | 100.0<br>( 34,952) |
| 중국(한족 등)  | 4.1     | 13.8     | 39.7      | 21.3      | 6.9       | 2.1       | 0.9       | 0.4       | 0.6      | 10.2 | 100.0<br>( 32,033) |
| 베트남       | 5.2     | 17.3     | 38.1      | 14.7      | 2.4       | 0.6       | 0.3       | 0.2       | 0.2      | 21.1 | 100.0<br>( 24,145) |
| 필리핀       | 9.1     | 19.9     | 28.9      | 8.3       | 3.6       | 0.8       | 1.3       | 1.0       | 1.8      | 25.3 | 100.0<br>( 7,681)  |
| 몽골        | 4.9     | 12.3     | 44.5      | 17.4      | 5.6       | 0.7       | 0.8       | 0.3       | 0.5      | 13.1 | 100.0<br>( 1,750)  |
| 태국        | 4.9     | 15.8     | 39.1      | 20.1      | 4.9       | 1.2       | 0.7       | 1.0       | 0.7      | 11.5 | 100.0<br>( 1,668)  |
| 캄보디아      | 8.6     | 15.1     | 38.3      | 12.0      | 3.1       | 0.7       | 0.2       | 0.1       | 0.2      | 21.6 | 100.0<br>( 2,445)  |
| 일본        | 3.3     | 13.6     | 38.5      | 23.1      | 7.2       | 2.7       | 1.3       | 0.5       | 0.8      | 8.9  | 100.0<br>( 4,866)  |
| 북미·호주·    | 2.8     | 0.8      | 8.9       | 18.1      | 14.4      | 6.4       | 11.5      | 5.5       | 10.6     | 21.0 | 100.0              |

| 구분            | 50만원<br>미만 | 50~<br>100<br>만원 | 100~<br>200<br>만원 | 200~<br>300<br>만원 | 300~<br>400<br>만원 | 400~<br>500<br>만원 | 500~<br>600<br>만원 | 600~<br>700<br>만원 | 700<br>만원<br>이상 | 모르<br>겠다 | 계<br>(수)           |
|---------------|------------|------------------|-------------------|-------------------|-------------------|-------------------|-------------------|-------------------|-----------------|----------|--------------------|
| 서유럽           |            |                  |                   |                   |                   |                   |                   |                   |                 |          | ( 529)             |
| 기타            | 2.9        | 11.7             | 36.6              | 19.5              | 9.1               | 3.2               | 1.5               | 0.6               | 1.5             | 13.3     | 100.0<br>( 5,165)  |
| 남성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전체            | 5.4        | 14.7             | 36.0              | 20.4              | 8.1               | 4.1               | 2.1               | 1.1               | 2.0             | 6.0      | 100.0<br>( 11,079) |
| 중국(한국계)       | 7.5        | 18.5             | 44.2              | 19.2              | 4.6               | 1.1               | 0.2               | 0.1               | 0.4             | 4.2      | 100.0<br>( 3,787)  |
| 중국(한족 등)      | 6.9        | 20.6             | 40.6              | 17.8              | 4.0               | 1.6               | 0.7               | 0.0               | 1.2             | 6.5      | 100.0<br>( 2,879)  |
| 일본            | 1.4        | 8.4              | 22.2              | 27.7              | 15.8              | 6.4               | 3.6               | 1.9               | 4.1             | 8.6      | 100.0<br>( 419)    |
| 북미·호주·<br>서유럽 | 1.8        | 1.6              | 7.4               | 26.6              | 19.7              | 14.8              | 9.1               | 5.1               | 6.0             | 7.8      | 100.0<br>( 1,789)  |
| 기타            | 3.4        | 12.4             | 41.7              | 19.4              | 8.7               | 3.5               | 1.2               | 0.8               | 2.1             | 6.7      | 100.0<br>( 2,204)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 Ⅲ.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및 평가

#### 1.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 가. 개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2010년 11월 현재 8개 부처(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가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사업을 신설하여 8개 부처 29개 세부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으로 다문화가족 증가와 더불어 사업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은 88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57억원(41%)이 증액되었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안의 특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행 159개소에서 200개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114억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수행 인력을 현행 2,491명에서 3,200명으로 확대(242억원)하며, 보건복지부가 다문화가정보육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에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부처별로 제각기 추진됨으로써 사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sup>9)</sup> 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족사업 현황을 파악한 뒤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다.<sup>10)</sup>

9) 김유경 외 3인,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2008, 31쪽

10)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세부사업 속에 내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먼저 세부사업 명을 적시한 후 내역사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표 2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처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명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총계                           | 32,581        | 47,274        | 62,914        | 88,668        |
| <b>[여성가족부]</b>               | <b>24,062</b> | <b>29,551</b> | <b>41,937</b> | <b>55,524</b> |
| 다문화가족지원                      | 816           | 814           | 1,275         | 1,489         |
|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 279           | 100           | 450           | 994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2,920         | 4,994         | 8,278         | 11,378        |
|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 18,152        | 18,943        | 24,354        | 33,708        |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관리            | 1,500         | 1,350         | -             | 1,494         |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 16,652        | 16,652        | 19,800        | 24,194        |
|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             | 941           | 2,400         | 2,400         |
|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 -             | 473           | 2,154         | 4,418         |
|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 -             | -             | 2,000         | 1,785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895           | 3,500         | 4,730         | 4,770         |
|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 176           | 2,298         | 2,249         | 2,539         |
| - 이주여성 긴급구호 및 상담전화 운영        | 719           | 1,202         | 2,481         | 2,231         |
| 여성일자리 창출 및 기반조성              | -             | 200           | 850           | 1,400         |
|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 -             | -             | -             | -             |
| 다문화 농촌정착지원                   | 1,000         | 1,000         | -             | -             |
| <b>[법무부]</b>                 | <b>1,530</b>  | <b>3,660</b>  | <b>4,670</b>  | <b>4,788</b>  |
|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 1,530         | 2,460         | 1,861         | 1,868         |
| 사회통합이수제                      | -             | 1,200         | 2,809         | 2,920         |
| <b>[교육과학기술부]</b>             | <b>3,934</b>  | <b>6,500</b>  | <b>6,200</b>  | <b>6,300</b>  |
|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 434           | 800           | 500           | 600           |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             | 2,200         | 1,500         | 1,500         |
| - 다문화가정 학생 1:1멘토링 근로장학금 지원   | -             | -             | -             | -             |
|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지원              | 3,500         | 3,500         | 4,200         | 4,200         |
| <b>[고용노동부]</b>               | <b>-</b>      | <b>52</b>     | <b>467</b>    | <b>-</b>      |
|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 -             | -             | -             | -             |
|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연구    | -             | 52            | 50            | -             |
| 민간취업기관지원                     | -             | -             | 417           | -             |
|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            | -             | -             | -             | -             |
| <b>[행정안전부]</b>               | <b>469</b>    | <b>2,429</b>  | <b>820</b>    | <b>1,360</b>  |
|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 469           | 2,429         | 820           | 1,360         |
| -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부 초청행사          | 169           | 510           | 250           | 250           |
| - 다문화정착을 위한 지도자교육            | -             | 928           | 348           | 348           |
|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개선        | 300           | 180           | 180           | 700           |
| - 지자체 공무원 순회교육,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             | 38            | 42            | 42            |
| - 외국인주민 취업안내교육 등             | -             | 773           | -             | -             |

| 세부사업 명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                                       | -              | -              | -                | 20               |
| <b>[문화체육관광부]</b>                                      | <b>2,586</b>   | <b>4,048</b>   | <b>5,644</b>     | <b>5,982</b>     |
|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br>-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원 양성지원             | 650            | 580            | 356              | 83               |
| 선진도서관 추진 및 미래지향서비스 환경개선<br>-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      | -              | 182            | 347              | 570              |
| 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br>-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래동화 콘텐츠 개발보급<br>- 다문화체험전시 | 54<br>39<br>15 | 82<br>50<br>32 | 580<br>500<br>80 | 560<br>500<br>60 |
| 디지털정보자원 확충<br>- 디브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                     | 150            | 50             | 100              | 80               |
|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 -              | 800            | 1,970            | 1,970            |
| 국립중앙박물관<br>- 다문화교육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                        | 63             | 37             | 37               | 37               |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br>- 다문화가족 생활체육지원                         | 100            | 100            | 1,100            | 1,500            |
| 이주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                             | -              | 500            | 750              | 750              |
| 국립어린이박물관 운영<br>-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문화체험교육                 | -              | 95             | 17               | 17               |
|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br>-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조사                  | 169            | 202            | 150              | 200              |
| 공연활동 지원<br>- 다문화가정대상 초청축제                             |                |                | 200              | 190              |
| 공연예술박물관 운영<br>- 다문화가정 대상 세계악기 체험                      |                |                | 12               | -                |
| 국악원 공연활동<br>-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연                            |                |                | 25               | 25               |
|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 1,400          | 1,420          | -                | -                |
| <b>[농림수산식품부]</b>                                      | <b>-</b>       | <b>426</b>     | <b>1,176</b>     | <b>1,176</b>     |
| 농업인 교육훈련<br>- 이주여성농업인교육                               | -              | 426            | 1,176            | 1,176            |
| <b>[방송통신위원회]</b>                                      | <b>-</b>       | <b>608</b>     | <b>2,000</b>     | <b>2,387</b>     |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br>-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제작                      | -              | 608            | 2,000            | 2,387            |
| <b>[보건복지부]</b>  | <b>-</b>       | <b>-</b>       | <b>-</b>         | <b>11,151</b>    |
| 영유아보육료지원<br>- 다문화가정보육료지원                              | -              | -              | -                | 11,151           |

자료: 정부 예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나. 법무부 소관 사업

법무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2010년 예산은 46억 7,000만원이고, 201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가 증가한 47억 8,8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① 외국인사회통합지원사업(18억 6,800만원) ②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사업(29억 2,000만원)으로 구성된다.

### (1) 외국인사회통합지원사업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외국인근로자, 외국적 동포, 난민 등 체류외국인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내용은 세계인의 날 행사, 출입국정책자료 발간 및 정책홍보, 외국인사회통합자원봉사자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2011년 예산안의 산출명세는 ① 세계인의 날 행사: 2억 1,500만원 ② 이민자네트워크 운영: 1억 5,100만원 ③ 외국인사회통합자원봉사자 운영비: 1억 2,600만원 ④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1억 4,000만원 등이다.

### (2)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사업

이 사업은 귀화대상자 등 우리나라 국민으로 진입할 예정인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sup>11)</sup>이고, 사업내용은 전국 76개(거점 - 29개, 일반 - 47개)<sup>12)</sup>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문화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① 한국어 과정 ② 한국사회 이해과

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 거점운영기관은 교육과정 운영, 일반운영기관의 학사관리, 강사과건, 관련 예산집행 등을 관리·감독하고, 일반운영기관은 교육과정만 운영함.

정으로 구성되고, 교육단계는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면제·감면 등 차등하여 적용된다.

[표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세부 구성단계

| 구분          | 단계    |        |        |        |                |         |
|-------------|-------|--------|--------|--------|----------------|---------|
|             |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 5 단계           |         |
| 한국어과정       | 초급 1  | 초급 2   | 중급 1   | 중급 2   | 고급             |         |
| 이 수 시 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면제             |         |
| 한국사회 이해 과정  |       |        |        |        | 일반교육<br>(50시간) |         |
| 기본소양 사전평가점수 | 결혼이민자 | 29점 이하 | 30~49점 | -      | -              | 50~100점 |
|             | 일반이민자 | 29점 이하 | 30~49점 | 50~69점 | 70~89점         | 90~100점 |

자료: 법무부

2011년 예산안의 산출명세는 ① 한국사회 이해 강사인건비: 15억 1,200만원<sup>13)</sup> ② 한국사회 이해 강사 양성 위탁비: 2억원 ③ 운영기관 운영비: 3억 7,100만원으로 구성된다.

#### 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2010년 예산은 62억원이고, 201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가 증가한 63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①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사업(6억원) ②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1:1멘토링 근로장학금 지원-15억원) ③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지원사업(42억원)을 수행하고 있다.

##### (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사업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의 다문화 이해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등 다문화 관련 연구·개발을 지

<sup>13)</sup> 한국사회 이해 강사비: 5억 400만원, 한국어 강사비: 10억 800만원

원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중앙다문화교육센터(1개소)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공주대학교 등 초·중등교원 양성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1년 예산안의 산출명세는 ①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3억원<sup>14)</sup> ②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사업: 3억원<sup>15)</sup>으로 구성된다.

### (2) 다문화가정 학생 1:1멘토링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대학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1:1로 멘토링하고 근로장학금<sup>16)</sup>을 지원하는 것이다.

### (3)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지원사업<sup>17)</sup>

이 사업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아단계부터 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관련 주체별(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 교사, 일반학생·학부모 등)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정 유아교육지원(5억원<sup>18)</sup>, 현장 중심의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sup>19)</sup>(30억원), 다문화 이해교육

14)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 개발: 1억원  
 - 다문화 교사용 참고자료, 진로·상담자료 개발·보급: 1억원  
 -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7,000만원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평가: 3,000만원

15) 교·사대 등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 30개교×1,000만원=3억원

16) 2010년 기준 시간당 8,000원, 약 2,000명 지원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예산확정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등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은 예산확정 후 국회에 보고 없이 당해년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2010년도 사업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8) ● 다문화가정 유아교육 지원: 5억원  
 -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프로그램(한국어, 인지·정서·사회 등) 개발·보완 : 1억 5,000만원  
 - 유치원 교사 대상 다문화 연수 및 매뉴얼 개발 : 1억원  
 - 유아를 위한 다문화 이해 강사 양성 지원 : 2억 5,000만원

강화<sup>20</sup>)(7억원)의 세부과제로 나뉜다.

## 라.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고용노동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2010년 예산은 4억 6,700만원이고, 2011년 예산안은 사업을 전액 삭제하고 있다. 2010년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①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사업(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연구-5,000만원) ②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4억 1,700만원)을 수행하였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은 결혼이민자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원기관 6개소(서울청 2개소, 중부청 3개소, 부산청 1개소)를 선정하여 인건비(2인·월 165만원), 운영비(월 120만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 마.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행정안전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2010년 예산은 8억 2,000만원이고, 201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66%가 증가한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은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①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사업(2억 5,000만원) ②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사업(3억 4,800만원) ③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7억원) ④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

19) • 현장 중심의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 30억원

-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원(60개교\*1,000만원) : 6억원
-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교사·퇴직교원 등) 및 캠프 : 9억 8,000만원
- 교장(감), 교사 연수 : 3억 2,000만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및 역량 강화 : 4억 6,000만원
- 취학 전 예비과정 등 초기적응교육 지원 : 2억 4,000만원

20) •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7억원

- 다문화 이해교육 활동 지원(48개교, 5~8백만원 지원): 3억원
-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교육: 2억 5,000만원
- 다문화가정 자녀 국제지도자 육성 지원 : 1억 5,000만원

연찬회사업(2,400만원) ⑤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사업(1,800만원) ⑥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사업(2,000만원)으로 구성된다.

(1)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행사사업

이 사업은 장기간 친정부모 경험이 없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2010년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 33가정 60명을 초청하였다.<sup>21)</sup>

(2)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사업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지도자로 양성하여 동일 국적의 신규 여성결혼이민자의 도우미로 활용하려는 것이다.<sup>22)</sup>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010년은 서울 영등포구, 부산 동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였다.<sup>23)</sup>

---

21)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까지 148가정 295명을 이미 초청(2007년: 43가정 86명, 2008년: 31가정 61명, 2009년: 74가정 148명)

22)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위탁하여 실시: 36회 1,964명 교육(2009년)

23) 2009년 13개 지방자치단체 25개 사업을 지원

[표 27]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      | 사 업 내 용   | 교부금액 |
|-----|------|---|------|
| 총계  |      | 총 7개 사업   | 180  |
| 서울  | 영등포구 | · 외국인을 위한 홍보게시판 설치<br>· 대림역 주변 홍보 게시판(6개) 설치  | 30   |
| 부산  | 동구   | · 화교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br>· 화교학교 주변 중국풍 보도블럭(L 200m×B 2.0) 및 중국풍 그림판 설치                  | 24   |
| 대구  | 달서구  | ·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무지개 동네 만들기<br>· 다국어 공공시설 안내판 설치(100개)<br>· 쓰레기 배출요령 다국어 안내판 설치(20개) 등 | 24   |
| 인천  | 중구   | · IT기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3개)   | 24   |
| 경기  | 안산시  | · 국경없는 거리내 다문화 가로 시설물 설치<br>· 독특한 다문화 가로 시설물(보·차도 분리) 설치                            | 30   |
| 전남  | 영암군  | · 다국어 홍보게시판 설치 및 소공원 쉼터 조성  | 24   |
| 경북  | 구미시  | · 도로·버스안내 표지판 설치<br>· 다국어 도로안내 표지판(7개) 및 버스안내 표지판(130개)                             | 24   |

자료: 행정안전부

##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2010년 예산은 56억 4,400만원 이고, 201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6%가 증가한 59억 8,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① 한국어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사업(다문화가정 한국어교원 양성지원-8,300만원) ② 선진도서관 추진 및 미래지향서비스 환경개선사업(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5억 7,000만원)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사업(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래동화 콘텐츠 개발보급-5억원, 다문화체험 전시-1억원) ④ 디브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사업(8,000만원) ⑤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사업(19억 7,000만원) ⑥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사업(다문화교육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3,700만원) ⑦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

육교실-15억원) ⑧ 이주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사업(7억 5,000만원) ⑨ 국립어린이박물관 운영사업(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문화체험교육-1,700만원) ⑩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사업(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조사-2억원) ⑪ 공연활동 지원사업(다문화가정 대상 초청축제-1억 9,000만원) ⑫ 국악원공연활동사업(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연-2억 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 1회성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분석한다.

#### (1)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원 양성지원사업

이 사업은 16개 시·도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원 1인을 파견<sup>24)</sup>하고 한국어교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 (2)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사업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의 공공도서관 내에 다문화자료실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2009년 2개, 2010년 4개 시·군·구에 다문화자료실을 조성하였다. 2011년 예산안은 다문화자료실 설치 5억원,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 7,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래동화 콘텐츠 개발보급사업

이 사업은 한국 전래동화(우렁각시 등 120편)와 아시아권 우수 전래동화(30편) 총 150편을 6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태국어, 베트남어) 동영상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다.

#### (4)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사업

이 사업은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24) · 한국어 지도자 파견 16개 시·도\*1명\*150만원\*10개월=240,000천원

· 회의비 등 20명\*250천원=5,000천원

· 기타 경비 등 10,000천원

것으로서 2011년 예산안은 글로벌 시대 다문화인재양성<sup>25)</sup>(2억 5,000만원), 이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문화공동체 문화활동지원사업(13억원), 다문화 뮤지컬 ‘러브인아시아’ 지역순회공연사업(3억원), 다문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태조사사업(1억 2,000만원)으로 구성된다.

#### (5) 디브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사업

이 사업은 디브리리포털 다문화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및 일반인에게 다문화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에게 유용한 주제별 콘텐츠, 다문화 관련 기관 소개 콘텐츠를 7개 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로 제작하는 것이다.

#### (6)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교실사업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생활체육지도자가 다문화가정 자녀, 일반인 자녀들과 함께 매주 1회 생활체육어울림교실을 운영(5억원)하고, 생활체육어울림생활체육축제를 운영(5억원)하며, 다문화가정 family day를 운영(4억원)하는 것이다.

#### (7) 이주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사업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미취학 아동)를 대상으로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를 개발·보급하려는 것으로서 한국어 방문학습 교육자료(국어놀이 단계-3단계)<sup>26)</sup>, 한국어 방문학습 교육자료 활용판<sup>27)</sup>을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25) 다문화 전문 강사를 양성하려는 것으로서 초등학교, 문화현장에 파견

26) · 교육자료 개발비: 활동지 56종, 교사용 지침서 2종, 부모용 지도서 9종(다국어판), 동요·동화 개발, 사진 개발 등 1억 2,000만원  
· 현장 시범사업비: 현장실습 및 조사 5,000만원  
· 교육자료 제작비: 음성교재, 인쇄, 단어 그림 카드 제작 2억 3,000만원

27) - 1단계-2수준, 1단계-3수준의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개발·방송 2억원  
· 1단계 2수준: 편당 8,845천 원 \* 18편= 160,000천원  
· 1단계 3수준: 편당 8,845천 원 \* 19편= 160,000천원

## 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2010년 예산은 11억 7,600만원 이고, 2011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1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은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내역사업으로 ① 농어촌 결혼 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7억 5,000만원) ② 농어촌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4억 2,600만원)으로 구성된다.

### (1) 농어촌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사업

이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기초농업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하여 농업 일반, 농기계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15회(1일 3시간) 기준으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2) 농어촌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사업

이 사업은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농업인<sup>28)</sup>과 전문여성농업인<sup>29)</sup>을 연계하여 품목별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작목별로 15회 내지 20회 교육을 진행(1일 3시간, 시간당 3만원)한다.

## 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방송통신위원회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2010년 예산은 20억원이고, 201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 증액된 23억 8,7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은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의 내역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제작사업<sup>30)</sup>을 편성하고 있다.

28) 결혼이민여성농업인: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신청일 현재 거주 기간 1년 이상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배우자 또는 가족이 교육에 동의하는 자

29) 전문여성농업인(멘토) : 농촌 결혼이민여성을 우수한 농업 인력으로 양성할 의지가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30) 2011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은 ① 스크린한국어 ② 어린이 다문화드라마 ③ 리얼리티 쇼-유아독존으로 구성된다. 첫째, “스크린한국어”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용법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한국어

## 자.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보건복지부는 2011년 예산안에 신규로 다문화가정보육료지원사업 예산 115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소득분위 70% 이하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0~4세 보육료지원사업의 대상을 벗어난 소득분위 70%를 초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 차.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201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555억 2,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정부 예산안 886억 6,800만원(2011년) 중 여성가족부 사업이 전체 예산안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① 다문화가족지원사업(14억 8,900만원) ②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사업(9억 9,400만원)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113억 7,800만원) ④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337억 800만원) ⑤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사업(17억 8,500만원) ⑥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47억 7,000만원) ⑦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1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사업, 정보제공사업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

를 익히고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다. 둘째, “어린이 다문화드라마”는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다문화가정의 주인공과 한국인 친구들이 어울리며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어린이 드라마이다. 셋째, “리얼리티 쇼-유아독존”은 다문화가정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밀착 취재하여 보여줌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감동을 전해주는 휴먼 다큐멘터리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6조이고,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정보제공사업 및 대국민 다문화이해 교육·홍보, 한국어 교재 보급, 다문화가족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2011년 예산안은 ① 다문화가족지원 정책홍보: 2억 2,400만원 ② 한국어교재보급: 2억 1,000만원<sup>31)</sup> ③ 다문화가족 정보제공사업: 6억 7,000만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 (2)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사업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예정자)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문화차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 국가(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사전 정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011년 예산안의 산출명세는 ①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정보제공사업: 7억원,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사업: 2억 9,400만원이다.

###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자조집단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21개소, 2007년 38개소, 2008년 80개소, 2009년 100개소, 2010년 현재 15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011년 예산안은 200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31) • 한국어교재 보급: 2억 1,000만원=7,000원\*200개소\*150부

[표 2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현황

(단위: 개소수)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계      | 159 | 19 | 7  | 6  | 7  | 3  | 2  | 3  | 24 | 12 | 9  | 10 | 11 | 15 | 15 | 14 | 2  |
| '09    | 100 | 4  | 4  | 4  | 3  | 2  | 2  | 2  | 10 | 8  | 7  | 7  | 9  | 13 | 13 | 11 | 1  |
| '10 신규 | 59  | 15 | 3  | 2  | 4  | 1  | -  | 1  | 14 | 4  | 2  | 3  | 2  | 2  | 2  | 3  | 1  |
| 독립     | 27  | 2  | 1  | 1  | 2  | -  | -  | 1  | 3  | 2  | 2  | 3  | 2  | 2  | 2  | 3  | 1  |
| 병합     | 32  | 13 | 2  | 1  | 2  | 1  | -  | -  | 11 | 2  | -  | -  | -  | -  | -  | -  | -  |

자료: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sup>32)</sup>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예산은 2006년 7억원, 2007년 13억원, 2008년 28억원, 2009년 48억원, 2010년 77억원으로 센터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의 산출명세는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07억 2,00만원<sup>33)</sup> ②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및 거점센터 운영비 지원: 6억 5,800만원이다.

사업지침<sup>34)</sup>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본사업”으로 ① 한국어교육 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 ③ 취·창업지원 ④ 자조모임 ⑤ 상담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특성화사업”으로 ① 이중언어교실 ② 언어발달지원사업 ③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다문화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395,091명, 다문화사회이해교육 85,501명, 가족교육 92,898명, 상담 19,720명, 취·창업교육 75,36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3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33) • 107억 2,000만원 = 200개소\*8,000만원\*67%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수 : 41개소 증가 (2010년 159개소 → 2011년 200개소)

34) 보건복지부,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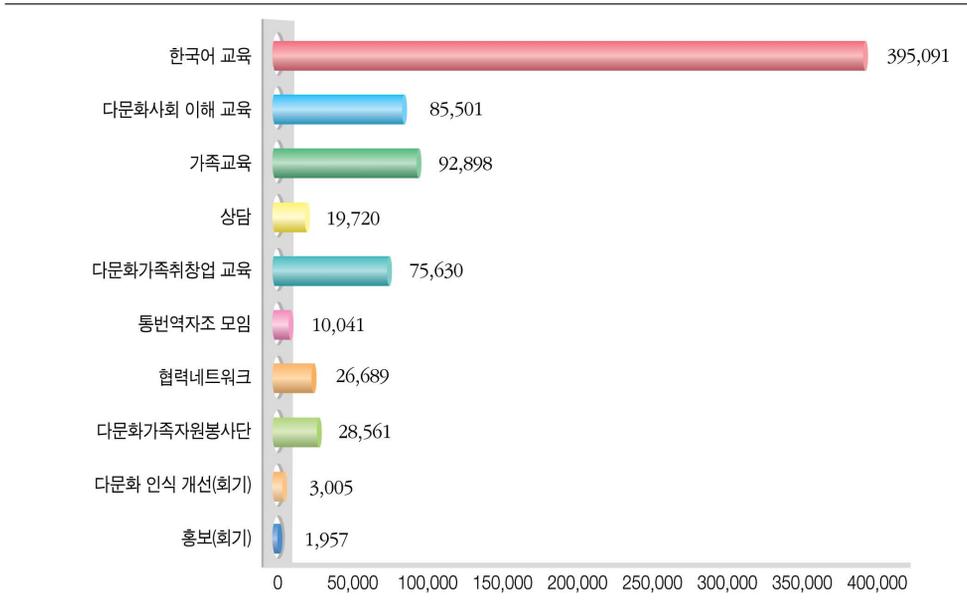
[표 2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성과

(단위: 연인원 명)

| 구분  | 한국어 교육  |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 가족 교육  | 상담     | 취·창업 교육 | 통번역 자조 모임 | 협력네트워크 |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
|-----|---------|-------------|--------|--------|---------|-----------|--------|-------------|
| 연인원 | 395,091 | 85,501      | 92,898 | 19,720 | 75,360  | 10,041    | 26,689 | 28,561      |

자료: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과보고서

[그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성과



자료: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과보고서

#### (4)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이중언어교실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1년 예산안은 ①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256억 8,800만원 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24억원 ③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44억 1,800만원 ④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실사업: 12억 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또는 아동양육 관련 서비스(주 2회 5개월, 1회 최소 2시간)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은 언어소통이 어려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아동양육지원은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실적은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어교육 9,200명, 아동양육지원 9,400명이다.

[표 3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적

(단위 : 명)

| 구분           | 한국어교육 |       | 아동양육지원 |        |
|--------------|-------|-------|--------|--------|
|              | 지도사   | 대상가정  | 지도사    | 대상가정   |
| 2007년        | 288   | 2,500 | 230    | 2,258  |
| 2008년        | 1,129 | 6,265 | 1,559  | 11,497 |
| 2009년        | 1,264 | 9,200 | 1,295  | 9,400  |
| 2010년(6월 기준) | 1,279 | 5,518 | 1,141  | 4,629  |

자료: 여성가족부

둘째,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통·번역 전문 인력은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198명이 채용되어 있고, 베트남어 전문 인력이 80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 계   | 베트남어 | 중국어 | 필리핀어/영어 | 몽골어 | 태국어 | 러시아어/우즈베크어 | 인도네시아어 | 캄보디아어 | 일본어 | 네팔어 |
|-----|------|-----|---------|-----|-----|------------|--------|-------|-----|-----|
| 198 | 80   | 68  | 17      | 12  | 5   | 5          | 3      | 3     | 4   | 1   |

주: 2010년 6월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표 32]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현황

(단위: 건)

| 일상생활   | 의료    | 법률    | 교육    | 기타    | 계      |
|--------|-------|-------|-------|-------|--------|
| 11,150 | 1,765 | 1,940 | 9,733 | 3,758 | 28,346 |

주: 2010년 6월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셋째,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언어지도사<sup>35)</sup>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배치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문화언어지도사는 언어발달 체크 및 상담, 발음(조음·음운) 체크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진단하고,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의사소통 및 사회성 증진 등 언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진단아동 수는 2,904명이고, 교육아동 수는 5,471명(2009년부터 누적)이다.

[표 3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현황

(단위: 명)

| 구분 | 다문화언어지도사 수        | 진단 및 교육아동수 |                      |                      |
|----|-------------------|------------|----------------------|----------------------|
|    |                   | 계          | 진단아동 수<br>( '10.2~6) | 교육아동 수<br>( '10.2~6) |
| 인원 | 100<br>(92개센터 배치) | 8,375      | 2,904                | 5,471                |

주: 2010년 6월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35) 다문화언어지도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전문 인력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 관련학과
-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아동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

#### (5)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사업

이 사업은 안산시에 글로벌다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형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1년 예산안은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로 17억 8,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이 사업은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하여 상담 및 긴급지원, 일시적 보호,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개소)와 지역 센터(6개소) 운영, 이주여성쉼터(18개소) 운영,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1개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2011년 예산안의 산출명세는 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지원: 20억 1,900만원 ② 이주여성쉼터 종사자 워크숍: 2,000만원 ③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5억원 ④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14억 9,500만원 ⑤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4억 3,200만원 ⑥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운영: 3억 400만원으로 구성된다.

#### (7)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재능과 출신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직종을 발굴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2011년 예산안은 366명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1인당 50만원, 6개월)하는 것이다.

## 2.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sup>36)</sup>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시·도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한국생활 안내,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아니한 시·도의 독자적인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59억 7,300만원, 2009년 142억 6,200만원, 2010년 97억 3,600만원이고 2011년 예산안은 107억 6,600만원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정 지원, 대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어교실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아니한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45억 9,300만원, 2009년 109억 9,900만원, 2010년 127억 3,900만원이고 2011년 예산안은 166억 9,800만원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3.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 가. 유사사업 중복 검토

정부가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농촌정착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농어촌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사업”을 신설하는 등 유사한 사업을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사업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 일자리 제공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유사한 일자리지원사업을 두 개의 부처에서 나누어

---

36)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시·도별 구체적인 현황은 부록을 참조할 것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둘째, 다문화 인식개선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 다문화이해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사업” 중 내국인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유사한 인식개선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아동청 소년 언어발달지원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 교육인력 양성도 사업내용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나. 부부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sup>37)</sup>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상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나 159개 센터 종사자 257명 중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16명에 불과하여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센터(2009년 기준 100개)이용자 중 배우자 이용비율이 12.4%, 시부모 이용비율 2.8%에 불과한 실정으로 부부교육, 부모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한 부부교육, 부모교육 프로그

3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 등 각종 서비스에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가족들의 허락과 지원’을 꼽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표 34]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참여를 위한 지원 요구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 가족의 허락, 지원 | 편리한 시간 | 자녀돌봄 | 교통편  | 통역 서비스 | 기타  |
|----------|------------|--------|------|------|--------|-----|
| 농촌(211명) | 29.9       | 25.6   | 21.8 | 16.6 | 5.7    | 0.5 |
| 도시(701명) | 28.7       | 25.5   | 24.5 | 10.6 | 6.7    | 4.0 |
| 전체(912명) | 28.9       | 25.5   | 23.9 | 12.0 | 6.5    | 3.2 |

자료: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06.12)

## 다. 해체 다문화가족 보호 필요

현재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개소)와 지역 센터(6개소)를 운영하고,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시설(18개소)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sup>38)</sup>이다. 「다문화가족지원

3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법」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됨으로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비보조 조문을 근거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소는 중앙 1개소, 지역 6개소가 설치된 것에 불과하므로 16개 시·도에 1개씩 상담소가 설치되도록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가정해체 이후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체적인 보호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정해체 이후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안정, 취업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라. 다문화전문인력 효율적 운영 필요

다문화전문인력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의 4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표 35] 다문화전문인력 양성 현황

| 소관 부처 | 세부사업 명                                   | 사업내용                               |
|-------|--|------------------------------------|
| 여가부   |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br>-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전문지도사 양성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사회전문강사 양성                       |
| 문화부   |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br>- 글로벌 시대 다문화 인재양성       | 다문화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초등학교 등 파견          |
|       |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원 양성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한국어지도사 파견  |
|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 한국사회 이해 강사 양성                      |
| 행안부   |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br>-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지도자로 양성 |

자료: 정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구성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사업과 법무부의 한국사회이해강사 양성위탁 사업은 다문화사회이해 교육을 위한 교육인력 양성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인력 양성의 경우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내용의 일관성 및 사업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처간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문화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V. 외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 개 요

다문화사회는 국적, 민족,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Castles & Miller는 각 국의 이주민 수용방식을 ① 차별적 포섭·배제 유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② 동화주의 유형(assimilationist model) ③ 다문화주의 유형(multicultural model)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차별적 포섭·배제 유형은 소수집단과의 접촉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회피하는 유형으로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국가는 동화주의<sup>39)</sup> 유형이나 다문화주의<sup>40)</sup> 유형을 지향하고 있다. 동화주의 유형은 주류문화를 위주로 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고<sup>41)</sup>, 다문화주의 유형은 주류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상호존중의 질서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지향한다.<sup>42)</sup>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활성화되고,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국제교류와 국제결혼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전통적으로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하던 국가들도 다문화사회의 도

39) 동화주의는 다수집단 또는 사회의 주류가 만들어둔 기준에 의하여 후기 이주민 또는 이주민화가 이미 형성된 사회기준에 알맞은 형태로 동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40) 다문화주의는 이민이나 국제결혼으로 만들어진 소수의 인종집단이나 문화집단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소수집단들이 그들의 문화, 종교, 언어사용 등에 있어서 모든 집단에게 자유를 인정하고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41) 동화주의 유형은 이주민이 동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 동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분리와 배제로 인하여 서로 다른 문화간의 충돌과 사회적 이질감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 소수 집단의 통합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판을 받음.

42) 다문화주의 유형은 민족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실행과정에서 많은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

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유입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sup>43)</sup>, 사회변동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다문화정책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장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대안적 다문화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 국의 다문화정책 선행유형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첫째, 동화주의 유형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동질적인 문화를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한 국가들로서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3국의 정책을 통하여 유사한 정책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주의 유형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이민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이민국가로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다원주의를 채택하여 다문화정책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므로 각 국에 독자적인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시사점을 찾아본다.

셋째,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통합법(Integration Act)을 제정한 국가이고, 이민정책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바꾸는 철저한 실용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덴마크의 실용주의는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수행에 있어 참고하여야 유형으로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43)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진입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계주민은 1,139,283명으로 외국인비율이 주민등록 인구의 2.3%이고,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09년까지 매년 20% 이상 증가율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0년의 경우 증가율이 2.9%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은 가장 높은 비율(49.0%)을 차지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감소(2009년 대비  $\Delta$  3.0%)한 것과 결혼이민자가 소폭 감소(2009년 대비  $\Delta$  0.5%)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외국인근로자 : '08년 43만명 → '09년 57만명(+31.5%) → '10년 55만명( $\Delta$ 3.0%)

※ 결혼이민자 : '09년 125,673명 보다 586명이 감소( $\Delta$ 0.5%)한 125,087명

## 2. 동화주의 유형

### 가.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 (1) 다문화가족 현황<sup>44)</sup>

프랑스의 이민자 규모는 2005년을 기준으로 약 496만명이 집계되어 프랑스 인구의 8.1%를 차지하고 있다(프랑스 인구통계청, 2007). 이민자가 정 아동의 43.5%는 국제결혼가정의 아동으로 85.9%가 프랑스에서 출생한 2세 아동이다(Kirszbaum·Brinbaum & Simon, 2009).

[표 36] 프랑스 이민자 및 외국인 변화추이

|                | 1982      | 1990      | 1999      | 2005      |
|----------------|-----------|-----------|-----------|-----------|
| 이민자(a+b)       | 4,037,036 | 4,165,952 | 4,306,094 | 4,959,000 |
| 남성             | 2,178,816 | 2,168,271 | 2,166,318 | 2,458,000 |
| 여성             | 1,858,220 | 1,997,681 | 2,139,776 | 2,501,000 |
| 시민권 획득자(a)     | 1,167,368 | 1,307,926 | 1,556,043 | 1,992,000 |
| 외국 출생 외국인 (b)  | 2,869,668 | 2,858,026 | 2,750,051 | 2,966,000 |
| 프랑스 출생 외국인 (c) | 651,000   | 737,000   | 508,488   | 535,000   |
| 외국인(b+c)       | 3,520,668 | 3,595,026 | 3,258,539 | 3,501,000 |

자료: 프랑스 인구통계청, 2007.

프랑스 이주민 구성은 2005년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2.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럽(40.3%), 아시아(13.9%), 미주(3.5%) 등의 순서이다.

44) 김승권 외 7인, 전계서, 60쪽 이하

[표 37] 프랑스 이민자 구성

| 출생국가     | 합계        | 시민권획득자   | 외국인       |
|----------|-----------|----------|-----------|
| 이민자 총 합계 | 4,959,000 | 1992,000 | 2,966,000 |
| 유럽       | 1,985,000 | 785,000  | 1,200,000 |
| 아프리카     | 2,108,000 | 837,000  | 1,271,000 |
| 아시아      | 690,000   | 300,000  | 390,000   |
| 미주       | 171,000   | 71,000   | 100,000   |
| 오세아니아    | 5,000     | -        | -         |

주: 2005년 기준

자료: 프랑스 인구통계청, 2007.

## (2) 정책방향

프랑스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프랑스가 추구하는 공화주의에 동화시키기 위한 동화주의이다. 프랑스는 혁명 이념인 공화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은 자신들이 지니는 개별적 정체성과 상관없이 공화주의의 기치아래 통합되어야 하고 민족, 문화, 종교 등의 개인적 특수성은 공적 영역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프랑스 정부는 2005년의 소요 사태<sup>45)</sup>를 계기로 동화주의 통합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나 이주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폐쇄적으로 전환되었다. 시민권 및 국적 취득의 요건이 강화되어 2006년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loi du 14 novembre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egration*)」이 제정되었다.<sup>46)</sup>

45) 2005년 10월 27일 파리 북동쪽에 위치한 클리쉬-슈-부아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아랍계 두 소년이 인근 변전소 시설에 감전사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주민 23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태로 프랑스 본토에서 국가비상사태법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30일 동안 247개 도시에서 방화 및 건물파괴, 차량 소실 등 폭동이 일어났던 사건임.

46) 프랑스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프랑스 국적취득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이

### (3) 다문화정책 관련 제도

#### (가) 법령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법령은 1945년 제정된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과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2006년 제정된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loi du novembre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egration)」, 2008년 제정된 「이민통제·동화 및 망명에 관한 법률(loi du 20 novembre 2008 relative à maîtrise de l'immigration, à l'integration et l'asile)」이 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법률로 2001년 제정된 「차별퇴치에 관한 법」, 2006년 제정된 「기회균등법(loi pour l'égalité des chances)」이 있다.

첫째,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2006년)」은 프랑스 정부가 선택적 이민체제(selective migration system)를 도입한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여 가족재결합 조건의 강화, 선별적 이민의 강화, 거주 및 국적취득의 제한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이민통제·동화 및 망명에 관한 법률(2008년)」은 이민통제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규정하였다. 가족재결합 조건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유치기간을 12일에서 30일로 늘려 불법체류를 억제하는 것이다. 법률시행 결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이주민 숫자가 2006년에는 2.6% 감소하고, 망명허가 역시 35%가 감소하였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2005년 22,000명에서 2006년 33,000명으로 증가하였다.<sup>47)</sup>

셋째, 「차별퇴치에 관한 법(2001년)」은 고용을 포함한 차별에 대하여 시민단체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차별행위

---

주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프랑스로 데려오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며, 10년 동안 거주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47)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 42권제3호, 2008. 477쪽

에 대한 사실증명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하여 자신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규정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1998년 이후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인종차별 퇴치 협정을 체결하였고 통합과 차별퇴치 지원기금(Funds d'Action et de Soutien pour l'integration et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FASILD)을 설치하였다.

끝으로, 「기회균등법(2006년)」은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소외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48)</sup>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소요사태 이후 동화주의 통합정책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2006년 3월 교육과 고용에 있어 기회균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Agenc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égalité des chances)를 설립하였다.

#### (나) 기관

2007년 이전까지 4개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co-développement)를 신설하였다. 이 부서는 이민의 흐름을 억제하고, 통합을 촉진하며, 프랑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발전을 장려한다는 4대 목표를 기치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sup>49)</sup> 이민을 억제하기 위하여 선별적 이주정책, 가족여부 검증을 위한 DNA 검사, 불법이민의 통제를 위한 단속쿼터제 실시 등의 조치를 취

---

48) 이 법은 청년실업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연소자에 대한 수습교육 기회 제공, 수습근로자의 지위 강화, 이주민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차별방지 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주민 2세들이 학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이주민의 실업률이 자국민에 비하여 1.5배 이상 높고, 취업에 있어서 이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록 법률이 이주민 2세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Vaisse, J., "Unrest in France, November 2005: Immigration, Islam and the challenge of integration", Paper presented to Congressional Staff on January 10, 12, 2006, Washington D. C, 2006.)

49) 김은정,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일본, 프랑스, 독일의 자국어 교육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84쪽

하고 있다.<sup>50)</sup>

2004년 12월 외국인고용과 관련하여 차별퇴치평등고용청(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HALDE)을 대통령 산하에 설립하였다. HALDE의 업무는 인종차별 금지, 평등의 실현 및 신장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인종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공적·사적 영역에서 행하여지는 인종차별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sup>51)</sup>

#### (4) 다문화정책 내용

##### (가) 고용지원

프랑스 이주민 고용정책은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주민이 프랑스어 언어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할 뿐이고 적극적인 고용촉진정책이나 소수자 우대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한다.<sup>52)</sup>

##### (나) 자녀교육 지원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교육 수준은 내국인과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 예로 15세 아동의 수학, 언어 및 학업수준을 비교한 국제 PISA 연구 결과를 보면 이주민 가정의 아동이 프랑스인 가정의 아동보다 약 70-80점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증가하는 이주민 가정 아동·청소년이 프랑스 사회에 원활한 적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sup>53)</sup> 1975년 이주민가정 아동의 프랑스어 습득을 위한 프랑스어 입문반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여기에는 특별교사가 배치되어 프랑스어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프랑스 학교적응을 위한 문화, 역사를 비롯한 프랑스 이

50) 한승준, 전개논문 477쪽

51) 광원섭, 「이주민통합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55-56쪽

52) 광원섭, 전개논문 64쪽

53) 한승준, 전개서 477쪽

해교육을 실시한다. 1981년 프랑스정부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교육중점지역(Priority Education Zone-ZEP)<sup>54</sup>를 마련하였다. ZEP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이주민 가정 아동을 위하여 실행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나 ZEP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주민 가정의 아동이 총 이용자의 30%를 넘고, ZEP 지역이 이주민 집중지역과 중첩된다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중점대상이 이주민가정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2006년부터 Ruèseau ambition rùssite(RAR)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RAR은 ZEP 중 고위험군 지역을 선택하여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1,000명 이상의 경력 교사들과 3,000명 이상의 교육학 조교(pedagogical assistants)를 지원하고 있다.<sup>55</sup>

프랑스 정부는 이주민 아동의 프랑스 학교로의 통합을 위하여 1965년부터 1984년까지 이주민 자녀 학교 적응을 위한 정보센터(Centres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migrants: CEFISEM)을 설치하였다. 정보센터는 초등학교에 통합반(Les classes d'intégration: CLIN), 중학교에 적응반(Les classes d'adaptation: CLAD)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CEFISEM는 CASNAV(Centre académique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naf) et des enfants du voyage)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CASNAV는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직속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CASNAV 파리센

54) 교육중점지역(ZEP) 방향

- ① 저소득층, 낮은 졸업률, 높은 외국인 인구 비율, 높은 실업률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인구들이 집중해서 거주하는 지역을 ZEP으로 선정, 선정된 지역 공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 ② 모든 지식 습득의 기본이 되는 언어 습득 및 숙달에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 ③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기교육을 장려한다.
- ④ 생활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을 위해 교사교류, 보충수업, 상급학교 방문, 안내책자 배부 등 상급학교로의 지원을 제공한다.
- ⑤ 우선교육망을 설치, 우선교육의 실행 경험과 방법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이를 위한 학군별 자료관을 설치 담당자들을 지원한다.

55) 김승권 외 7인, 전계서 68쪽

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① 이주민 가정을 위한 학교 입학정보 제공 ②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 ③ 지역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파리 CASNAV은 20개 구 중 15개 구에 초등학교 통합반(CLIN)이 개설되었으며 총 604명의 아동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6)</sup>

## 나. 독일의 다문화정책

### (1) 다문화가족 현황<sup>57)</sup>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7년 약 7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한다.<sup>58)</sup>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sup>59)</sup>은 2005년을 기준으로 약 10%를 차지한다.(독일연방 통계청, 2006)

[표 38] 독일 외국인 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 2005       | 2006       | 2007       |
|--------|------------|------------|------------|
| 독일인    | 75,148,800 | 75,059,000 | 74,960,800 |
| 외국인    | 7,289,100  | 7,255,900  | 7,257,000  |
| 총인구    | 82,531,700 | 82,314,900 | 82,217,800 |
| 외국인 비율 | 8.8%       | 8.8%       | 8.8%       |

자료: 독일연방 내무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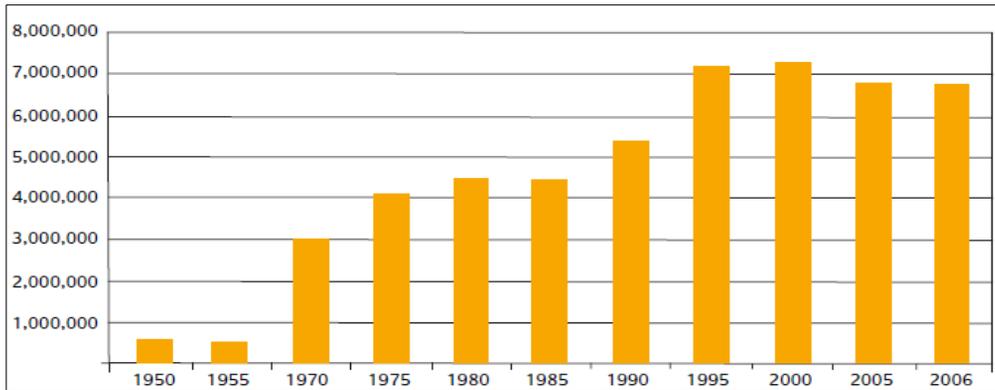
56) 김은정, 전계논문 86·87쪽

57) 김승권 외 7인, 전계서 69쪽 이하

58) 독일 전체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부터 약 9%로 지속됨(연방내무부, 2008).

59) 부모세대에서 독일로 이주하여 독일에서 출생, 외국인이었으나 독일로 귀화, 독일인-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독일 출생 자녀 및 혼 자녀를 말함.

[그림 2] 독일 외국인 인구 추이



자료: 독일연방 내무부, 2008.

독일의 다문화가족 자녀는 2006년을 기준으로 68,265명이 출생하여 독일 전체 출생률의 약 10.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57%인 39,089명이 2000년에 시행된 국적법에 따라 독일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개정 국적법에 따라 독일 시민권을 획득한 이주민 가정의 자녀는 270,352명으로 나타난다.

[표 39] 독일 출생률

(단위: 명)

| 구분   | 총 출생      | 외국인 부모 가정     | 2000년 시행된 국적법에 따라 독일 시민권 취득 |
|------|-----------|---------------|-----------------------------|
| 2000 | 766,999   | 91,033(11.9%) | 41,257                      |
| 2001 | 734,475   | 82,773(11.3%) | 38,600                      |
| 2002 | 719,250   | 78,993(11.0%) | 37,568                      |
| 2003 | 706,721   | 76,174(10.8%) | 36,819                      |
| 2004 | 705,622   | 73,077(10.4%) | 36,863                      |
| 2005 | 685,795   | 70,417(10.3%) | 40,156                      |
| 2006 | 672,724   | 68,265(10.1%) | 39,089                      |
| 총    | 4,991,586 | 540,732       | 270,352                     |

자료: 독일연방 내무부, 2008.

## (2) 정책방향

독일은 2차 대전 전후 경제복구를 위한 외국인노동력 유입을 장려하여 1955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그리스, 터키 등 주변 국가들과 노동력 파견협약을 통하여 소위 '손님노동자'(Gastarbeiter)를 받아들였다.<sup>60)</sup> 1970년대 초반 외국인 과잉유입에 대한 우려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주민가족의 고용제한, 가족재결합의 제한, 차등적인 아동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주민 유입을 줄이고 기존의 외국인을 귀환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sup>61)</sup> 1980년대 들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정책이 고수되었으나 이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는 동유럽으로부터 이주가 증가하고 1991년 독일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긴장이 조성되고 정치적 문제까지 비화되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시민권 및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은 전통적인 속민주의 방식을 변경하여 이주민 가정 출생자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다.<sup>62)</sup> 이 법은 외국인이 일정한 조건<sup>63)</sup>을 갖추고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경우 독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법률 개정 전 국적 신청 자격요건이 15년 이상 독일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파격적이다.

2005년 「이민법(the new Immigration Act of 2005-Zuwanderungsgesetz)」을 제정하여 국적 및 난민, 이민, 망명 등 이주와 관련된 문제를 체계

60) 이용승, 「독일의 다문화 가족정책」, 민족연구, 2007. 117쪽

61) 1973년부터 시작된 이주금지조치는 기존에 본국에 돌아갈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재입국이 불허될 것을 염려하여 정주를 선택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당시 인도적 차원에서 비교적 허용범위가 넓었던 가족재결합을 추진하여 1973년 외국인노동자 1인당 1.7명이었던 외국인 수가 1980년 2.3명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2) 이용승, 전개논문 119쪽

63)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독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재정적 자립능력이 있으며 독일의 기본적인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신원조회기록 결과 상 범죄기록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2008년 9월 1일부터는 독일의 헌법,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민권시험(naturalization test)를 통과하여야 한다.

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독일 사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이민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였고,<sup>64)</sup>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연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예산지원을 명시한 점이다. 「이민법」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단일화과정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2007년 EU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도록 「이민법」이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강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연령 하한을 18세로 규정하고, 가족재결합을 위하여 입국하는 배우자에게 독일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요구하며, 외국인은 반드시 통합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추가하였다.<sup>65)</sup> 2007년 제2차 사회통합 정상회의를 열어 국가통합계획(der Nationaler Integrationsplan)을 수립하였다. 제2차 사회통합 정상회의에는 독일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각료, 다양한 이주자 연합, 비정부 민간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지난 1년 동안 6개의 워킹그룹이 작성한 약 400개의 조치에 합의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다. 국가통합계획은 연방 정부, 주 정부,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기여방안을 논의하고, 통합과정, 언어지원,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여성지원, 지역의 통합노력 지원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sup>66)</sup>

---

64) 박채복, 「독일의 여성이주자정책」, 유럽연구 제27권3호(2009년 겨울), 71쪽

65) 이용승, 전계논문 121쪽

66) 김상무, 「독일 다문화교육정책의 전개」, 교육정책포럼 제196호, 한국교육개발원, 2009. 21쪽

[표 40] 독일 시기별 이주민 정책

| 시기        | 단계   | 내용  |
|-----------|------|---|
| 1955-1972 | 모집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모집</li> <li>•소위 '손님노동자' 유입</li> </ul>                             |
| 1973-1980 | 확정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상황 악화로 1973년 외국인력모집 중단조치, 1977년까지 가족재결합 제한</li> <li>•독일은 이민수용국이 아니라는 입장 명확</li> </ul> |
| 1981-1998 | 방어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은 이민수용국이 아니라는 입장 고수</li> <li>•외국인법 개정(1997. 1. 1 효력)</li> </ul>                       |
| 1999-현재   | 인정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적법 개정(2000. 1. 1 효력)</li> <li>•2005년 이민법 제정</li> <li>•2007년 국가통합계획 수립</li> </ul>       |

자료: 「독일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구」(김재경, 1997)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3) 다문화정책 관련 제도

#### (가) 법령<sup>67)</sup>

독일의 다문화정책과 관련 가장 중요한 법은 2005년 제정된 「이민법」으로 외국인의 입국 및 거주, 이주자의 통합정책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독일에 체류하기 위한 법적 조항이 간소화되어 기존의 「외국인법」 제5조에 규정된 외국인 체류허가의 구분인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체류인가(Aufenthaltsbewilligung), 체류권한(Aufenthaltsberechtigung), 체류재량권(Aufenthaltsbefugnis) 등은 이 법의 제정으로 유기한적인 체류허가(이민법 제7조)<sup>68)</sup>, 무기한적인

67) 박채복, 「한국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2008년, 257쪽

68) 체류허가(Residence permit, Aufenthaltserlaubnis): 독일 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EU 회원국민인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대부분 이민법에 제시된 것과 같이 교육, 직업훈련, 취업, 정치적 혹은 가족동반 등의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발급 자격요건으로는 주거등록서류(residence registration-Anmeldebestätigung), 의료보험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for Residence Permit- Gesundheitszeugnis für Aufenthaltserlaubnis), 생계보장 증빙서류 + 신원보증서류(본국 관할기간 발급) 등이 있다. 허가를 발급받은 후 취업이 가능하기도

정착허가(이민법 제9조)<sup>69)</sup>로 간소화되고, 장기적 EC체류허가<sup>70)</sup> 자격을 부여하였다. 둘째, 정주가 가능한 노동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숙련기술자와 전문 인력의 이민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라 허용함으로써 노동허가제, 모집금지원칙의 예외규정을 핵심으로 노동이민의 합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독일경제의 발전과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예상되는 자영업자의 이민이 최초로 허용되었다. 넷째, 외국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마치고 1년 동안 독일 내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 (나) 기관

2005년 이민법 제정에 따라 독일 정부는 외국인과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정책을 전담할 기구인 이민과 난민을 위한 연방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을 연방 내무부에 신설하여 연방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BAMF는 사회통합기획과, 사회통합교육지원과,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3개과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업무는 이민법에 따른 통합코스 실행, 지역별 사회·문화적 통합사업 조정, 연방 차원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 총괄, 사회통합 프로젝트 지원, 이주초기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

한데 이는 해당직업에 적합한 독일국민, EU 회원국가 국민, EU 비회원국가 국민, 정착허가 소유인 등이 없을 경우 가능하다.

69) 정착허가(Settlement permit, Niederlassungserlaubnis: 체류허가 소지 5년 이상 + 생계보장 증빙서류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 소득증명서 등) + 60개월 이상 연금기여 실적 + 5년 이상의 취업 기록 + 최근 3년 동안의 전과기록 없는 자 + 취업허용자 + 취업가능 기술소지 + 독일어 및 독일 사회에 대한 이해력 + 주거기록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발급된다. 허가 발급 시, 독일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되며 취업 및 자영업이 추가 조건없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70) 장기적 EC체류허가(Long-term resident's EC resident permit,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G: 영구거주를 전제로 하며 독일 혹은 EU회원 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제 3국가 출신 외국인들에게 발급된다. 정착허가와 마찬가지로 이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독일국민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주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BAMF는 통합정책 실시기관인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중시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sup>71)</sup> BAMF는 각종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용과정에서 여성이주자들에게 여성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차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들 간의 조정역할을 수행한다.<sup>72)</sup>

#### (4) 다문화정책 내용

##### (가)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제공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제공되는 초기오리엔테이션과 「이민법」 제43조에 따라 제공되는 오리엔테이션강좌 및 통합강좌이다. 첫째, 초기오리엔테이션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독일안내서를 독일어와 이주민 모국어로 배포하고,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초기오리엔테이션은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둘째, 오리엔테이션 강좌는 독일의 법질서, 문화와 역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법질서의 내용은 독일연방의 국가성립, 법치국가, 기본법과 국민의 의무, 유럽사회적 시장경제이고, 역사 영역은 유럽의 통합, 독일의 이민사 및 지역사 등이며, 문화 영역은 인간의 이해, 종교적 다양성, 문화와 지역의 다양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주민이 선택하여 수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총 45시간<sup>73)</sup>의 수업이 제공된다. 수업은 독일어로 제공되며 수업 수강 이후 필기 또는 구술시험을 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

71) 박채복, 「한국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2008년, 254쪽

72) 박채복, 「독일의 여성이주자정책」, 유럽연구 제27권3호(2009년 겨울), 71쪽

73) 통합강좌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2006년에 실행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2007년 말에 시행된 “통합강좌에 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법률(Ordinance Amending the Ordinance on the Integration Course)”의 기초가 되었다. 2007년 말부터 오리엔테이션 강좌 수강 시간이 30시간에서 45시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전에 각 주마다 다른 형태로 실행되었던 필기구술시험은 국가적으로 획일화된 시험으로 대체되었다(연방내무부, 2008).

셋째, 통합강좌는 언어교육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강좌이다. 참여자는 통합강좌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참여의무를 아울러 지켜야 한다. 의무수행 여하에 따라 국적취득 신청기간을 8년에서 1년이 감소한 7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독일어 능력은 교육체계 및 노동시장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이고, 외국인이 독일사회에 빠르고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는 집중적인 언어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언어강좌는 참여자의 기초지식과 학력수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국가통합계획에 따라 여성, 청소년과 같은 특수 집단을 위하여 특별언어강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시행한다.

#### (나) 상담지원 및 정보제공

BAMF는 이주민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새롭게 이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개별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주는 기초상담실을 운영하고, 가족·여성·노인·청소년부는 별도로 청소년 이주상담소를 운영한다. 독일 전역에 366개의 이주청소년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BAMF는 연방정부, 주 정부, 지역사회가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민을 위한 기본정보(Welcome to Germany: Basic Information for Immigrants) 등 공공교통시설 이용, 공공기관 이용, 재정지원, 학교 및 직업 소개, 언어교육 소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리플렛 및 책자 등을 매년 제공하고 있다.

#### (다) 자녀교육 지원

독일 정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부서를 따로 설치하고 이주민 아동과 청소년들의 적응 및 언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

원하고 있다. 그 예로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가정 자녀지원 지역사무소(Regionale Arbeitsstellen Förder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aus Zuwandererfamilie: RAA)를 들 수 있다.<sup>74)</sup> RAA는 다문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주민 아동의 다언어 습득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주민 아동의 부모와는 어떻게 조화롭게 소통할 것인지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RAA의 프로그램은 사업추진 대상을 연령대별, 역할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다양한 대상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어 교육뿐만 아니라 모국어 교육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특징적인 사항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모국어에 능통하면 제2언어인 독일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다문화 언어교육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다.<sup>75)</sup>

---

74) 김은정, 전계논문 102~104쪽

75) 김은정, 전계논문 105쪽

[표 41] RAA의 주요 언어 프로그램

| 사업명                                      | 대상            | 목적             | 사업내용  |
|--|---------------|----------------|---|
| 손잡고 이끌기<br>(Griffbereit)                 | 1~3세          | 다언어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li> <li>• 독일어 향상을 위한 모국어 능력신장</li> <li>• 자녀와 어머니의 친밀감 형성,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li> </ul> |
| 배낭(Rucksack)                             | 4~6세          | 다언어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 가정 아동의 독일어 및 모국어 능력 향상</li> <li>• 아동의 사회성 발달촉진</li> <li>• 부모참여 교육 및 보육교사 교육</li> </ul>                 |
| 이주아동청소년지원사업<br>(Förmig)                  | 이주민 가정<br>청소년 | 언어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li> <li>• 공동 협력사업</li> </ul>   |
| 함께 말하기<br>(MitSprache)                   | 초등학생          | 언어교육 및<br>숙제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능력 향상 및 숙제지도 프로그램</li> <li>• 이주민 가정 자녀의 사회성 신장</li> </ul>  |
| 제2언어 독일어(Module<br>Duetch als itsprache) | 교사            | 독일어<br>교수법 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어 교수법 자료개발</li> <li>• 교사를 위한 독일어교수법 연수</li> </ul>  |

자료: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일본, 프랑스, 독일의 자국어 교육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김은정, 2009)

## 다. 일본의 다문화정책

### (1) 다문화가족 현황

일본의 외국인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1992년을 기점으로 전체인구의 1%를 초과하였다. 2007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215만 명(법무성 출입국관리국통계자료, 2008.6)으로 일본 인구의 1.69%를 차지한다.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이 606,889명(28.2%)이고, 한국(조선)이 493,489명(27.6%), 브라질이 316,967명(14.7%), 필리핀이 202,592명(9.4%)의 순서이다.

[표 42] 일본 국적별 외국인 등록자 추이

(단위: 명)

| 국적/연도별 | 1997               | 1999               | 2001               | 2003               | 2005               | 2007               |
|--------|--------------------|--------------------|--------------------|--------------------|--------------------|--------------------|
| 총계     | 1,482,707          | 1,556,113          | 1,778,462          | 1,915,030          | 2,011,555          | 2,152,973          |
| 중국     | 252,164<br>(17%)   | 294,201<br>(18.9%) | 381,225<br>(21.4%) | 462,396<br>(24.1%) | 519,561<br>(25.8%) | 606,889<br>(28.2%) |
| 한국·조선  | 645,373<br>(43.5%) | 636,548<br>(40.9%) | 632,405<br>(35.6%) | 613,791<br>(32.1%) | 598,687<br>(29.8%) | 493,489<br>(27.6%) |
| 브라질    | 233,254<br>(15.7%) | 224,299<br>(14.4%) | 265,962<br>(15.0%) | 274,700<br>(14.3%) | 302,080<br>(15.0%) | 316,967<br>(14.7%) |
| 필리핀    | 93,265<br>(6.3%)   | 115,685<br>(7.4%)  | 156,667<br>(8.8%)  | 185,237<br>(9.7%)  | 187,261<br>(9.3%)  | 202,592<br>(9.4%)  |
| 페루     | 40,394<br>(2.7%)   | 42,773<br>(2.7%)   | 50,052<br>(2.8%)   | 53,649<br>(2.8%)   | 57,728<br>(2.9%)   | 59,696<br>(2.8%)   |
| 미국     | 43,690<br>(3.0%)   | 42,802<br>(2.8%)   | 46,244<br>(2.6%)   | 47,836<br>(2.5%)   | 49,390<br>(2.5%)   | 51,851<br>(2.4%)   |
| 기타     | 174,567<br>(11.8%) | 199,805<br>(12.9%) | 245,907<br>(13.8%) | 277,421<br>(14.5%) | 309,450<br>(14.8%) | 321,489<br>(14.9%) |

자료: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국 통계(2008. 6)

일본 정부는 1990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단순노동자의 유입을 금지하고, 일본계 이민 2,3세를 기술노동자로 수용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일본계 브라질인이나 일본계 페루인이 대거 유입되었고 2007년을 기준으로 약 38만 명에 이르고 있다.<sup>76)</sup> 미등록 외국인은 149,78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전체 외국인 숫자는 1년 전보다 68,054명(3.3%)이 증가하였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670,266명이 늘어나 45.2%가 증가하였다. 일본 내 외국인 비율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약간 낮고 증가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은 2008년을 기준으로 116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3%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등록 외국인이 6배 증가하였다.

76) 양기호, 「일본의 다문화거버넌스와 한국에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서울, 2009, 138쪽-140쪽

## (2) 정책방향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특징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틀을 제시한 점에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앙정부는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반면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문화공생정책을 수행한다. 일본 정부가 다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외국 인력의 수용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법령,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다문화정책 기본패러다임을 구축한다면 일본은 혁신적인 자치단체, 외국인 비율이 높은 대도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공생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다문화공생정책을 연계하여 기본패러다임을 형성한다.

일본 자치단체의 다문화 추진계획 정비과정을 살펴보면, 가나가와현 1991년 국제정책추진플랜, 오사카부 1992년 국제화추진지침과 1998년 외국적주민시책 기본지침, 하마마쓰시 2001년 세계도시비전, 가와사키시 2005년 다문화공생사회추진 기본지침, 히로시마시 2006년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 추진지침, 아이치현 다문화공생만들기사업 등이 있다.<sup>77)</sup>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다문화공생정책과 일본 재계의 다문화사회 수용에 관한 입장표명 등이 일본 중앙정부의 변화를 촉구하였고 2006년 3월 총무성이 전국적인 다문화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총무성은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도도부현<sup>78)</sup>과 시정촌<sup>79)</sup>이 마련하고, 다문화공생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문화공생을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4년 도요타 선언은 다문화공생사회가 "일본인

77) 양기호, 전제논문 147쪽

78)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해당함.

79) 도도부현보다 작은 자치단체로 일본에 총 3,204개가 있음.

과 외국인이 서로 문화나 가치관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이다. 또한, 건전한 도시생활에 불가결한 준법과 의무 이행을 토대로 한 "공생사회"라고 밝히고 있다.<sup>80)</sup>

[표 43] 다문화공생플랜의 주요 내용

|                       |   |
|-----------------------|---|
| <p>다문화<br/>공생의 의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이나 주민의 수용주체로서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서 수용하는 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주로 지방공공단체이며, 다문화공생 제도의 담당자로서 수행하는 역할이 크다.</li> </ul> </li> <li>• 외국인 주민의 인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공단체가 다문화공생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의 외국인 인권존중 취지에 합치하여야 한다.</li> </ul> </li> <li>• 지역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에 개방된 지역사회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어 지역 산업 경제진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문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공생의 도시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한 젊은 세대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li> <li>•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과 민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조성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각에서 추진하도록 한다.</li> </ul> </li> </ul>   |
| <p>기본 정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케이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정보제공의 다언어화:<br/>다양한 언어,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 정보 제공, 외국인 주민 상담창구 설치 및 전문가 양성, NPO와의 제휴, 지역 외국인 주민을 상담원으로 활용</li> <li>-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li> </ul> </li> <li>•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관련제도, 교육제도, 노동제도,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방재에 대한 정보 제공</li> <li>-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li> </ul> </li> <li>• 다문화공생 제도의 추진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설치</li> <li>- 지역 내 횡적 제휴</li> <li>- 시군구, 읍면동과 현의 역할분담 및 협력</li> </ul> </li> </ul> |

자료: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2006)

80) 양기호, 전계논문 148·149쪽

### (3) 다문화정책 내용

2006년 3월 총무성이 마련한 다문화사회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① 커뮤니케이션 지원 ② 거주·교육·노동환경·의료·보건·복지·방재 등의 생활지원 ③ 다문화 공생지역 만들기 ④ 다문화공생 추진체제 정비의 네 분야로 나누어 세부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지원"은 지역정보의 다언어화와 일본어와 일본사회 학습지원의 두 영역으로 나뉜다. 지역정보의 다언어화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보를 외국인의 자국어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외국인에게 행정서비스 및 각종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것이다. 외국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공민관과 국제교류센터는 일본어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외국인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생활정보, 교육, 거주 관련, 복지,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출판하고 통역서비스도 지원한다.<sup>81)</sup>

일본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쿄의 다문화공생센터는 성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자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외국인 아동에게 제공되는 일본어 수업이 있다. 오사카 국제교류센터는 "재일외국인 체험살롱사업"을 수행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회화를 일대일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다. 아이치현 국제교류센터는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10회 이상의 교육 수업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일본어 교육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sup>82)</sup>

둘째, "다문화가족의 생활지원"은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보건·복지, 방재 등의 생활지원이다. 거주지원으로 주

---

81) 김범수,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야마가타현의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3, 2007. 90쪽

82) 김은정, 전개논문 79쪽

택임대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 등 지역 규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교육지원은 외국인의 일본생활 적응을 위한 일본어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자녀들의 취학준비, 학교생활,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노동환경 지원은 외국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헬로우 워커’와 상공회의소 등과의 연대를 통하여 취업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의욕이 있는 외국인에게 취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의료·보건·복지지원은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병원,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다언어로 작성된 의료문진표를 개발하여 의료기관에 비치하며, 다언어로 작성된 모자수첩 등을 배부한다. 방재지원은 외국인 주민에게 방재교육, 훈련, 방재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sup>83)</sup>

셋째, "다문화 공생지역 만들기"는 외국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다문화 공생지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문화공생을 위한 거점으로서 학교·공민관·도서관 등이 지역과 연대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일본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의 모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교류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이 상호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up>84)</sup>

넷째, "다문화공생 추진체제 정비"는 다문화공생을 추진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신설 또는 정비, 다문화공생 담당기관 역할 분담 및 협력 등 다문화 공생정책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외국인 지원사업을 기획·담당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행정청에 설치하고, 자치단체 단위의 지원체제를 정비하며, 외국인주민정책 담당 부서가 중심이 되어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공생 관련 단체 역할 분담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83) 조현미,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15권4호, 2009. 454쪽

84) 조현미, 전개논문 455쪽

[표 44] 다문화공생 관련 단체 역할분담

| 구분    | 현  | 시·군·구   | 국제교류협회   |
|-------|--|---|--|
| 기본 역할 | 시·구/읍·면의 경계를 넘어 광역적인 과제로의 대응 실시  | 지역 실정 고려, 외국인 주민 지원   | 지방자치체·NPO 중개 실시  |
| 세부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계획 책정</li> <li>• 자원 조사(인재, NPO, 교재)</li> <li>• 광역 통역자 파견 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인재개발 장려</li> <li>• 시·구/읍·면 정보의 공유화 구조 수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계획 책정</li> <li>• 외국인 주민 상담</li> <li>• 지역 내 관계 기관 네트워크 형성 도모</li> <li>• 학교·NPO의 제휴 촉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체와 NPO의 제휴 유형 수립</li> <li>• 다언어 정보 수집 &amp; 유통의 구조 작성</li> <li>• 일본어 교실 &amp; 모국어 교실 개최</li> <li>• 외국인 주민 관련 정보 수집 및 발신</li> <li>• 통역자·번역자 인재 발굴</li> </ul> |

자료: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김범수, 2007)

### 3. 다문화주의 유형

#### 가. 미국의 다문화정책

##### (1) 다문화가족 현황

미국은 근대 국가 중 최초이자 최대의 이민 국가이다. 1860년대부터 이민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민으로 인한 인구학적·문화적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민은 미국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역동적 특성과 정체성의 상당 부분이 근거하고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sup>85)</sup> 공식 통계에 따르면, 최근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이민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불법 이주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민자는 연 180만 명 이상으로까지 추정되고 있다.<sup>86)</sup> 2006년 현재 37,547,789명의 외국 출생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12.5%에 해당된다. 2006년 1,266,264명이 미국 영주권(Legal Permanent Resident: LPR)을 받았고, 2004년에 비하면 30

<sup>85)</sup> Charles Hirschman, "Immigration and the American Century", Demography, Vol 42, No. 4,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2005), p. 596

<sup>86)</sup> Gelatt, Julia, Annual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Real numbers, 2007.

여만 명이 증가한 추세이다. 2006년 영주권 취득자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422,333명으로 33.4%를 차지하고, 북미 출신이 414,096명으로 32.7%를 차지한다. 지역별 구성비는 매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5] 미국 영주권 취득자의 출신지역 및 출신국가

| 출신 지역/국가   | 2006      |       | 2005      |       | 2004    |       |
|------------|-----------|-------|-----------|-------|---------|-------|
|            | 취득자 수     | 비율    | 취득자 수     | 비율    | 취득자 수   | 비율    |
| 총계         | 1,266,264 | 100.0 | 1,112,373 | 100.0 | 957,883 | 100.0 |
| 지역 : 아프리카  | 117,430   | 9.3   | 85,102    | 7.6   | 66,422  | 6.9   |
| 아시아        | 422,333   | 33.4  | 400,135   | 35.7  | 334,540 | 34.9  |
| 유럽         | 164,285   | 13.0  | 176,569   | 15.7  | 133,181 | 13.9  |
| 북아메리카      | 414,096   | 32.7  | 345,575   | 30.8  | 342,468 | 35.8  |
| : 캐리비안     | 146,771   | 11.6  | 108,598   | 9.7   | 89,144  | 9.3   |
| : 중앙아메리카   | 75,030    | 5.9   | 53,470    | 4.8   | 62,287  | 6.5   |
| : 기타 북아메리카 | 192,295   | 15.2  | 183,598   | 16.4  | 191,037 | 19.9  |
| 오세아니아      | 7,385     | 0.6   | 6,546     | 0.6   | 5,985   | 0.6   |
| 남아메리카      | 138,001   | 10.9  | 103,143   | 9.2   | 72,060  | 7.5   |
| 알 수 없음     | 2,734     | 0.2   | 5,303     | 0.5   | 3,227   | 0.3   |
| 국가 : 멕시코   | 173,753   | 13.7  | 161,445   | 14.4  | 175,411 | 18.3  |
| 중국         | 87,345    | 6.9   | 69,967    | 6.2   | 55,494  | 5.8   |
| 필리핀        | 74,607    | 5.9   | 60,748    | 5.4   | 57,846  | 6.0   |
| 인도         | 61,369    | 4.8   | 84,681    | 7.5   | 70,151  | 7.3   |
| 쿠바         | 45,614    | 3.6   | 36,261    | 3.2   | 20,488  | 2.1   |
| 콜롬비아       | 43,151    | 3.4   | 25,571    | 2.3   | 18,846  | 2.0   |
| 도미니카 공화국   | 38,069    | 3.0   | 27,054    | 2.5   | 30,506  | 3.2   |
| 엘살바도르      | 31,783    | 2.5   | 21,359    | 1.9   | 29,807  | 3.1   |
| 베트남        | 30,695    | 2.4   | 32,784    | 2.9   | 31,524  | 3.3   |
| 자메이카       | 24,976    | 2.0   | 18,346    | 1.6   | 14,430  | 1.5   |
| 한국         | 24,386    | 1.9   | 26,562    | 2.4   | 19,766  | 2.1   |
| 과테말라       | 24,146    | 1.9   | 16,825    | 1.5   | 18,920  | 2.0   |
| 아이티        | 22,228    | 1.8   | 14,529    | 1.3   | 14,191  | 1.5   |
| 페루         | 21,718    | 1.7   | 15,676    | 1.4   | 11,794  | 1.2   |
| 캐나다        | 18,207    | 1.4   | 21,878    | 2.0   | 15,569  | 1.6   |
| 브라질        | 17,910    | 1.4   | 16,664    | 1.5   | 10,556  | 1.1   |
| 에콰도르       | 17,490    | 1.4   | 11,608    | 1.0   | 8,626   | 0.9   |
| 파키스탄       | 17,418    | 1.4   | 14,926    | 1.3   | 12,086  | 1.3   |
| 영국         | 17,207    | 1.4   | 19,800    | 1.8   | 14,915  | 1.6   |
| 우크라이나      | 17,142    | 1.4   | 22,761    | 2.0   | 14,156  | 1.5   |
| 기타국가       | 457,050   | 36.1  | 402,478   | 35.9  | 312,801 | 32.7  |

자료: Simanski, 미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이기범, 2009)에서 인용

## (2) 정책방향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초기에는 미국의 정신을 주입하는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융광로정책<sup>87)</sup>을 펼쳤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민권운동을 시작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사회적 영역에서 주류사회의 문화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인 문화적 다원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다원주의는 공적 영역에서는 미국적 가치로의 통합을 강조하는 동화주의를 강조하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다양한 소수집단의 적응과 문화존중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 실시된 두 건의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양성보다는 통합과 공통의 가치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7년 10월에 실시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문화주의와 미국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후보와 통합(unity)을 지지하는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단지 18%만이 다양성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응답한 반면 55%의 응답자는 미국의 통합을 지지하였다.<sup>88)</sup> 2008년 2월 비슷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양성 지지 23%, 공유된 가치 지지 61%로 나타나 통합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sup>89)</sup>

---

87) 이 정책은 특정문화 속으로 이주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들을 녹여 섞이게 하는 것으로 문화적, 사회적 적응을 목표로 이주자들, 소수자들이 정체성을 잃고 사회의 주류에서 정의된 다수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융해되도록 하는 것이다.

88) Survey by Fox News and Opinion Dynamics, October 23-October24, 2007. Retrieved May 19, 2009 from the iPOLL Databank, The Roper Center for Public Opinion Research, University of Connecticut.(이용승, 「다문화주의 정책유형 결정유인 분석: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118쪽에서 인용)

89) Survey by Fox News and Opinion Dynamics, February 19-February 20, 2008. Retrieved May 19, 2009 from the iPOLL Databank, The Roper Center for Public Opinion Research, University of Connecticut.

### (3) 다문화정책 관련 제도

#### (가) 법령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이민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1952년에 제정된 「이민 및 국적 취득에 관한 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으로 이후 대부분의 이민 관련 법률은 이 법의 section을 개정한 것이다. IRCA(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1986), Immigration Act(1990), IIRIRA(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1996), USA-Patriot Act(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n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2001)가 주요한 법령이다.

#### (나) 기관

이민정책과 시행의 주체는 연방정부이고, 매년 연방의회가 이민정책을 심의하여 회기별로 다양한 정책을 산출하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1875년에 이민업무가 연방정부의 책임이라고 선언하고, 1891년에 이민국이 창설된다. 미 연방의회는 1921년 「National Origins Act」를 제정하여 인구 통계에 나타난 과거 이민실적을 토대로 출신 국가별 이민인원 할당제를 채택하였다. 1965년 이민법을 개정하여 국적 할당제를 폐지하고 선호체제(preference system)로서 이민자 가족들의 결합과 숙련 기술자들의 유입을 목적으로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이민정책으로 바뀌었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테러를 기점으로 다시 규제적이고 제한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3년 법무부에서 이민을 관장하던 INS(Immigration and Nationalization Service)를 해체하고 국토안보부로 이민 업무를 이관하였다. 현재 이민은 국토안보부가 주관하며 국무부, 노동부, 법무부, 보건부, 교육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90)</sup> 다문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민간단체인

---

90) 이기범, 「미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서울, 2009. 74쪽

NGO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A New American Initiative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통합에 대한 노력을 주도하지만 주 정부와 민간과 공조하여 지침과 예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4) 다문화정책 내용

미국은 통합가능성을 고려한 자격 요건에 따라 이민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선호체제(preference system)를 운영하여 이민 자체를 통합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민자를 사회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지원정책은 없다. 이민자는 정착을 준비하거나 정착한 후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영어를 학습하고 미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2007년 미국 정부는 시민권자의 미국 역사 지식과 시민적 소양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민소양시험을 시행하고 있다<sup>91)</sup>. 다만, 생활수준이 낮고 교육성취도가 낮은 소외계층 및 소수민족의 학생,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들을 위하여 NCLB(No Child Left Behind)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민자녀의 교육 프로그램(Even Starts<sup>92)</sup>)은 부모와 자녀의 긴밀한 교육적 연계 속에서 읽기, 쓰기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교육부의 초중등 교육국이 주관하고,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ESEA) 수정 1조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목적은 이민자 가정의 부모와 아동대상 독해력과 기초교육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의 빈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91) 이기범, 전개논문 84쪽

92) <http://www.eventstart.org>

## 나.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 (1) 다문화가족 현황

캐나다는 5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거주하는 이민 국가이고, 20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사회이다. 캐나다는 이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평등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07년 236,758명, 2006년 251,643명 등 매년 약 25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로 유입되고 있으나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심각한 민족갈등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정책의 핵심은 민족·인종이나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이민이 가능한 점수제(point system)이다. 1967년 도입된 이 제도를 계기로 1970년대 이후 대부분 비유럽인 특히 아시아와 카리브 지역 유색인종이 이민자로 유입되었다.<sup>93)</sup>

[표 46] 캐나다 이민자 추이

|      |          |      |          |
|------|----------|------|----------|
| 1983 | 89,192명  | 1996 | 226,073명 |
| 1984 | 88,276명  | 1997 | 216,038명 |
| 1985 | 84,345명  | 1998 | 174,197명 |
| 1986 | 99,353명  | 1999 | 189,955명 |
| 1987 | 152,069명 | 2000 | 227,458명 |
| 1988 | 161,574명 | 2001 | 250,638명 |
| 1989 | 191,550명 | 2002 | 229,049명 |
| 1990 | 216,445명 | 2003 | 221,349명 |
| 1991 | 232,803명 | 2004 | 235,823명 |
| 1992 | 254,818명 | 2005 | 262,240명 |
| 1993 | 256,703명 | 2006 | 251,643명 |
| 1994 | 224,397명 | 2007 | 236,758명 |
| 1995 | 212,872명 |      |          |

자료: CIC. "facts and figures 2007 - Immigration overview: permanent residents by category"

93) 이유진,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정책 레짐에 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권, 서울, 2009년, 6쪽

## (2) 정책방향

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기본 이념은 다문화주의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영국계·프랑스계 주민의 전통적인 갈등해소와 다문화 현실을 반영하는 정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971년 다문화주의를 세계 최초로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모든 캐나다인이 인종, 민족, 종교, 언어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고 가치관과 존엄성이 보장된다고 선언한 것이다.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을 토대로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합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주의는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기초 정책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다문화정책 기본목표는 ① 캐나다와 세계 속의 다양한 문화경험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캐나다인 육성 ② 문화 간 이해와 시민참여를 통한 통합적 캐나다 사회건설이다. 기본목표가 지향하는 "창조적이고 응집력 있는 캐나다" 구현을 위하여 4가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캐나다만의 문화형성(Canadian Content) 항목은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문화를 보존·전파하며 문화 창조를 돕는다. 둘째, 문화참여(Cultural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항목은 캐나다의 문화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문화적 유대 확산(Connections) 항목은 캐나다 국민간의 유대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동체간 이해를 심화시킨다. 넷째, 적극적 시민양성 및 시민의 참여확대(Active Citizenship and Civic Participation) 항목은 캐나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캐나다 국민답게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데 있다.<sup>94)</sup>

---

94) 유정석,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현실과 쟁점」, 민족연구, 2008 18쪽

### (3) 다문화정책 관련 제도

#### (가) 법령

캐나다 의회는 1977년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을 제정하여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1982년 헌법의 일부로서 「인권과 자유 헌장」을 제정하여 제27장에 다문화주의를 캐나다가 국가로서 지향하는 가치로 선언하였다. 1988년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고 공식화하는 「다문화주의법(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하여 영어와 불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고양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됨을 법제화하였다.<sup>95)</sup>

#### (나) 기관

연방정부의 이민부(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가 캐나다의 이민, 이민자 사회통합, 시민권 관련 제반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민부(CIC)는 이민정책 수립 및 집행, 외국인 출입국 관리정책 수립 및 관리, 연간 이민자 수의 설정, 이민 자격요건 설정 및 이민허가, 신규 이민자 통합, 시민권 부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민부는 연방정부 각 부처, 주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자원봉사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연방정부 내에서도 이민부는 외교통상부, 보건부, 관세·국세청, 법무부, 연방법원, 검찰, 안보정보국, 연방경찰, 문화유산부, 인적자원부, 산업부, 통계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민정책 및 이민자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문화유산부는 20여개의 산하단체와 25개의 지역본부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2004년 3월 다문화주의 정책의 초점을 시민참여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sup>96)</sup>

95) 이유진, 전계논문 6쪽

96) 유정석, 전계논문 17쪽

#### (4) 다문화정책 내용

캐나다 이민자 통합정책의 목표는 이민자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여 단시일 내에 정착 및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시민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에 있다. 연방정부는 이민자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공동체 사회자본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통합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ISAP),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LINC),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SAP)은 신규 이민자에게 초기 정착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캐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입국 전·후 오리엔테이션, 통·번역 서비스, 지역공동체 자원 이용에 대한 안내, 상담, 생활정보 및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이다.

ISAP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착지원 담당자 학교배치 프로그램(Settlement Worker in Schools:SWIS)을 들 수 있다. 학교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신규 이민자가 지역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장소임에 착안하여 SWIS는 모든 신규 이민자 학생의 가족을 체계적으로 접촉하여 교육제도와 지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여 주는 정착지원 서비스이다.

ISAP을 통하여 신규 이민자 정보센터(Newcomer Information Centre : NIC)에 재정을 지원한다. NIC는 신규 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정착 및 정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윈스톱 해결책을 제공하는 창구로서 상담, 서비스 의뢰, 정보제공강좌 개설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이민자가 전

화, 팩스, 컴퓨터, 복사기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민자의 정착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출판물의 발간도 ISAP의 주요 역할의 하나이다.

둘째,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LINC)은 1992년부터 신규 이민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언어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이민자 정착 및 통합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시 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조속히 캐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나 불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LINC 수강신청 자격은 17세 이상의 이민자와 난민으로 한정되고, 수강자에게는 대중교통 비용과 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 1단계는 이민자의 영어능력을 평가한 후 영어 수준에 따라 영어강습 운영기관을 결정하고, 2단계로 수강자 언어교육을 위하여 각 지역에 연결된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실질적 교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호스트(HOST)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호스트로서 신규 이민자의 친구 또는 도우미 역할을 하여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호스트의 역할은 지역사회나 풍습을 소개하고, 언어연습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며,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인맥형성이나 커뮤니티 참여 등을 지원한다. 호스트도 새로운 문화에 접하고 교류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여 지역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이민자와 호스트 커뮤니티 구성원이 다양한 사회네트워크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토론토 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COSTI(Centro Organizzativo Scuole Tecniche Italiane)는 1952년부터 설립된 이민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 최대의 이민자서비스 단체로서 연간 25,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립 초기에는 이탈리아 이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토론토 내의 다문화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COSTI는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민자 지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정착, 보건,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각종 교육 및 훈련, 취업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 COSTI는 토론토와 인근 지역 14개소에서 60여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42,000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받았다.

다섯째, SISO(Settlement and Integration Service Organization)는 온타리오 주 해밀턴 시에서 이민자 정착과 통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로서 1993년에 설립되었다. SISO는 이민자의 사회, 경제, 문화적 참여 권리를 신장하고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밀턴 시내에 3개 사무소에서 80여명의 직원이 7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75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SISO는 LINC, ISAP, HOST에 해당하는 이민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민자의 정착, 적응, 통합을 지원한다. SISO는 ISAP서비스로서 신규이민자 상담 및 정보제공, 언어평가, 건강검진 기관 의뢰, 주거와 취업지원, 멘토링, 정착서비스 취업지원, 학교 및 도서관 이용 관련서비스, 통번역, 사회적 교류, 보건,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록지원 등을 약 30개의 언어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섯째, YWCA는 이민자 서비스 전문단체는 아니지만 이민자를 대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WCA 신규이민자센터(Newcomer Information Centre)는 연방 이민부가 제공하는 LINC, ISAP 등을 비롯하여 신규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와 이를 필요로 하는 이민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가 실시하는 ISAP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는 신규 이민자 정착지원 안내 서비스와 상담, 오리엔테이션, 취업 상담 및 워크숍, 사회보장 프로그램 신청 상담, 통번역 서비스, 가족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의뢰, 자원봉사 지원, 자영업·자유업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 밖에 학교교육이나 운영에 있어서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다문화정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7]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세부내용

| 목 적                      | 내 용  |
|--------------------------|--|
| Canadian content 형성 및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음악, 영화, 스포츠 분야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접근의 수월성 증진 프로그램</li> <li>- 스포츠 산업 지원 강화 프로그램</li> </ul>   |
| 문화적 표현과 참여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디지털경제와 문화콘텐츠 지원</li> <li>- Creating canada together</li> <li>- 전통 문화유산 유지·보존 프로그램, 문화기구 후원 및 투자, 문화산업 지원</li> <li>-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li> </ul>  |
| 캐나다 문화유산 보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문화유산보존협회(CCI) 지원</li> <li>- 원주민 언어 및 문화의 보존 및 유지(원주민 방송)</li> </ul>   |
| 캐나다 문화접근성 증대 및 참여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의 예술지원 프로그램</li> <li>-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캐나다 문화의 유지 전승과 접근성 향상</li> <li>- Canada virtual museum 홈페이지 구축</li> <li>- 박물관 지원 프로그램</li> <li>- 순환 전시회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li> <li>- 캐나다 문화유산보존협회 주관 다양한 민족의 교통수단 전시회</li> </ul> |
| 문화간 이해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li> <li>- 교육부 주정부 및 각 지역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용어 교육 강화</li> </ul>  |
| 지역발전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민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li> <li>- 원주민사회와 정부 간의 유기적 상호소통</li> <li>-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단체 및 소수민족커뮤니티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강화</li> <li>- 캐나다의 다양성과 문화, 역사와 성취, 캐나다 가치를 함양하고 축하하는 프로그램 지원</li> </ul>                             |
| 지역 및 공동체 참여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소수집단의 적극적 사회참여 지원</li> <li>- 모두를 위한 캐나다: 반차별 Action plan</li> <li>- 원주민 여성, 청소년을 위한 문화정체성 프로그램</li> <li>- 캐나다의 역사적·문화적 다양성과 캐나다 가치를 환영하는 축하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li> <li>- 외국 주최 세계 프로그램 참여</li> </ul>                  |

## 다. 호주의 다문화정책

### (1) 다문화가족 현황

호주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동질적인 인구구성을 보였으나 1960년대를 경과하면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여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가로 독특한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2009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호주 인구는 2,246,826명이고, 전년도보다 451,900명이 증가하였다. 증가된 인원 중 66%는 해외 이주민 증가에 따른 것이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호주인구의 해외출생자 비율은 약 23%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인구의 약 43%가 외국태생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의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여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이다.<sup>97)</sup>

[표 48] 호주 해외출생자 규모

(단위: 천명)

| 연도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전체 인구 | 17,284 | 17,495 | 17,667 | 17,885 | 18,072 | 18,311 | 18,538 | 18,760 | 18,984 | 19,225 |
| 해외 출생 | 3,965  | 4,028  | 4,053  | 4,094  | 4,164  | 4,259  | 4,312  | 4,366  | 4,419  | 4,517  |
| 비율    | 22.9   | 23.0   | 22.9   | 22.9   | 23.0   | 23.3   | 23.3   | 23.3   | 23.3   | 23.6   |

자료: 호주의 다문화주의(이용승, 2004)

### (2) 정책방향

호주의 사회통합 정책은 "백호주의" 정책과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백호주의 정책은 호주의 독특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동화주의 정책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 유색인종에 대한 차

97)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제8호, 2004. 202쪽

별과 배제를 통하여 백인 중심적 지배체제와 인종적 동질성을 형성하고 국가적 통합을 추구하여 백호주의 정책을 지향하였다면 197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한 것은 영국과의 관계 변화, 아시아권과의 경제적 교류 증대 등으로 이주민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1973년 당시의 이민장관인 그래스비(Grassby)가 미래를 위한 다문화사회 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백호주의가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다문화주의가 정책 순위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주의가 호주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은 1978년 갈벌리보고서(The Galbally Report)가 발간되면서부터이다. 이 보고서가 공식화한 다문화주의의 4가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① 동등한 기회보장과 공적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② 모든 사람은 편견 없이 자신의 문화를 보유 ③ 이민자에게는 특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마련 ④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입안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갈벌리보고서에서 제시된 다문화주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정책권고는 정부정책에 거의 모두 수용되었으나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랭귀지 코스와 생활임금 지급 등의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한 핵심적인 권고는 프레이저 자유당 정부에 의하여 거부되었다.<sup>98)</sup>

1986년 Committee of Review에 제출된 접보고서(The Jupp Report)는 다문화주의를 동등한 참여로 정의하고, 많은 이민자들이 10여 년 동안의 다문화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겪고 있는 사회적 불이익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불평등 제거를 주장하였다. 1988년 Committee to Advice on Australia's Immigration Policies의 보고서(Immigration: Commitment to Australia)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개념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989년 호주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주의

---

98) 이용승,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진」, 민족연구, 2007. 35쪽

와 거의 유사한 정책기조인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아젠다(National Agenda for a multicultural Australia)"를 발표하였고, 2003년 "다문화 호주 : 다양성을 통한 통합"을 발표하였으며 다문화정책의 전략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적 의무(civic duty)" 전략으로 모든 호주인은 호주 사회의 자유와 평등, 다양성을 보장받고 호주 사회의 기본원칙과 사회구조를 유지하여야 할 시민적 의무를 지닌다. 둘째, "문화적 존중(cultural respect)" 전략으로 모든 호주인은 법에 따라 자신의 문화와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타인의 동일한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여야 할 상호존중의무를 지닌다. 셋째, "사회적 평등(social equity)" 전략으로 모든 호주인은 대우와 기회에 있어서 평등하고, 사회적 평등은 모든 호주인에게 호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삶에 공헌하도록 허용하며,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지역, 성별 등에 기반을 둔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한다. 넷째, "생산적 다양성(productive diversity)" 전략은 모든 호주인은 생산적 다양성으로부터 이익-인구집단의 다양성에 기인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99)

### (3) 다문화정책 관련 기관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은 호주 연방 정부의 이민·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에게 있고,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이민-다문화에 관한 장관급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호주 민족문제위원회(Australian Ethnic Affairs Council, AEAC)와 호주 인구이민위원회(Australian Population and Immigration Council, APIC), 국가인구위원회(National Population Council, NPC), 정착자문위원회(Settlement Advisory Council, SAC)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조사연구 및 자문활동을 통하여 국가의제로서 다문화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며 정책제안 기능을 수행한다.

99)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제8호, 2004. 192쪽

주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체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를 설치하고, 다문화주의 원칙에 관한 법률과 민족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는 등 정책추진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일례로 뉴 사우스 웨일즈주(NSW)는 공동체관계위원회 및 다문화주의 원칙 법률 2000(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and Principles of Multiculturalism Act 2000)을 제정하여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른 언어, 종교, 인종, 민족적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하여 NSW 주정부는 주민의 평등한 권한과 책임을 도모할 것을 천명했다. 법률에 따라 다문화적 NSW를 위한 공동체관계위원회(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for a Multicultural NSW: CRC)를 설치하여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고 강화하며, 문화적 다양성으로부터 시민 모두가 최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역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4) 다문화정책 내용

호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 파트너쉽 프로그램, 언어교육 프로그램,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첫째, "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은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의 이슈를 제기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1999년 이후 현재 388개의 지역사회 프로젝트, 49개 협력사업, 9개 주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3월 21일을 Harmony Day로 정하고 지역사회 다문화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하여 다문화행사를 주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둘째,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Living in Harmony의 일부로 정부 이민 및 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와 지역단체들이 연계하여 호주적 가치함양, 상호존중과 사회참여를 지역적, 국가적으로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언어교육 프로그램"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다문화가족에게 AMEP(성인 다문화가족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AMEP는 전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최대 510시간(난민에게는 100시간

추가)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일과정과 반일과정이 있고, 시간대도 주간, 야간, 주말반이 있으며, 통신교육이나 가정방문교육도 제공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영어뿐만 아니라 호주의 문화적 배경이나 관습을 비롯한 호주 사회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보육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넷째,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은 호주의 다양한 문화 자체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개발하고 그 생산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에서 다양한 국적의 출신자를 고용하여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외국어 실력과 문화적 지식, 해외 소비자의 기호에 대한 인식, 해외시장에서 기업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 밖에 호주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61 450)로 연결이 가능한 통·번역라인인 TSI National(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National)을 설치하고, 1,800여명의 통·번역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100여개국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통역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의료기관, 시민단체, 복지기관, 지방행정기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4. 실용주의 유형

### 가. 덴마크의 다문화정책<sup>100)</sup>

#### (1) 다문화가족 현황

덴마크는 1960년대 후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덴마크 내 회사들이 해외에서 대규모 근로자(터키, 유고슬라비아, 파키스탄 출신)를 고용하면서

---

100) 본 장은 강주현, 「해외 다문화 사회 통합 사례연구: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다문화 사회연구 제1권, 2008년)에서 요약 발췌함.

대폭적인 이주가 시작되었다. 1983년 이후 덴마크 정부의 이민자율화정책에 따라 외국인의 이민이 급증했는데 특히 난민에 대한 정책이 관용적이어서 난민과 망명자 수가 급증하게 된다. 1983년 이후 이민자는 주로 터키, 스리랑카, 이라크,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이 많았다. 최근 덴마크 이민 경향은 이민 유입을 기준으로 볼 때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볼 때 2001년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하여 2004년은 2001년에 비하면 50% 이상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덴마크 이민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최근 덴마크 우파 연합정부가 추진하는 이민 제한정책의 여파로 풀이될 수 있다.

[표 49] 덴마크 내 이민자 및 이민후손의 출신국가별 분류

|             | 1980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이민자와 이민자 후손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서구 국가       | 59.1 | 29.7 | 28.9 | 25.1 | 27.1 | 26.1 | 25   | 24.4 | 29.2 | 29.1 | 29.3 |
| 비서구 국가      | 40.9 | 70.3 | 71.1 | 71.9 | 72.9 | 73.9 | 75   | 75.6 | 70.8 | 70.9 | 70.7 |
| 선별된 국가들     |      |      |      |      |      |      |      |      |      |      |      |
| 터키          | 9.2  | 13   | 13   | 12.9 | 12.9 | 12.7 | 12.6 | 12.4 | 12.3 | 12.1 | 12   |
| 이라크         | 0.1  | 2.7  | 3.0  | 3.5  | 3.9  | 4.6  | 5.2  | 5.6  | 5.8  | 5.8  | 5.8  |
| 레바논         | 0.1  | 5.1  | 5.1  | 5.1  | 5.0  | 5.0  | 5.0  | 4.9  | 4.9  | 4.9  | 4.9  |
| 이란          | 0.2  | 3.6  | 3.5  | 3.5  | 3.4  | 3.3  | 3.2  | 3.2  | 3.2  | 3.2  | 3.1  |
| 파키스탄        | 5.1  | 4.8  | 4.7  | 4.7  | 4.6  | 4.6  | 4.5  | 4.4  | 4.4  | 4.3  | 4.2  |
| 아프가니스탄      | 0.0  | 0.6  | 0.6  | 0.7  | 0.9  | 1.2  | 1.9  | 2.2  | 2.3  | 2.4  | 2.4  |
| 아시아 국가      | 6.4  | 12.0 | 12.1 | 12.2 | 12.4 | 12.5 | 12.6 | 12.8 | 13.1 | 13.4 | 13.6 |
| 유고슬라비아      | 4.9  | 5.0  | 4.8  | 4.7  | 4.5  | 4.4  | 4.2  | 4.1  | 4.0  | 3.9  | 3.8  |
| 보스니아        | 0.0  | 5.4  | 5.5  | 5.4  | 5.2  | 5.0  | 4.9  | 4.8  | 4.7  | 4.6  | 4.5  |
| 폴란드         | 4.2  | 3.5  | 3.4  | 3.3  | 3.2  | 3.1  | 3.0  | 3.0  | 2.9  | 3.0  | 3.2  |
| 북 아프리카      | 4.9  | 2.3  | 2.3  | 2.2  | 2.1  | 2.0  | 1.9  | 1.9  | 1.9  | 1.9  | 1.9  |
| 중남 아프리카     | 2.0  | 1.7  | 1.7  | 1.7  | 1.7  | 1.7  | 1.7  | 1.8  | 1.7  | 1.5  | 1.8  |
| 소말리아        | 0.1  | 3.0  | 3.5  | 3.7  | 3.9  | 4.1  | 4.2  | 4.1  | 3.9  | 3.7  | 3.6  |
| 모로코         | 1.4  | 2.0  | 2.0  | 2.0  | 2.1  | 2.0  | 2.0  | 2.0  | 2.0  | 2.0  | 2.0  |
| 그 외 아프리카 지역 | 2.1  | 3.0  | 3.0  | 3.1  | 3.2  | 3.3  | 3.3  | 3.4  | 3.8  | 3.5  | 3.5  |

자료: 덴마크 통계청, 2006

덴마크 이민자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민자를 출신 국가별로 분석하여 보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비서구 출신이 서구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1980년대 서구 출신 이민자와 이민 후손 비율이 59.1%로 비서구 출신 이민자와 이민 후손 비율이 40.9%인 것을 고려하면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1997년 이후 비서구 출신 이민자와 이민 후손 비율은 전체 이민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서구 출신의 이민자와 이민 후손 비율은 30%가 되지 아니하는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Statistics Denmark 2006).

## (2) 정책방향

덴마크 다문화가족(이민)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주의 노선이다. 덴마크는 자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난민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관대한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최근 이민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복지혜택의 수혜자 그룹으로 부각되면서 덴마크 사회에 동화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해져서 2001년부터 덴마크의 이민정책은 급격하게 이민억제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현재 덴마크의 이민정책은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조항이 늘어가고 난민에 대한정책 역시 엄격해져서 매년 그 강도와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덴마크 이민정책의 방향은 덴마크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이민 우호에서 이민 억제로 바뀌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민정책에 있어 필요에 따라 정책의 기초를 과감하게 변경하는 철저한 실용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3) 다문화정책 관련 제도

### (가) 법령

덴마크는 1999년 1월 세계 최초로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통합법(Integration Act)을 제정한 국가이다. 덴마크 사회통합법에 따라 18세 이상 덴마크에 이주해 온 사람은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사회입문 프로그램

램(introduction programme)을 계획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회입문 프로그램은 이민자에게 개인이 정부와의 계약을 통하여 동의한 덴마크 사회의 기본적 코스와 덴마크어 공부, 구직에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입문프로그램은 어학교육과 직업훈련과 이와 관련된 3가지 프로그램-상담과 향상, 직업훈련, 임금보조를 위한 취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과 향상은 노동시장에 유입되기 위하여 짧은 상담과 교육적 활동 특히 일반적인 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훈련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역시 참여하게 되는데 훈련기간 동안 외국인은 4주 동안의 직업훈련을 받게 되며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13주까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을 받은 외국인은 정착수당과 취업보조금으로 시간당 1.7 EURO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은 취업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은 최대 1년까지이다. 사회통합법과 더불어 덴마크 정부는 노동시장의 안팎으로 외국인의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했다. 2003년 인종평등조치법이 도입되었고 2004년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2007년 덴마크 정부는 외국인 차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충처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나) 기관

덴마크에서 이민,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 덴마크 난민이민사회통합부(The Ministry of refuge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Affairs)이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점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생활능력이나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덴마크 유입을 정책적으로 줄이겠다는 덴마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사회통합법(Integration Act)을 통하여 사회통합의 책임이 덴마크 난민위원회에서 사회통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담당할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언어교육은 지방정부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획일적이 아닌 개인별 맞춤 교육 형태를 지향한다. 언어교육은 직업

훈련과 함께 3년 후 노동시장에 입문할 이주자들의 교육에 통합하여 실시한다. 2005년 난민이민사회통합부에 사회통합팀이 신설되었다. 사회통합팀은 사회통합 특히 교육과 고용에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사회통합팀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2세, 3세 의 교육과 고용 창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60개 시 단위와 연계하여 학교, 기업, 정부의 실질적인 경험과 재화를 보급하고 있다.

#### (4) 다문화정책 내용

덴마크에 이주한 외국인이 덴마크 사회에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하여 덴마크어의 습득과 노동시장에서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다. 외국인이 덴마크어 수업을 듣는데 정부는 3년 동안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며 교육 내용 역시 개인의 수준에 맞는 3단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18세 이상의 성인 이주자는 덴마크코스과 더불어 사회입문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업 훈련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투입될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는다. 직업훈련을 하는 동안 정착수당과 취업보조금으로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데 있어 덴마크 내 행정개혁을 통하여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던 외국인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방정부에 일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취도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체제개혁을 이루었다. 덴마크 정부 통합정책의 핵심은 이민자가 교육을 통하여 덴마크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확대 실시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을 통하여 덴마크 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2004년 8월부터 지방정부는 두 개 국어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축매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언어축매교육은 두 개의 표적그룹을 구분하여 실시되는데 먼저 첫 번째 표적그룹은 보육원을 다니지 아니하는 두 개 국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에 15시

간의 언어축매교육을 실시한다. 두 번째 표적그룹은 보육원에 다니지만 언어교육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 아이들의 언어축매교육의 내용과 시간은 아이를 평가한 뒤 평가에 맞추어 실시한다. 두 개 국어를 구사하는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할 때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자의 허가에 의하여 덴마크어를 제2공용어로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시간은 각 개인학생의 언어수준과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 5. 정책적 시사점

### 가.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정책 필요

다문화가족의 유형과 성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다문화가족의 생활에 밀착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및 재정확대가 중요하다.<sup>101)</sup>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다문화정책의 공통점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로 내려 보내주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이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전반적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들이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문화공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

---

101)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제26집제1호, 2009. 502쪽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보여 지역 사회에 독자성을 반영한 정책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현장을 반영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나. 정책총괄부처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one-stop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기관별로 문의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전달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2007년 이전까지 4개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를 신설하였고, 독일은 2005년 관련 부처를 통합하여 “이민과 난민을 위한 연방청”을 연방 내무부에 신설하여 연방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각부가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한 소관 업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업무를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처럼 하나의 기관에서 다문화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면 유사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우리나라가 결혼이민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는데 반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민을 통한 다문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국가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 또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프로그램 중 우리나라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이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실시하는 Even Starts 프로그램을 현재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에 부분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결혼이민자 자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설정하여 사업대상을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87.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본인과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Event Starts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결혼이민자 부모와 자녀관계 향상 및 언어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캐나다의 경우 소수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결혼이민자 국가의 음식이나 의상 소개 등의 단편적이고 일회성의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 국가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결혼이민자 여성이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호주의 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이다. 호주는 매년 3월 21일을 Harmony Day로 정하고 지역사회 다문화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하여 다문화행사를 주관하도록 장려

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세계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나 행사 규모가 미미한 수준(2011년 예산안 3억 2,000만원에 불과)이므로 동 행사를 확대하여 다문화를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독일의 RAA 프로그램은 사업추진 대상을 연령대별, 역할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다양한 대상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독일어 교육뿐만 아니라 모국어 교육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모국어에 능통하면 제2언어인 독일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다문화 언어교육에서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배우자 여성과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거류증이 없는 결혼이민자에게도 일정 기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서비스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체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불법체류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sup>102)</sup>

---

102) 김유경 외 3인, 전계서 129쪽

## V.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예산 운용 및 제도개선 과제

### 1. 예산 운용

#### 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이관

#####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연도별 예산재원 추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규모는 2008년 232억원, 2009년 258억원, 2010년 419억원이고, 2011년 예산안은 555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2005년 여성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2억원)을 실시한 이후 2006년은 일반회계(89%), 2007년은 여성발전기금(58%)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2008년 다문화가족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다. 2009년 사업재원을 복권기금으로 이관(94%)하고, 2010년은 사업전액을 복권기금으로 편성하였다.

2010년 3월 다문화가족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2011년 예산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 사업재원이 여성발전기금('05, '07)→일반회계('06, '08)→복권기금('09, '10)→여성발전기금('11)으로 바뀌어 재원변동이 잦은 것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연도별 예산재원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     | 예산재원 구성내역                                      |
|------|--------|--|
| 2005 | 200    | 여성발전기금 전액편성                                    |
| 2006 | 1,207  | 일반회계 10억 7,000만원(89%), 여성발전기금 2억원(11%)         |
| 2007 | 3,875  | 일반회계 16억 2,700만원(42%), 여성발전기금 22억 4,800만원(58%) |
| 2008 | 23,167 | 일반회계 전액편성                                      |
| 2009 | 25,851 | 복권기금 241억 1,700만원(93%), 일반회계 17억 3,400만원(7%)   |
| 2010 | 41,937 | 복권기금 전액편성                                      |
| 2011 | 55,524 | 여성발전기금 전액편성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여성발전기금 편성의 문제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sup>103)</sup>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재원은 정부출연금, 복권기금, 민간출연금, 이자 등으로 조성된다. 동법 제30조는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를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지원사업,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의 국제협력 지원 등에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출연금이 총 590억원, 복권기금 전입금이 총 592억원, 민간 출연금은 총 21억원, 이자 등이 총 349억원이다.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조성액은 68억이고, 2011년에는 31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103)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51]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수입(A)     |             |           |         |         | 지출(B)   |           |         | 순조성액<br>(A-B) | 조성액<br>누계 |
|----------------|-----------|-------------|-----------|---------|---------|---------|-----------|---------|---------------|-----------|
|                | 정부<br>출연금 | 복권기금<br>전입금 | 민간<br>출연금 | 이자<br>등 | 소계      | 사업비     | 관리<br>비 등 | 소계      |               |           |
| 1997년          | 5,000     |             |           | 424     | 5,424   |         |           | 0       | 5,424         | 5,424     |
| 1998년          | 5,000     |             | 25        | 816     | 5,841   | 80      |           | 80      | 5,761         | 11,185    |
| 1999년          | 5,000     |             | 12        | 1,418   | 6,430   | 300     | 2         | 302     | 6,128         | 17,313    |
| 2000년          | 5,000     |             | 12        | 1,719   | 6,731   | 589     | 2         | 591     | 6,140         | 23,453    |
| 2001년          | 5,000     |             | 11        | 1,927   | 6,938   | 1,320   | 3         | 1,323   | 5,615         | 29,068    |
| 2002년          | 10,000    |             | 509       | 2,210   | 12,719  | 2705    | 9         | 2,714   | 10,005        | 39,073    |
| 2003년          | 10,000    |             |           | 2,140   | 12,140  | 4,444   | 77        | 4,521   | 7,619         | 46,692    |
| 2004년          | 8,000     | 7,618       | 200       | 2,798   | 18,616  | 10,744  | 83        | 10,827  | 7,789         | 54,481    |
| 2005년          | 6,000     | 11,125      | 200       | 3,446   | 20,771  | 20,140  | 244       | 20,384  | 387           | 54,868    |
| 2006년          |           | 12,511      | 700       | 4,687   | 17,898  | 26,340  | 104       | 26,444  | -8,546        | 46,322    |
| 2007년          |           | 12,051      |           | 5,838   | 17,889  | 34,138  | 114       | 34,252  | -16,363       | 29,959    |
| 2008년          |           | 4,140       | 200       | 4,505   | 8,845   | 18,142  | 1,980     | 20,122  | -11,277       | 18,682    |
| 2009년          |           | 5,427       | 200       | 2,143   | 7,770   | 12,984  | 65        | 13,049  | -5,279        | 13,403    |
| 2010년<br>(확정)  |           | 6,289       |           | 159     | 6,448   | 12,944  | 64        | 13,008  | -6,560        | 6,843     |
| 2011년<br>(정부안) |           | 125,244     |           | 644     | 125,888 | 129,570 | 53        | 129,623 | -3,735        | 3,108     |
| 계              | 59,000    | 184,405     | 2,069     | 34,874  | 280,348 | 274,440 | 2,800     | 277,240 | 3,108         |           |

자료: 여성가족부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안 재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기금재원의 안정성 문제로서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는 여성발전기금이 2011년부터 고갈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기금 사업내용이 예산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기금으로 존치될 필요성이 있는지 논란이 되며,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기금 스스로 존치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04)</sup> 아울러 이 보고서는 여성발전기금에 정부출연금이 전입되지 아니한 것은 여성발전기금 조

성에 대한 국가적 합의 정도가 예산계획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되지 못하고 있다는 예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당면한 현안과제로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2011년에도 고갈될 정도로 재원의 안정성이 취약한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금용도의 적합성 문제로서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는 기금용도를 규정<sup>105)</sup>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한 것이 기금용도에 적합한 예산편성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동법 제30조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시행령 제32조<sup>106)</sup>도 여성인력 양성, 남녀고용평등 교육 실시, 여성 자원봉사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가 규정한 기금용도에 합치하는 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4) 『기금준치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2010.5, 481쪽

105)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106)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기금의 용도)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성인력의 양성
2.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
5. 삭제 <2003.3.12>
6. 삭제 <2006.3.10>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셋째, 기금목적의 합치성 문제로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가 규정한 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가 대부분(2010년 기준 89.7%)이므로 여성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업목적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남성 결혼이민자도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고 남녀평등 과제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위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재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기금존치 논란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항목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일반회계로 이관 필요

「국가재정법」 제5조<sup>107)</sup>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출연금이나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일반회계와 비교할 때 사업 확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기금재원이 되는 부담금의 축소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경정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는 등 사업재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달의 측면에서 일반회계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금존치평가보고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기금사업이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sup>108)</sup>

107)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108)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2010.5, 486쪽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경우 복권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결혼이민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지원을 확대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사업을 신설 또는 확대할 필요성이 크므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여성발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 나.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 (1)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현황

2010년 현재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은 2개 부처(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있고, 관련 예산은 13억 1,700만원이다. 2011년 예산안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여성가족부가 14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현황(2010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여성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50명의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지원(1인당 월 50만원씩, 8개월)하고 있다. 이 사업의 2010년 예산은 8억 5,000만원이고, 2011년 예산안은 14억원으로 366명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1인당 50만원, 6개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 집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원기관 6개소(서울청 2개소, 중부청 3개소, 부산청 1개소)를 선정하여 인건비(2인-월 165만원), 운영비(월 120만원), 시설설치비(연 2,0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센터는 운영지침에서 기본사업으로 "취·창업지원"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전국 15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9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센터(2009년 기준 100개소)는 이용자 5,884명에 대하여 취·창업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sup>109)</sup>

## (2)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중복수행의 문제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유사한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효율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는 취·창업지원은 연계실적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센터가 취·창업교육이라기 보다는 문화강좌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효율성을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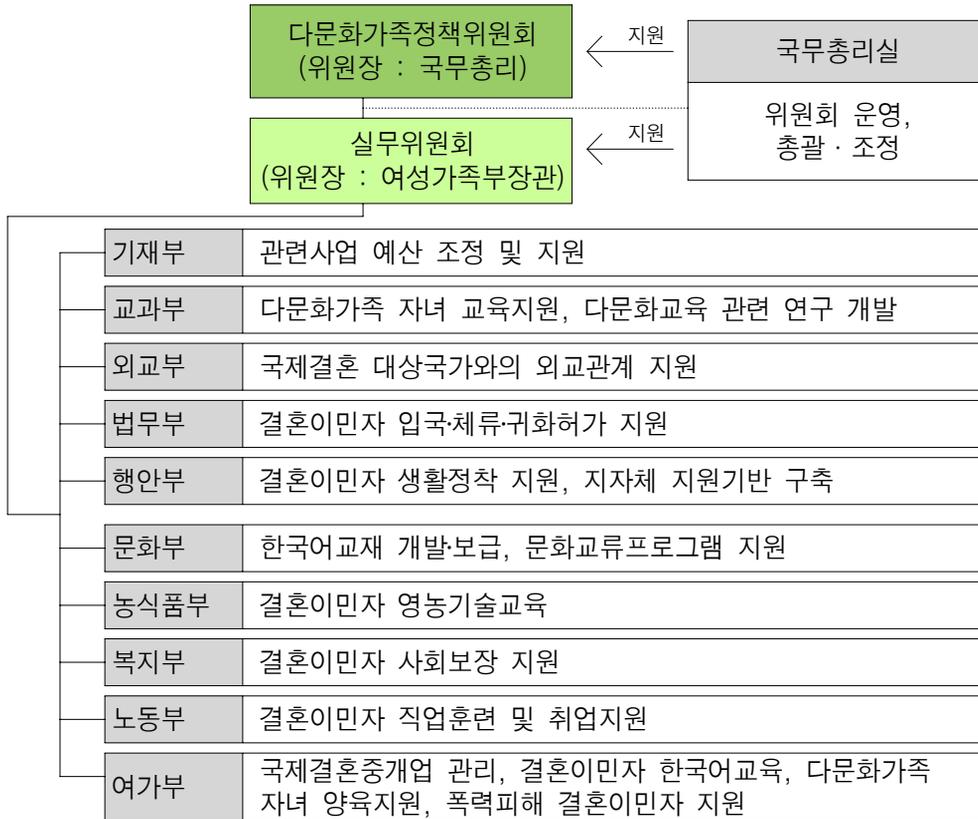
첫째, 여성가족부가 2011년 예산안에 편성한 일자리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일자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366명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수행주체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미 기본사업으로 취·창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수행방식이 취·창업지원과 동일한 사업을 159개 센터 중 일부 센터만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sup>110)</sup>은 부처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부처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2011년 예산안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상반되게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여성가족부가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정책수행이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총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9)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 2010 111쪽

110)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2010. 5.7

[그림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도



자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국무총리실(2010. 5)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는 취·창업지원은 사업효율성을 점검하여 기본사업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본사업으로 취·창업지원 외에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 자조모임지원, 상담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특성화사업으로 이중언어교실 운영,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은 센터장을 제외하면 직원 2인에 불과하고, 예산규모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1,300만원(취·창업지원 예산은 85만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취·창업교육을 실시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센터(2009년 기준 100개)는 이용자 5,884명에 대하여 취·창업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취·창업교육에 따른 일자리 연계인원은 445명으로 교육인원 대비 7.5% 수준에 불과하였다. 연계인원이 1명도 없는 센터도 61개가 되어 61%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취업된 직종도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에 일부 직역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직업훈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부는 취·창업교육이라기 보다는 비즈공예, 벨리댄스, 쿨트, 리본공예 등 문화강좌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취·창업지원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필요

#### (가)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필요성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36.9%이나 취업 희망률은 86.2%를 차지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많으나 일자리에 연계되어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취업 희망률에 비추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취업된 결혼이민자 취업직종은 서비스직 29.4%, 단순 노무자 18.6%, 전문직 13.6% 등의 순서이고, 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율도 10.4%에 불과하다. 한국복지패널(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32만 2천원이고 여성 결혼이민자 78.6%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이므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구보다 소득이 적다.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일자리를 지원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자리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52] 결혼이민자의 취업직종

(단위: %, 명)

| 구분        | 전체<br>결혼이민자   | 여성<br>결혼이민자   | 남성<br>결혼이민자   |
|-----------|---------------|---------------|---------------|
| 현재 본인 직종  |               |               |               |
| 서비스       | 29.4          | 32.5          | 10.1          |
| 판매        | 5.8           | 5.9           | 5.0           |
| 농림어업      | 3.2           | 3.5           | 1.2           |
| 기능        | 6.5           | 5.7           | 11.7          |
| 기계조작및조립   | 5.5           | 5.2           | 7.4           |
| 가사관련단순노무자 | 4.2           | 4.6           | 1.2           |
| 기타단순노무자   | 18.6          | 17.0          | 29.1          |
| 사무        | 3.4           | 3.5           | 3.1           |
| 전문가       | 13.6          | 12.4          | 21.2          |
| 임직원및관리자   | 0.5           | 0.4           | 1.4           |
| 기타        | 9.3           | 9.5           | 8.7           |
| 계(수)      | 100.0(66,191) | 100.0(57,194) | 100.0( 8,997)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여성 결혼이민자가 취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도움은 일자리 알선 29.6%, 자녀양육 지원 22.9%, 한국어 교육 18.4%, 직업교육 14.1% 등의 순서로 나타나 일자리 알선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우선순위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을 포함한 결혼이민자 전체로 범위를 확장할 경우에도 일자리알선은 30.1%로 취업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sup>111)</sup>

111) 김승권 외 7인, 전계서 230쪽, 269쪽

[표 5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움

(단위: %, 명)

| 구분       | 도움이<br>필요<br>없다 | 일자리<br>알선 | 직업<br>교육 | 한국어<br>교육 | 자녀<br>보육,<br>양육<br>지원 | 배우자나<br>가족의<br>이해와<br>지원 | 기타   | 계(수)          |
|----------|-----------------|-----------|----------|-----------|-----------------------|--------------------------|------|---------------|
| 전체       | 3.1             | 30.1      | 13.9     | 18.3      | 22.5                  | 6.3                      | 5.8  | 100.0(58,943) |
| 성        |                 |           |          |           |                       |                          |      |               |
| 여성       | 2.9             | 29.6      | 14.1     | 18.4      | 22.9                  | 6.4                      | 5.6  | 100.0(57,251) |
| 남성       | 8.3             | 46.4      | 9.1      | 13.3      | 9.3                   | 1.0                      | 12.6 | 100.0( 1,692) |
| 국적취득 여부  |                 |           |          |           |                       |                          |      |               |
| 외국인      | 2.9             | 29.9      | 13.3     | 21.8      | 19.9                  | 7.1                      | 5.1  | 100.0(44,553) |
| 국적취득     | 3.7             | 30.8      | 16.0     | 7.4       | 30.6                  | 3.6                      | 7.8  | 100.0(14,390) |
| 지역       |                 |           |          |           |                       |                          |      |               |
| 동 지역     | 3.5             | 30.3      | 13.9     | 17.7      | 23.4                  | 4.9                      | 6.3  | 100.0(40,406) |
| 읍면 지역    | 2.2             | 29.6      | 13.9     | 19.5      | 20.8                  | 9.2                      | 4.8  | 100.0(18,537) |
| 연령       |                 |           |          |           |                       |                          |      |               |
| 24세 이하   | 2.0             | 28.7      | 14.6     | 22.3      | 18.7                  | 9.7                      | 3.9  | 100.0(16,825) |
| 25~29세   | 2.5             | 27.0      | 14.8     | 19.9      | 25.5                  | 5.4                      | 4.9  | 100.0(15,115) |
| 30~34세   | 2.8             | 27.0      | 14.0     | 16.9      | 29.5                  | 4.4                      | 5.4  | 100.0(11,003) |
| 35~39세   | 3.7             | 29.5      | 14.5     | 14.4      | 26.6                  | 4.5                      | 7.0  | 100.0( 7,991) |
| 40~49세   | 5.8             | 40.6      | 11.3     | 13.7      | 13.7                  | 5.4                      | 9.5  | 100.0( 6,335) |
| 50세 이상   | 7.4             | 56.3      | 6.4      | 7.3       | 2.6                   | 4.5                      | 15.5 | 100.0( 1,676) |
| 학력수준     |                 |           |          |           |                       |                          |      |               |
| 초등학교 이하  | 2.7             | 31.9      | 10.9     | 21.0      | 19.7                  | 8.3                      | 5.4  | 100.0( 4,945) |
| 중학교      | 2.9             | 30.1      | 12.9     | 18.7      | 21.6                  | 7.6                      | 6.3  | 100.0(16,610) |
| 고등학교     | 2.9             | 29.7      | 15.3     | 16.3      | 23.7                  | 6.0                      | 6.0  | 100.0(24,551) |
| 대학교 이상   | 3.7             | 30.4      | 13.9     | 20.3      | 22.7                  | 4.2                      | 4.8  | 100.0(12,277) |
| 혼인상태     |                 |           |          |           |                       |                          |      |               |
| 유배우      | 3.0             | 29.9      | 13.9     | 18.5      | 22.7                  | 6.4                      | 5.6  | 100.0(57,535) |
| 이혼       | 7.5             | 38.2      | 14.2     | 4.1       | 19.0                  | 1.5                      | 15.5 | 100.0( 880)   |
| 사별       | 3.4             | 45.9      | 14.0     | 9.0       | 14.4                  | 1.1                      | 12.3 | 100.0( 316)   |
| 체류기간     |                 |           |          |           |                       |                          |      |               |
| 1년 미만    | 2.1             | 25.4      | 12.5     | 34.5      | 11.0                  | 10.4                     | 4.1  | 100.0( 7,354) |
| 1~2년 미만  | 2.0             | 27.9      | 13.2     | 25.6      | 20.1                  | 7.1                      | 4.1  | 100.0( 9,891) |
| 2~5년 미만  | 2.9             | 30.9      | 14.6     | 16.2      | 24.4                  | 5.9                      | 5.1  | 100.0(20,763) |
| 5~10년 미만 | 3.9             | 31.1      | 15.0     | 9.9       | 29.7                  | 3.5                      | 7.0  | 100.0(11,099) |
| 10년 이상   | 4.2             | 33.1      | 13.2     | 12.5      | 21.7                  | 6.4                      | 8.9  | 100.0( 9,837)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 (나) 고용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실적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2010년 상반기(2010.1.1~6.30) 결혼이민자 구직등록 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81개 고용센터에 6,451명이 등록하여 2009년 상반기 1,140명의 5.7배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다.<sup>112)</sup> 구직등록 결혼이민자 중 2010년 상반기에 취업된 사람은 1,346명으로 2009년 183명에 비하면 7.4배 개선된 실적을 보인다. 결혼이민자가 고용센터 알선을 통하여 취업한 알선취업 비율은 50.3%(667명)으로 내국인 17.5%<sup>113)</sup>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결혼이민자 알선 취업비율이 내국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은 결혼이민자를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취업할 경우 높은 점수<sup>114)</sup>를 부여하고 고용센터 기관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고용센터를 통하여 알선 취업된 결혼이민자의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제조·조립 직종 48.4%, 사무원 18.8%, 교사 9.9%로 77.1%를 점유하고, 사회복지 6.4%, 급식원 4.3%, 정보화 2.0%, 상담원 2.0%, 감시원 2.0% 순서이다. 제조·조립 직종이 48.4%를 차지하여 결혼이민자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로 5~30인 사업장에 취업(55.1%)되어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취업은 비교적 건실한 사업장으로 취업되었음을 보여준다.

#### (다) 일자리지원사업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된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등에 한정되고 연계실적이 7.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을 비교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연계실적은 양과 질 모두 우수한 수준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취

---

112) 안산센터(273명), 경인센터(249명), 인천북부센터(249명), 부산센터(240명), 전주센터(220명), 서울북부센터(214명), 수원센터(213명) 등 센터 당 평균 80명 등록

113) 2010년 내국인 센터알선을 통하여 취업한 알선취업자 비율은 17.5%로 전체 취업자 수 358,536명 중 알선 취업자 수가 64,225명을 차지하고 있음.

114) 내국인 알선취업은 1점,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알선취업은 4점

창업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통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구직등록, 취업상담, 일자리알선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창업지원사업을 제외한 한국어교육, 상담사업,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 자조모임지원을 중심으로 기본사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안을 2011년에 편성하지 아니한 것은 결혼이민자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적합하고 시장성이 있는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인력 인건비 지원

### (1) 다문화가족 상담지원 필요성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 25.1%로 가장 많았고<sup>115)</sup>, ‘가족친척의 소개’ 23.3%, ‘친구·동료의 소개’ 23.1% 등의 순서이다. 성별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 2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결혼한 비율은 2.1%에 불과하였다.<sup>116)</sup>

---

115) 김유경 외 3인(2008) 연구에서도 결혼중개업체의 소개에 의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31.0%)이었음.

116) 김승권 외 7인, 전계서 291쪽

[표 54]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만난 경로

(단위: %, 명)

| 구분       | 결혼<br>중개업체 | 가족,<br>친척의<br>소개 | 친구,<br>동료의<br>소개 | 종교기관 | 스스로  | 기타  | 계<br>(수)           |
|----------|------------|------------------|------------------|------|------|-----|--------------------|
| 전체 결혼이민자 |            |                  |                  |      |      |     |                    |
| 전체       | 25.1       | 23.3             | 23.1             | 6.4  | 18.2 | 3.9 | 100.0<br>(117,854) |
| 동 지역     | 20.4       | 23.8             | 25.3             | 4.6  | 21.6 | 4.4 | 100.0<br>( 85,027) |
| 읍·면 지역   | 37.3       | 22.0             | 17.4             | 11.3 | 9.3  | 2.7 | 100.0<br>( 32,827) |
| 여성 결혼이민자 |            |                  |                  |      |      |     |                    |
| 전체       | 27.0       | 24.1             | 22.9             | 6.7  | 15.8 | 3.5 | 100.0<br>(108,772) |
| 동 지역     | 22.3       | 24.9             | 25.2             | 4.7  | 19.0 | 3.9 | 100.0<br>( 76,805) |
| 읍·면 지역   | 38.2       | 22.2             | 17.2             | 11.4 | 8.3  | 2.6 | 100.0<br>( 31,967) |
| 남성 결혼이민자 |            |                  |                  |      |      |     |                    |
| 전체       | 2.1        | 14.1             | 25.7             | 3.7  | 46.0 | 8.4 | 100.0<br>( 9,082)  |
| 동 지역     | 2.0        | 14.0             | 26.1             | 3.5  | 45.9 | 8.5 | 100.0<br>( 8,222)  |
| 읍·면 지역   | 2.9        | 14.7             | 22.0             | 5.9  | 47.1 | 7.4 | 100.0<br>( 860)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결혼이민자의 결혼특성에 따른 배우자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배우자를 만난 경로가 결혼중개업체인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참고로, 결혼유형별로는 부부 모두 초혼일 때 만족도가 가장 높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남녀 모두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sup>117)</sup>

117) 김승권 외 7인, 전계서 343쪽

[표 55] 결혼이민자의 결혼특성별 배우자관계 만족도

(단위: 점, 명)

| 구분           | 여성 결혼이민자 |       |         | 남성 결혼이민자 |       |       |
|--------------|----------|-------|---------|----------|-------|-------|
|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전체           | 4.05     | 0.900 | 108,919 | 4.40     | 0.787 | 8,566 |
| 배우자 만남 경로    |          |       |         |          |       |       |
| 결혼중개업        | 3.97     | 0.925 | 29,634  | 4.17     | 0.751 | 222   |
| 기타           | 4.07     | 0.882 | 79,286  | 4.40     | 0.791 | 9,314 |
| 결혼유형         |          |       |         |          |       |       |
| 부부 초혼        | 4.08     | 0.888 | 70,496  | 4.44     | 0.785 | 5,353 |
| 부부 재혼        | 3.99     | 0.891 | 19,717  | 4.33     | 0.773 | 2,430 |
| 부인 초혼, 남편 재혼 | 3.97     | 0.938 | 11,189  | 4.37     | 0.842 | 557   |
| 부인 재혼, 남편 초혼 | 4.05     | 0.890 | 7,518   | 4.38     | 0.818 | 1,196 |
| 결혼기간         |          |       |         |          |       |       |
| 1년 이하        | 4.25     | 0.819 | 20,627  | 4.55     | 0.749 | 1,118 |
| 2~3년 이하      | 4.14     | 0.858 | 32,258  | 4.46     | 0.752 | 2,374 |
| 4~5년 이하      | 3.99     | 0.881 | 20,629  | 4.41     | 0.757 | 1,968 |
| 6~10년 이하     | 3.89     | 0.941 | 18,877  | 4.32     | 0.848 | 1,973 |
| 11년 이상       | 3.82     | 0.953 | 10,405  | 4.36     | 0.804 | 1,212 |
| 배우자부모 동거여부   |          |       |         |          |       |       |
| 비동거          | 4.03     | 0.902 | 77,886  | 4.39     | 0.795 | 8,775 |
| 동거           | 4.09     | 0.876 | 31,033  | 4.46     | 0.736 | 762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제결혼은 배우자 사이에서 애정을 기반으로 형성되기보다는 도구적 성격이 가미된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갈등이 발생할 경우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문제를 논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지원사업 현황

현행법 제7조<sup>118)</sup>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센터지원센터는 기본사업으로 가족상담 및 개인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결혼이민자가 13,631명(69.1%)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한국인배우자 3,869명(19.6%), 한국인배우자 모 663명(3.4%) 등의 순서이다.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4,032명(39.7%), 중국 2,799명(27.6%), 필리핀 1,208명(11.9%), 러시아 452명(4.5%), 일본 448명(4.4%), 몽골 256명(2.5%), 카자흐스탄 202명(2.0%), 태국 195명(1.9%), 캄보디아 139명(1.4%), 네팔 72명(0.8%), 인도네시아 68명(0.6%), 우즈베키스탄 56명(0.5%), 미얀마 25명(0.2%), 기타 190명(1.9%)의 순서이다.

[표 56] 결혼이민자 국적별 상담현황

(단위: 명, %)

| 국가 |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러시아 | 일본  | 몽골  | 카자흐스탄 | 태국  | 캄보디아 | 네팔  | 인도네시아 | 우즈베키스탄 | 미얀마 |
|----|-------|-------|-------|-----|-----|-----|-------|-----|------|-----|-------|--------|-----|
| 인원 | 4,032 | 2,799 | 1,208 | 452 | 448 | 256 | 202   | 195 | 139  | 72  | 68    | 56     | 25  |
| 비율 | 39.7  | 27.6  | 11.9  | 4.5 | 4.4 | 2.5 | 2.0   | 1.9 | 1.4  | 0.8 | 0.6   | 1.5    | 0.2 |

자료: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2010)

상담주제는 부부문제 6,766명(24.4%), 경제문제 1,957명(7.1%), 자녀문제 1,933명(7.0%), 부모문제 1,496명(5.45)이고, 기타문제 15,472명(55.8%)이다. 기타문제의 경우 취업 상담, 장애·중독 관련 상담, 이웃관계 상담, 체류·국적취득 상담, 결혼중개업체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담고 있다.

1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57] 결혼이민자 상담주제

(단위: 명, %)

| 구분         | 부부문제  | 부모문제  | 자녀문제  | 성문제 | 경제문제  | 기타문제   | 합계     |
|------------|-------|-------|-------|-----|-------|--------|--------|
| 결혼이민자      | 3,968 | 972   | 1,485 | 60  | 1,576 | 8,007  | 16,068 |
| 한국인배우자     | 2,068 | 164   | 187   | 15  | 256   | 1,480  | 4,170  |
| 자녀         | 2     | 7     | 47    | 0   | 6     | 5,135  | 5,197  |
| 한국인배우자 부   | 45    | 35    | 38    | 0   | 13    | 98     | 229    |
| 한국인배우자 모   | 162   | 200   | 93    | 14  | 30    | 236    | 735    |
| 결혼이민자 부    | 1     | 2     | 0     | 0   | 0     | 5      | 8      |
| 결혼이민자 모    | 6     | 4     | 2     | 0   | 3     | 12     | 27     |
| 한국인배우자 친인척 | 156   | 51    | 13    | 2   | 19    | 115    | 356    |
| 결혼이민자 친인척  | 31    | 6     | 2     | 0   | 7     | 18     | 64     |
| 기타         | 327   | 55    | 66    | 6   | 47    | 366    | 867    |
| 총 계        | 6,766 | 1,496 | 1,933 | 97  | 1,957 | 15,472 | 27,721 |
|            | 24.4  | 5.4   | 7.0   | 0.3 | 7.1   | 55.8   | 100%   |

주: 2009년 기준

자료: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2010)

###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지원사업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인력 구성은 센터종사자(또는 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인력) 및 상담 관련 자원봉사자로 구성되고, 상담교육과정을 수료한 결혼이민자가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한다.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상담 관련 자원봉사자가 750명으로 상담인력의 92.4%를 차지하고 있고, 센터종사자(또는 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인력 포함)는 63명으로 7.6%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sup>119)</sup>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은 센터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사상구는 상담 자원봉사자를 65명 확보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서울 영등포구는 2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나 결혼이민자 수는 서

119)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0 91쪽

울 영등포구가 4,404명(2009. 5 기준, 행정안전부)인데 반하여 부산 사상구는 734명(2009. 5 기준, 행정안전부)으로 결혼이민자 수가 6.25배나 많은 센터가 오히려 상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적실성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4) 상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은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갈등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상담인력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상담사업은 센터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상담인력 자원 봉사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센터역량에 따라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상담지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상담지원을 규정할 뿐 인력과 예산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아니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자격현황을 살펴보면, 159개 센터 종사자 257명 중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16명에 불과하여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세부명세를 살펴보면, 상담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으므로 상담지원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표 5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세부명세

(단위: 천원)

|    | 한국어교육                           | 다문화사회<br>이해교육          | 취창업지원              | 자조모임    | 상담 |
|----|---------------------------------|------------------------|--------------------|---------|----|
| 예산 | 7,520                           | 4,380                  | 850                | 200     | -  |
| 명세 | 강사비 6,400<br>교재비 720<br>진행비 400 | 강사비 3,280<br>진행비 1,100 | 강사비 600<br>진행비 250 | 진행비 200 | -  |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sup>120)</sup>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여성가족부는 센터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본사업으로 “상담지원”을 지정하고 있다. 센터 필수사업으로 “상담지원”을 지정한 것이라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담인력을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인원 및 상담실적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라.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 (1) 2011년 예산안 산출근거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신규로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사업”에 115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소득분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은 만 0-4세 보육료지원사업 또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이 사업은 보육료 지

1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원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의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지원대상자인 소득상위 30% 다문화가정 아동수를 추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아동수(전체 다문화아동 수\*보육시설이용률)에 20%(보육시설 이용 다문화아동 상위 30% 구간에 해당하는 비율)를 곱하여 산출한다.

[표 59]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사업 대상아동 정부추계

(단위: 명, %)

| 구분 | 다문화아동(A) | 보육시설이용률(B) | 시설이용다문화아동(C=A*B) | 대상아동(D=C*20%) |
|----|----------|------------|------------------|---------------|
| 0세 | 8,160    | 28.6%      | 2,333            | 467           |
| 1세 | 14,226   | 45.3%      | 6,440            | 1,288         |
| 2세 | 13,059   | 62.8%      | 8,205            | 1,641         |
| 3세 | 9,115    | 59.3%      | 5,408            | 1,082         |
| 4세 | 7,476    | 45.4%      | 3,395            | 679           |
| 5세 | 6,467    | 31.5%      | 2,038            | 408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다문화아동(A) 수를 행정안전부의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에서 산출한 인원을 반영하였고, 보육시설이용률(B)은 2009년 전체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에 증가폭 추정치를 반영한 2011년 보육시설 이용률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표 60] 2011년 보육시설 이용률 추정

| 구분 | 연도별 이용률 실적 |       |       | 이용률 추정   |          |
|----|------------|-------|-------|----------|----------|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추정 | 2011년 추정 |
| 0세 | 16.2%      | 21.1% | 24.3% | 26.5%    | 28.6%    |
| 1세 | 28.3%      | 35.9% | 40.3% | 42.8%    | 45.3%    |
| 2세 | 47.1%      | 55.8% | 59.6% | 61.2%    | 62.8%    |
| 3세 | 48.3%      | 48.5% | 52.1% | 55.7%    | 59.3%    |
| 4세 | 41.9%      | 39.1% | 41.2% | 43.3%    | 45.4%    |
| 5세 | 32.1%      | 35.5% | 31.5% | 31.5%    | 31.5%    |

자료: 보건복지부

[표 61]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폭 추정

| 구분 | 2007<br>~ 2008년 | 2008<br>~ 2009년 |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폭 추정 |  |
|----|-----------------|-----------------|-----------------|--|
|    |                 |                 | 증가폭<br>추정치      | 추정근거                                     |
| 0세 | 4.9% p          | 3.2% p          | 2.1%p           | 2008-2009년 증가폭/2007-2008년 증가폭 비율(66%) 적용 |
| 1세 | 7.6% p          | 4.4% p          | 2.5%p           | 2008-2009년 증가폭/2007-2008년 증가폭 비율(57%) 적용 |
| 2세 | 8.8% p          | 3.8% p          | 1.6%p           | 2008-2009년 증가폭/2007-2008년 증가폭 비율(43%) 적용 |
| 3세 | 0.2% p          | 3.6% p          | 3.6%p           | 2008-2009년 증가폭 적용                        |
| 4세 | -2.8% p         | 2.1% p          | 2.1%p           | 2008-2009년 증가폭 적용                        |
| 5세 | 3.4% p          | -3.9% p         | 0.0%p           | 2009년 증가폭 동결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상위 30% 구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20%로 잡은 것은 다문화아동 보육시설 이용현황(2010.6.30 기준)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다문화아동 비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62] 다문화아동 보육시설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 이용 아동 수 |                         |                             |                             |                        |
|---------------------|---------|-------------------------|-----------------------------|-----------------------------|------------------------|
|                     | 합계      | 전액지원<br>(소득분위<br>50%이하) | 60% 지원<br>(소득분위<br>50%~60%) | 30% 지원<br>(소득분위<br>60%~70%) | 미지원<br>(소득분위<br>70%이상) |
| 다문화아동 보육<br>시설 이용현황 | 28,281  | 21,292                  | 1,563                       | 935                         | 4,491                  |

주: 2010. 6.30 기준

자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 (2)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필요

이 사업은 사업대상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상위 30%에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므로 사업설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은 여성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남성 결혼이민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표 63]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명)

| 구분        | 50만원 미만 | 50~100만원 | 100~200만원 | 200~300만원 | 300~400만원 | 400~500만원 | 500~600만원 | 600~700만원 | 700만원 이상 | 모르겠다 | 계 (수)              |
|-----------|---------|----------|-----------|-----------|-----------|-----------|-----------|-----------|----------|------|--------------------|
| 전체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전체        | 5.1     | 16.2     | 38.4      | 18.7      | 5.7       | 1.8       | 0.9       | 0.5       | 0.7      | 12.0 | 100.0<br>(126,310) |
| 중국(한국계)   | 5.7     | 19.0     | 40.8      | 20.4      | 5.8       | 1.7       | 0.6       | 0.2       | 0.4      | 5.4  | 100.0<br>( 38,736) |
| 중국(한족 등)  | 4.4     | 14.3     | 39.8      | 21.0      | 6.7       | 2.0       | 0.9       | 0.4       | 0.6      | 9.9  | 100.0<br>( 34,914) |
| 베트남       | 5.1     | 17.4     | 38.1      | 14.6      | 2.4       | 0.6       | 0.3       | 0.2       | 0.2      | 21.0 | 100.0<br>( 24,258) |
| 필리핀       | 9.0     | 19.7     | 29.2      | 8.3       | 3.8       | 0.9       | 1.3       | 1.0       | 1.8      | 25.1 | 100.0<br>( 7,811)  |
| 몽골        | 4.9     | 12.7     | 44.3      | 17.2      | 5.6       | 0.8       | 0.8       | 0.3       | 0.4      | 12.9 | 100.0<br>( 1,780)  |
| 태국        | 5.5     | 15.6     | 39.2      | 20.0      | 4.9       | 1.2       | 0.7       | 1.0       | 0.7      | 11.3 | 100.0<br>( 1,687)  |
| 캄보디아      | 8.6     | 15.1     | 38.3      | 12.0      | 3.1       | 0.7       | 0.2       | 0.1       | 0.2      | 21.6 | 100.0<br>( 2,450)  |
| 일본        | 3.2     | 13.2     | 37.3      | 23.5      | 7.9       | 3.0       | 1.5       | 0.6       | 1.0      | 8.8  | 100.0<br>( 5,238)  |
| 북미·호주·서유럽 | 2.1     | 1.4      | 7.7       | 24.7      | 18.5      | 12.9      | 9.6       | 5.2       | 7.0      | 10.8 | 100.0<br>( 2,316)  |
| 기타        | 2.9     | 11.6     | 38.0      | 19.8      | 8.9       | 3.4       | 1.5       | 0.7       | 1.7      | 11.5 | 100.0<br>( 7,075)  |
| 여성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전체        | 5.1     | 16.4     | 38.6      | 18.5      | 5.4       | 1.6       | 0.8       | 0.4       | 0.6      | 12.5 | 100.0<br>(115,232) |
| 중국(한국계)   | 5.5     | 19.0     | 40.5      | 20.5      | 5.9       | 1.7       | 0.6       | 0.2       | 0.4      | 5.6  | 100.0<br>( 34,952) |
| 중국(한족 등)  | 4.1     | 13.8     | 39.7      | 21.3      | 6.9       | 2.1       | 0.9       | 0.4       | 0.6      | 10.2 | 100.0<br>( 32,033) |
| 베트남       | 5.2     | 17.3     | 38.1      | 14.7      | 2.4       | 0.6       | 0.3       | 0.2       | 0.2      | 21.1 | 100.0<br>( 24,145) |
| 필리핀       | 9.1     | 19.9     | 28.9      | 8.3       | 3.6       | 0.8       | 1.3       | 1.0       | 1.8      | 25.3 | 100.0<br>( 7,681)  |
| 몽골        | 4.9     | 12.3     | 44.5      | 17.4      | 5.6       | 0.7       | 0.8       | 0.3       | 0.5      | 13.1 | 100.0<br>( 1,750)  |
| 태국        | 4.9     | 15.8     | 39.1      | 20.1      | 4.9       | 1.2       | 0.7       | 1.0       | 0.7      | 11.5 | 100.0<br>( 1,668)  |
| 캄보디아      | 8.6     | 15.1     | 38.3      | 12.0      | 3.1       | 0.7       | 0.2       | 0.1       | 0.2      | 21.6 | 100.0<br>( 2,445)  |
| 일본        | 3.3     | 13.6     | 38.5      | 23.1      | 7.2       | 2.7       | 1.3       | 0.5       | 0.8      | 8.9  | 100.0<br>( 4,866)  |
| 북미·호주·    | 2.8     | 0.8      | 8.9       | 18.1      | 14.4      | 6.4       | 11.5      | 5.5       | 10.6     | 21.0 | 100.0              |

| 구분            | 50만원<br>미만 | 50~<br>100<br>만원 | 100~<br>200<br>만원 | 200~<br>300<br>만원 | 300~<br>400<br>만원 | 400~<br>500<br>만원 | 500~<br>600<br>만원 | 600~<br>700<br>만원 | 700<br>만원<br>이상 | 모르<br>겠다 | 계<br>(수)           |
|---------------|------------|------------------|-------------------|-------------------|-------------------|-------------------|-------------------|-------------------|-----------------|----------|--------------------|
| 서유럽           |            |                  |                   |                   |                   |                   |                   |                   |                 |          | ( 529)             |
| 기타            | 2.9        | 11.7             | 36.6              | 19.5              | 9.1               | 3.2               | 1.5               | 0.6               | 1.5             | 13.3     | 100.0<br>( 5,165)  |
| 남성 결혼이민자      |            |                  |                   |                   |                   |                   |                   |                   |                 |          |                    |
| 전체            | 5.4        | 14.7             | 36.0              | 20.4              | 8.1               | 4.1               | 2.1               | 1.1               | 2.0             | 6.0      | 100.0<br>( 11,079) |
| 중국(한국계)       | 7.5        | 18.5             | 44.2              | 19.2              | 4.6               | 1.1               | 0.2               | 0.1               | 0.4             | 4.2      | 100.0<br>( 3,787)  |
| 중국(한족 등)      | 6.9        | 20.6             | 40.6              | 17.8              | 4.0               | 1.6               | 0.7               | 0.0               | 1.2             | 6.5      | 100.0<br>( 2,879)  |
| 일본            | 1.4        | 8.4              | 22.2              | 27.7              | 15.8              | 6.4               | 3.6               | 1.9               | 4.1             | 8.6      | 100.0<br>( 419)    |
| 북미·호주·<br>서유럽 | 1.8        | 1.6              | 7.4               | 26.6              | 19.7              | 14.8              | 9.1               | 5.1               | 6.0             | 7.8      | 100.0<br>( 1,789)  |
| 기타            | 3.4        | 12.4             | 41.7              | 19.4              | 8.7               | 3.5               | 1.2               | 0.8               | 2.1             | 6.7      | 100.0<br>( 2,204)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남성 결혼이민자 고소득층의 경우 출신국적이 북미·유럽·일본의 선진국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과 같은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무상보육 지원에 가려진 맹점으로 보인다. 소득상위 30%(2010년 436만원·4인가족) 이상에 속하는 가구는 다문화가정일지라도 생활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득계층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일정한 소득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 2.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

###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급

####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배분현황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개소에 대하여 기본운영비를 독립형 센터 7,000만원, 병합형 센터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균등배분하고 있다. 기본운영비는 2006년·2007년 4,300만원, 2008년 5,000만원, 2009년 7,0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부터 독립형과 병합형을 나누어 독립형의 경우 7,000만원, 병합형의 경우 5,000만원을 기본운영비로 각각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는 종사자인건비(사용자 부담금 포함), 운영비, 사업비에 사용된다. 기본운영비의 세부적인 명세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70%), 사업비는 미미한 수준(19%)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내역

(단위: 천원)

|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계      |
|----|--------|-------|--|--------|
| 예산 | 48,650 | 8,400 | 12,950   | 70,000 |
| 명세 |        |       | 한국어교육 7,520<br>다문화사회이해교육 4,380<br>취·창업지원 850<br>자조모임 200 |        |

자료: 여성가족부

## (2) 기본운영비 균등배분의 문제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대상인 다문화가족 인원, 사업실적 등에 상관없이 기본운영비를 센터별로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투입되는 것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운영비를 센터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업운영 성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센터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사업실적이 좋은 센터나 좋지 못한 센터가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비를 지급받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 결혼이민자 수(2009년 5월 기준,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안산시 5,904명, 서울시 영등포구 4,404명임에도 결혼이민자 수가 104명에 불과한 강원도 인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동일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본운영비가 배분될 필요가 있다.

[표 6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 결혼이민자 수

(단위: 명)

| 시·도 | 500명 이하 | 501~1,000명 | 1,001~1,500명 | 1,501~2,000명 | 2,001~2,500명 | 2,501~3,000명 | 3,000명 초과 | 합계  |
|-----|---------|------------|--------------|--------------|--------------|--------------|-----------|-----|
| 서울  | -       | 2          | 6            | 7            | 2            | 1            | 1         | 19  |
| 부산  | 1       | 6          |              |              |              |              |           | 7   |
| 대구  | 3       | 2          | 1            |              |              |              |           | 6   |
| 인천  | 1       | 1          | 1            | 2            | 2            |              |           | 7   |
| 광주  |         | 2          | 1            |              |              |              |           | 3   |
| 대전  | 1       | 1          |              |              |              |              |           | 2   |
| 울산  |         | 3          |              |              |              |              |           | 3   |
| 경기  | 2       | 6          | 5            | 5            | 1            | 1            | 4         | 24  |
| 강원  | 10      | 2          |              |              |              |              |           | 12  |
| 충북  | 6       | 2          | 1            |              |              |              |           | 9   |
| 충남  | 6       | 2          | 1            | 1            |              |              |           | 10  |
| 전북  | 7       | 2          | 2            |              |              |              |           | 11  |
| 전남  | 12      | 3          |              |              |              |              |           | 15  |
| 경북  | 11      | 3          | 1            |              |              |              |           | 15  |
| 경남  | 8       | 4          | 2            |              |              |              |           | 14  |
| 제주  | 1       |            | 1            |              |              |              |           | 2   |
| 합계  | 69      | 41         | 22           | 15           | 5            | 2            | 5         | 159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3) 기본운영비 차등지급 필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을 근거로 2010년 23개소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기관별 노인인구수(2~12점)와 노인학대 신고건수(1~6점)를 기준으로 하여 “가”형, “나”형, “다”형의 3단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표 66]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배분현황

| 구분     | 순위 | 총계 | 65세 이상 노인인구 |        |    | 노인학대 신고건수 |        |    | 유형   |
|--------|----|----|-------------|--------|----|-----------|--------|----|------|
|        |    |    | 인원          | 비율     | 접수 | 건수        | 비율     | 접수 |      |
| 총계     |    |    | 5,267,708   | 100.0% |    | 2,688     | 100.0% |    |      |
| 서울     | 1  | 18 | 935,757     | 17.8%  | 12 | 342       | 12.7%  | 6  | "가"형 |
| 경기(남부) | 1  | 18 | 676,903     | 12.9%  | 12 | 338       | 12.6%  | 6  |      |
| 경북     | 3  | 11 | 412,228     | 7.8%   | 8  | 107       | 4.0%   | 3  | "나"형 |
| 경남     | 3  | 11 | 377,987     | 7.2%   | 8  | 151       | 5.6%   | 3  |      |
| 대구     | 5  | 9  | 242,364     | 4.6%   | 6  | 144       | 5.4%   | 3  |      |
| 인천     | 5  | 9  | 225,683     | 4.3%   | 6  | 144       | 5.4%   | 3  |      |
| 경기(북부) | 5  | 9  | 288,269     | 5.5%   | 6  | 118       | 4.4%   | 3  |      |
| 강원     | 5  | 9  | 217,230     | 4.1%   | 6  | 149       | 5.5%   | 3  |      |
| 전북     | 5  | 9  | 277,682     | 5.3%   | 6  | 131       | 4.9%   | 3  |      |
| 전남(동부) | 5  | 9  | 203,090     | 3.9%   | 4  | 215       | 8.0%   | 5  |      |
| 광주     | 11 | 8  | 124,083     | 2.4%   | 4  | 171       | 6.4%   | 4  |      |
| 충남     | 11 | 8  | 301,248     | 5.7%   | 6  | 102       | 3.8%   | 2  |      |
| 부산(동부) | 13 | 7  | 184,952     | 3.5%   | 4  | 139       | 5.2%   | 3  |      |
| 부산(서부) | 13 | 7  | 196,819     | 3.7%   | 4  | 154       | 5.7%   | 3  |      |
| 대전     | 15 | 6  | 124,520     | 2.4%   | 4  | 63        | 2.3%   | 2  |      |
| 충북(남부) | 15 | 6  | 118,302     | 2.2%   | 4  | 53        | 2.0%   | 2  |      |
| 전남(서부) | 17 | 5  | 140,771     | 2.7%   | 4  | 32        | 1.2%   | 1  |      |
| 충북(북부) | 18 | 4  | 79,813      | 1.5%   | 2  | 56        | 2.1%   | 2  | "다"형 |
| 제주     | 18 | 4  | 66,706      | 1.3%   | 2  | 53        | 2.0%   | 2  |      |
| 울산     | 20 | 3  | 73,301      | 1.4%   | 2  | 26        | 1.0%   | 1  |      |

주: 2010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사업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사업실적인 노인 학대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사업대상인 결혼이민자 수, 한국어교육인원·상담실적 등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기본운영비를 차등하여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운영비를 차등하여 배분하면 사업성과

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고 센터 운영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나. 거점센터 시·도별 1개소 설치

### (1) 거점센터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수가 확대(2006년 21개소→2010년 159개소→2011년 200개소 예정)되고 수행사업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중앙관리기관인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전국 159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역부족이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6개를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점센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후 사업실적이 우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6개소를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개소 당 2,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표 67] 거점센터 현황

| 구분     | 센터명   | 관리지역           | 센터 수 | 지원액        |
|--------|-------|----------------|------|------------|
| 계      |       |                | 159  | 1억 5,000만원 |
| 제1거점센터 | 동대문   | 서울, 강원         | 31   | 2,500만원    |
| 제2거점센터 | 안산시   | 인천, 경기         | 31   | 2,500만원    |
| 제3거점센터 | 청주시   | 대전, 충북, 충남     | 21   | 2,500만원    |
| 제4거점센터 | 익산시   | 광주, 전북, 전남     | 29   | 2,500만원    |
| 제5거점센터 | 구미시   | 대구, 경북         | 21   | 2,500만원    |
| 제6거점센터 | 울산시남구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26   | 2,500만원    |

자료: 여성가족부

거점센터의 기능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 지원) 지도사 보수교육 지원, 신규센터 사업·운영 지원, 상담 슈퍼비전, 거

접지역 내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2) 거점센터 권역별 지정의 문제점

여성가족부는 거점센터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일부를 선정하여 거점센터의 역할을 위탁함으로써 중앙 정부-광역 시·도-기초 시·군·구의 계층화된 현행 행정체계와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3단계(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거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체계를 거치는 것이 현행 행정체계와 부합하는 것이나 현재는 거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기초와 광역의 기능이 혼합되어 제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광역 단위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6개 권역별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점센터가 소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매칭(matching)사업을 운영할 때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거점센터가 권역별로 선정됨으로써 1개의 거점센터가 관리하는 지역이 2 내지 3개 시·도에 걸쳐 있어서 거점센터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2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관장하여야 한다. 거점센터가 관장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 권역별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방문지도사 보수교육의 경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재하는 방문지도사는 보수교육을 받기 위하여 제6거점센터인 울산시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모이도록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은 광역 단위를 벗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최소한 광역 시·도 단위별로 거점센터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

## (3) 거점센터 시·도 단위로 1개씩 설치 필요

6개 권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점센터를 16개 시·도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거점센터 1개소를 지정할 경우 투입되는 비용

은 운영비지원 2,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경우에도 소요비용은 2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

거점센터는 지역센터와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거점센터를 지역센터와 분리하고 총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은 지역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거점센터를 별도로 지정할 경우 센터 설치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현행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일부를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는 재정소요가 크지 아니하므로 16개 시도 단위에 1개씩 거점센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 다.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 (1) 병합형센터 지정현황

병합형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병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때 지정하는 유형으로서 의무고용비율을 종사자 1인 이상(독립형의 경우 2인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용이하게 만든 형태이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에 병합형 센터 3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신규로 지정된 병합형센터는 서울 13개소, 경기 11개소로서 전체 32개소 중 24개소(75%)가 수도권 지역 위주로 지정되었다. 경기도 여주군·가평군,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센터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9개소는 시 지역에 위치한 센터를 병합형센터로 지정한 것이다.

[표 68] 병합형센터 지정현황

(단위: 개소수)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계  | 32 | 13 | 2  | 1  | 2  | 1  | -  | -  | 11 | 2  | -  | -  | -  | -  | -  | -  | -  |

자료: 여성가족부

## (2) 병합형센터 지정의 문제점

병합형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수행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감사원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sup>121)</sup>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사업수행기관을 제한하여 운영함으로써 보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14개(36.8%)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병합형센터를 도입하여 사업수행기관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신규로 지정한 병합형센터의 경우 수도권(75%)을 위주로, 시(91%) 지역에 위치한 건강가정센터로 지정하였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이 수도권 위주 또는 도시 위주로 편중되어 설치된 측면이 있다.

아울러, 2010년 이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는 “독립형”으로 분류되어 7,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에 반하여 2010년 이후에 지정받은 건강가정지원센터 32개소는 “병합형”으로 분류되어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독립형”으로 지정받은 센터나 “병합형”으로 지정받은 센터 모두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한 것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시기에 따라 기본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 (3) 사업수행기관 다변화 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병합형센터 위주로 지정(2010년 독립형 27개소, 병합형 32개소)하여 운영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수도권 위주 또는 도시 지역 위주에 편중하여 신설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

121) 감사원, 「2007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 2008, 385쪽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 독립형을 위주로 지정하여 다양한 사업수행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경우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비를 배분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양이나 질의 차이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나 수행업무는 동일한 상황에서 지정시기(2010년 이전·이후)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설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제도 개선

### (1) 평가제도 현황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현장평가(75%)와 서면평가(25%)를 병행하고 있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현장평가는 4영역(센터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원연계 및 홍보활동)에서 19개 지표를 평가하고, 서면평가는 4영역(사업계획, DB입력 및 보고, 서면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 교육참여) 6개 지표를 평가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경우 현장평가는 4영역(사업관리, 지도사관리, 대상가정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에서 18개 지표를 평가하고, 서면평가는 4영역(사업계획, DB입력 및 보고, 서면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 교육참여) 7개 지표를 평가한다.

2009년 센터운영 평가결과 총점 275점 만점에 최고 270점~최저 167.5점까지 분포(평균 227점)하고, 우수기관은 서울 동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경기 안성, 강원 춘천, 전북 익산의 순서이다. 방문교육 평가결과 총점 275점 만점에 최고 274점~최저 167.5점까지 분포(평균 239점)하고, 우수기

관은 경남 함양, 경기 안성, 경북 경산, 서울 동대문·성북, 대구 달서구이다.

## (2) 평가제도 개선방안

현행 평가지표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배점이 높은 지표인 “사업계획의 내실성(8점)”과 “사업구성의 내실성(8점)”은 동일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표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진행의 내실성(8점) 항목은 질적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 달성도 등 양적 지표로 지표를 객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센터를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센터에 대하여는 보상을 부여하고 미흡한 센터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재를 부과하도록 환류(feedback)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업수행의 질적 제고를 담보하는 것이다. 2009년 센터를 평가한 결과 사업수행이 우수한 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도별 평균이 우수한 3개 시·도(서울, 대구, 강원)에 대하여 2010년 예산 배분 시 병합형센터 1개소를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였다.

사업수행이 우수한 센터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고 센터평가를 취합하여 시·도별 평균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사업수행이 우수한 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다. 2009년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지원한 병합형센터 1개소 추가 설치의 경우 2010년에 병합형센터가 32개소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었으므로 과연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인지 의문이다. 여성가족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갖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센터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개별적인 센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3. 입법 과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방향

#### 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법적 근거 마련

#####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실시현황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전국 15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본사업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어교육 교육실적은 연인원 기준으로 395,091명이고, 실인원 기준으로 21,860명이다. 한국어교육 수준별 운영성과는 연인원 기준으로 초급1 97,310명, 초급2 93,461명, 중급1 82,388명, 중급2 60,675명, 고급 61,257명이다. 한국어교육 국적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5,608명(38.4%), 중국 4,223명(28.9%), 필리핀 1,876명(12.8%)의 순서이다.

[표 6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실적

| 구분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 계       |
|-----|--------|--------|--------|--------|--------|---------|
| 연인원 | 97,310 | 93,461 | 82,388 | 60,675 | 61,257 | 395,091 |
| 실인원 | 5,536  | 5,067  | 4,624  | 3,240  | 3,393  | 21,860  |
| 강좌수 | 158    | 134    | 135    | 131    | 158    | 716     |

주: 2009년 100개 센터 기준

자료: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2) 한국어교육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sup>122)</sup>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12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교재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한국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sup>123)</sup>)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도 기본운영비 7,000만원 중 750만원(11%) 수준에 불과하고,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결혼이민자는 21,960명으로 결혼이민자 수 167,090명의 13.1%에 불과하다.

[표 7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이용비율

| 구분      | 행정안전부   | 센터이용자  | 센터이용비율 |
|---------|---------|--------|--------|
| 결혼이민자 수 | 167,090 | 21,960 | 13.1%  |
| 자녀 수    | 103,484 | 5,506  | 5.3%   |

자료: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2010)

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는 한국어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 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 한국어교재가 부족하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재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한국어 고급 단계 이후의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3) 한국어교육 확대 필요성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48.4%가 짧은 대화정도, 22.9%가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결혼이민자의 2/3 이상이 한국어 소통에 미숙하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국가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51.2%에 불과하여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부부간 또는 고부간 갈등의 발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24)</sup>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결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현재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그 응답을 ‘힘든 점 없다’부터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자녀양육’ ‘자녀교육’ ‘경제적 어려움’ ‘언어문제’ ‘생활방식, 관습 등 문화차이’ ‘음식’ ‘편견과 차별대우’ ‘기후차이’ ‘기타’인 12개 항목 가운데 하나만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는 ‘언어문제(22.5%)’와 ‘경제적 어려움(21.1%)’을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언어문제를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연령대가 낮거나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언어문제를 본인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25)</sup>

---

124) 김유경 외 3인, 전계서 187쪽

125) 김승권 외 7인, 전계서 519쪽

[표 71]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생활에서 현재 가장 힘든 점

(단위: %, 명)

| 구분       | 없다   | 외로움  | 가족<br>갈등 | 자녀<br>문제 | 경제<br>문제 | 언어<br>문제 | 문화<br>차이 | 편견<br>차별 | 음식·<br>기후 | 기타  | 계(수)           |
|----------|------|------|----------|----------|----------|----------|----------|----------|-----------|-----|----------------|
| 전체       | 12.5 | 9.9  | 3.5      | 14.2     | 21.1     | 22.5     | 7.0      | 3.4      | 2.4       | 3.5 | 100.0(117,368) |
| 지역       |      |      |          |          |          |          |          |          |           |     |                |
| 동 지역     | 12.7 | 10.3 | 3.0      | 13.8     | 22.5     | 21.0     | 7.0      | 3.8      | 2.3       | 3.6 | 100.0( 82,551) |
| 읍면 지역    | 12.0 | 9.0  | 4.7      | 15.2     | 17.8     | 26.0     | 7.0      | 2.4      | 2.7       | 3.1 | 100.0( 34,817) |
| 연령       |      |      |          |          |          |          |          |          |           |     |                |
| 24세 이하   | 11.7 | 9.2  | 3.6      | 12.6     | 10.8     | 38.3     | 6.2      | 1.9      | 3.5       | 2.2 | 100.0( 24,847) |
| 25~29세   | 10.5 | 11.8 | 3.5      | 15.5     | 16.0     | 26.2     | 7.6      | 3.0      | 3.0       | 3.0 | 100.0( 23,727) |
| 30~34세   | 11.2 | 9.9  | 4.0      | 19.0     | 20.3     | 19.1     | 8.0      | 3.2      | 1.9       | 3.4 | 100.0( 20,718) |
| 35~39세   | 12.5 | 9.6  | 3.5      | 17.8     | 25.0     | 15.3     | 7.3      | 3.8      | 1.8       | 3.6 | 100.0( 19,572) |
| 40~49세   | 14.6 | 9.1  | 3.3      | 10.9     | 29.6     | 15.2     | 6.6      | 4.6      | 1.7       | 4.5 | 100.0( 21,134) |
| 50세 이상   | 19.6 | 9.6  | 2.4      | 2.4      | 40.5     | 6.0      | 5.5      | 5.4      | 2.3       | 6.3 | 100.0( 7,330)  |
| 학력수준     |      |      |          |          |          |          |          |          |           |     |                |
| 초등학교 이하  | 13.4 | 8.2  | 3.9      | 11.2     | 21.5     | 28.2     | 5.2      | 1.9      | 3.3       | 3.2 | 100.0( 9,762)  |
| 중학교      | 12.1 | 9.2  | 2.9      | 12.7     | 21.6     | 27.0     | 5.5      | 3.1      | 2.7       | 3.1 | 100.0( 32,496) |
| 고등학교     | 12.5 | 10.0 | 3.4      | 15.1     | 22.8     | 20.1     | 6.6      | 3.8      | 2.0       | 3.7 | 100.0( 49,730) |
| 대학 이상    | 12.6 | 11.5 | 4.3      | 15.6     | 17.1     | 18.7     | 10.7     | 3.5      | 2.5       | 3.6 | 100.0( 24,294) |
| 혼인상태     |      |      |          |          |          |          |          |          |           |     |                |
| 유배우      | 12.6 | 9.6  | 3.5      | 14.4     | 20.3     | 23.2     | 7.2      | 3.2      | 2.5       | 3.4 | 100.0(111,320) |
| 이혼       | 11.0 | 16.8 | 2.7      | 10.0     | 36.3     | 7.7      | 3.3      | 6.3      | 0.8       | 5.2 | 100.0( 4,295)  |
| 사별       | 10.0 | 16.7 | 2.7      | 12.4     | 38.5     | 6.4      | 2.0      | 4.1      | 1.5       | 5.9 | 100.0( 1,276)  |
| 체류기간     |      |      |          |          |          |          |          |          |           |     |                |
| 1년 미만    | 9.2  | 10.6 | 1.8      | 2.6      | 7.7      | 53.6     | 7.1      | 1.2      | 4.3       | 1.8 | 100.0( 10,784) |
| 1 2년 미만  | 9.6  | 10.2 | 3.2      | 8.4      | 12.8     | 40.3     | 7.7      | 2.0      | 3.5       | 2.3 | 100.0( 15,348) |
| 2 5년 미만  | 12.8 | 10.1 | 3.6      | 14.0     | 19.7     | 22.9     | 7.2      | 3.8      | 2.6       | 3.3 | 100.0( 38,895) |
| 5 10년 미만 | 13.0 | 10.0 | 3.9      | 18.8     | 27.7     | 9.1      | 7.4      | 4.2      | 1.6       | 4.3 | 100.0( 26,413) |
| 10년 이상   | 14.9 | 8.6  | 3.6      | 21.9     | 33.2     | 3.4      | 5.1      | 4.1      | 0.9       | 4.4 | 100.0( 16,042) |
| 귀화신분     |      |      |          |          |          |          |          |          |           |     |                |
| 귀화자      | 12.9 | 10.0 | 3.5      | 21.3     | 30.1     | 7.1      | 5.6      | 4.1      | 1.4       | 4.0 | 100.0( 36,544) |
| 영주자      | 11.9 | 8.4  | 5.0      | 20.6     | 19.9     | 22.0     | 5.4      | 1.5      | 2.1       | 3.2 | 100.0( 4,538)  |
| 외국인      | 12.3 | 10.0 | 3.4      | 10.4     | 16.9     | 29.8     | 7.8      | 3.1      | 2.9       | 3.2 | 100.0( 76,285) |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0)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한국어교육을 들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의 안정된 생활과 우리 사회에 빠른 정착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언어문제 해결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해결하여야 할 선결과제이므로 다문화가족 언어교육의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외에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4) 한국어교육 실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목적인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어교육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결혼이민자 출신 국적에 따른 다양한 한국어교재와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53.6%, 체류기간 1~2년 미만인 경우 40.3%가 언어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고 있으므로 체류기간 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한국어교육기관 이용비율이 낮은 것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확대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현황

최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부처별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부처별로 제각기 추진됨으로써 사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sup>126)</sup> 현재 국무총리실에 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sup>127)</sup> 부처간 사업조정 기능은 미약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복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일자리 제공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유사한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다문화 인식개선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사한 내국인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며,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당연직 위원 12인, 위촉 위원 8인으로 20인으로 구성된다.<sup>128)</sup>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126) 김유경 외 3인,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2008, 31쪽

127)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출입국·체류·귀화에 관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8)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12.17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10년 5월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부처별 사업 중복에 대한 조정을 회의주제로 논의한 적은 없다.

## (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문제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52호<sup>129)</sup>)을 근거로 설치되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sup>130)</sup>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국무총리훈령)을 근거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법에 위반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된다.

<sup>129)</sup> 동 규정은 2009년 9월 11일에 제정되어 2009년 9월 17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sup>130)</sup>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제적)·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별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8조<sup>131)</sup>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를 근거로 제정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운영세칙」을 근거로 구성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sup>132)</sup>,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하위 실무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법적 근거를 달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sup>133)</sup>의 입법 취지를

131)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2)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실무분과위원회의 종류)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실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
3. 국적·영주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
4. 불법체류외국인대책 실무분과위원회

제11조(실무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각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그 소관 분야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하되,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소관 분야의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반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유사한 업무의 중복수행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 (3)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 부처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사업 조정 등을 위하여 정책총괄·조정기관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4개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를 신설하였고, 독일은 관련 부처를 통합하여 “이민과 난민을 위한 연방청”을 신설하여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이민부”가 이민자 시민권, 사회통합 등 다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각부가 고유한 소관 사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 설치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처별 유사사업을 조정하고 부처간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규칙(국무총리훈령)이 아닌 법률(「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유사한 중복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법률에서 직접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다문화 또는 외국인 관련 부처를 신설하여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여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3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별 업무 규정

### (1) 센터별 구분된 업무영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는 센터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중앙센터(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연구 및 정책개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관리,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교실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거점센터는 방문교육지도사 보수교육, 신규센터 사업·운영 지원, 상담 슈퍼비전,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행한다. 셋째, 지역센터는 기본사업(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 취·창업지원, 자조모임, 상담), 특성화사업(이중언어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홍보 등 운영(육아정보나눔터, 멘토링·자원봉사단 운영,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등을 수행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앙센터-거점센터-지역센터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별된다.

[표 7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별 주요 업무

| 중앙센터  | 거점센터   | 지역센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li> <li>- 종사자교육</li> <li>- 전문가양성</li> <li>- 센터 사업관리</li> <li>- 평가</li> <li>- 홍보 및 정보제공</li> </ul> </li> <li>• 이중언어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관리</li> </ul> </li> <li>• 방문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 및 콘텐츠 개발</li> <li>- 방문교육지도사 교육</li> <li>- 방문교육사업 관리 및 평가</li> </ul> </li> <li>•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지도사 교육</li> <li>- 사업 관리 및 평가</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원단 협력사업</li> <li>• 방문교육지도사 보수교육원</li> <li>• 상담 슈퍼비전</li> <li>• 신규센터 사업·운영 지원</li> <li>• 센터 기본·특성화사업 지역별 우수모델 개발 및 보급</li> <li>• 거점지역 내 센터·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li> <li>• 분기별 간담회 개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교육</li> <li>-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li> <li>- 가족상담</li> <li>- 취·창업지원</li> <li>- 자조모임</li> </ul> </li> <li>• 특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언어교실</li> <li>- 언어발달사업</li> <li>- 통번역서비스</li> </ul> </li> <li>• 홍보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정보나눔터</li> <li>- 멘토링, 자원봉사단 등 운영</li> <li>- 다문화인식개선</li> <li>- 협력네트워크 강화</li> <li>- 홍보 및 정보제공</li> </ul> </li> </ul> |

자료: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2010)

## (2) 센터별 업무 법률에서 규정 필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중앙센터-광역센터-지역센터의 센터별 구분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센터(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광역센터(거점센터), 지역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3단계로 구분되는 센터별 업무에 대하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sup>134)</sup>은 센터가 ①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③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④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구별된 업무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법률에서 센터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면 중앙센터와 거점센터의 업무가 중복되어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중앙센터와 거점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업무영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센터 설치에 관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sup>135)</sup>와 제16조<sup>136)</sup>는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업무를 구별하

---

<sup>134)</sup>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여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sup>137)</sup>와 제26조<sup>138)</sup>는 중앙

135) 제15조의2 (중앙자활센터) ①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6)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개정 2006.12.28>)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37) 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 
4. 응급의료관련 연구
  5.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
- 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138)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응급의료지원
  3. 권역안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안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VI. 결 론

2006년 4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sup>139)</sup>이 발표된 후 2010년 현재 8개 부처(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가 30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사업은 유사사업이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으므로 사업효율성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조정하는 기구로 국무총리실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sup>140)</sup>되었으나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 이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52호)을 근거로 설치하여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위배된다.

셋째, 다문화전문인력의 경우 부처별로 양성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문 인력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증가하여 가족해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해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취업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프랑스, 독일 등은 다문화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사업효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관리가 체계적으로

139)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4)

140)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설치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위반되어 설치됨.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유사한 사업수행을 방지하고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것처럼 기금재원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재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업의 경우 센터 상담인력 92.4%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내실 있는 상담사업이 수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되도록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정보육료 지원사업은 소득분위 상위 30%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다문화의 맹점에 가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우선순위가 요구되는 상담사업 또는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를 균등하여 배분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결혼이민자 수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본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열째, 거점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할 경우 매칭(matching)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6개 시도별로 1개씩 거점센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제도는 개별 센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 과제로 나누어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개선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감사원,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2008
- 강주현, “해외 다문화 사회 통합 사례연구: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1권, 2008.
- 곽원섭, “이주민통합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0.
- 김범수,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야마가타현의 다  
문화공생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2007.
- 김상무, “독일 다문화교육정책의 전개”, 교육정책포럼 제196호, 한국교  
육개발원, 2009.
- 김승권 외 7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0.
- 김유경 외 3인,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  
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은정,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일본, 프랑스, 독  
일의 자국어 교육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채복, “독일의 여성이주자정책”, 유럽연구 제27권3호(2009년 겨울),  
2009.
- 박채복, “한국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2008.
- 보건복지부,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2010
- 보건복지부, 『2009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2010

- 양기호, “일본의 다문화거버넌스와 한국에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서울, 2009.
- 이기범, “미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서울, 2009.
- 이용승, “독일의 다문화 가족정책”, 민족연구, 2007.
- 이용승, “다문화주의 정책유형 결정유인 분석: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제8호, 2004.
- 이용승,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진”, 민족연구, 2007.
- 이유진,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정책 레짐에 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권, 서울, 2009.
- 유정석,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현실과 쟁점”, 민족연구, 2008.
-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제 26집제1호, 2009.
- 조현미,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15권4호, 2009.
-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제3호, 2008.
-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2010.
- 통계청, 「2009년 혼인통계 결과」, 2010.

## 부 록

[표 1] 결혼이민자 현황(2009.5 행정안전부)

| 시군구   | 결혼이민자수  | 시군구  | 결혼이민자수 |
|-------|---------|------|--------|
| 합계    | 167,090 |      |        |
| 서울특별시 | 39,275  | 강원도  | 4,188  |
| 종로구   | 824     | 춘천시  | 601    |
| 중구    | 716     | 원주시  | 896    |
| 용산구   | 1,253   | 강릉시  | 381    |
| 성동구   | 1,405   | 동해시  | 149    |
| 광진구   | 1,675   | 태백시  | 108    |
| 동대문구  | 1,629   | 속초시  | 217    |
| 중랑구   | 1,812   | 삼척시  | 159    |
| 성북구   | 1,312   | 홍천군  | 317    |
| 강북구   | 1,330   | 횡성군  | 181    |
| 도봉구   | 1,041   | 영월군  | 129    |
| 노원구   | 1,483   | 평창군  | 164    |
| 은평구   | 1,502   | 정선군  | 188    |
| 서대문구  | 916     | 철원군  | 177    |
| 마포구   | 1,223   | 화천군  | 91     |
| 양천구   | 1,423   | 양구군  | 95     |
| 강서구   | 1,913   | 인제군  | 104    |
| 구로구   | 2,912   | 고성군  | 127    |
| 금천구   | 2,076   | 양양군  | 104    |
| 영등포구  | 4,404   | 충청북도 | 4,927  |
| 동작구   | 1,307   | 청주시  | 1,136  |
| 관악구   | 2,396   | 충주시  | 730    |
| 서초구   | 622     | 제천시  | 415    |
| 강남구   | 850     | 청원군  | 597    |
| 송파구   | 1,583   | 보은군  | 203    |
| 강동구   | 1,668   | 옥천군  | 277    |
| 부산광역시 | 7,526   | 영동군  | 222    |
| 중구    | 154     | 증평군  | 125    |

| 시군구   | 결혼이민자수 | 시군구  | 결혼이민자수 |
|-------|--------|------|--------|
| 서구    | 334    | 진천군  | 377    |
| 동구    | 315    | 괴산군  | 179    |
| 영도구   | 406    | 음성군  | 526    |
| 부산진구  | 832    | 단양군  | 140    |
| 동래구   | 437    | 충청남도 | 8,003  |
| 남구    | 548    | 천안시  | 1,737  |
| 북구    | 658    | 공주시  | 578    |
| 해운대구  | 740    | 보령시  | 475    |
| 사하구   | 912    | 아산시  | 1,006  |
| 금정구   | 442    | 서산시  | 590    |
| 강서구   | 175    | 논산시  | 601    |
| 연제구   | 329    | 계룡시  | 58     |
| 수영구   | 362    | 금산군  | 371    |
| 사상구   | 734    | 연기군  | 320    |
| 기장군   | 148    | 부여군  | 415    |
| 대구광역시 | 4,965  | 서천군  | 204    |
| 중구    | 178    | 청양군  | 147    |
| 동구    | 776    | 홍성군  | 393    |
| 서구    | 715    | 예산군  | 293    |
| 남구    | 349    | 태안군  | 206    |
| 북구    | 813    | 당진군  | 609    |
| 수성구   | 485    | 전라북도 | 6,743  |
| 달서구   | 1,194  | 전주시  | 1,419  |
| 달성군   | 455    | 군산시  | 737    |
| 인천광역시 | 10,486 | 익산시  | 1,172  |
| 중구    | 657    | 정읍시  | 535    |
| 동구    | 331    | 남원시  | 385    |
| 남구    | 1,677  | 김제시  | 446    |
| 연수구   | 633    | 완주군  | 472    |
| 남동구   | 2,059  | 진안군  | 190    |
| 부평구   | 2,202  | 무주군  | 140    |
| 계양구   | 1,072  | 장수군  | 190    |
| 서구    | 1,595  | 임실군  | 217    |
| 강화군   | 232    | 순창군  | 220    |
| 옹진군   | 28     | 고창군  | 318    |

| 시군구   | 결혼이민자수 | 시군구  | 결혼이민자수 |
|-------|--------|------|--------|
| 광주광역시 | 3,267  | 부안군  | 302    |
| 동구    | 227    | 전라남도 | 7,290  |
| 서구    | 576    | 목포시  | 715    |
| 남구    | 395    | 여수시  | 589    |
| 북구    | 1,100  | 순천시  | 698    |
| 광산구   | 969    | 나주시  | 529    |
| 대전광역시 | 3,623  | 광양시  | 370    |
| 동구    | 852    | 담양군  | 256    |
| 중구    | 783    | 곡성군  | 187    |
| 서구    | 899    | 구례군  | 135    |
| 유성구   | 474    | 고흥군  | 345    |
| 대덕구   | 615    | 보성군  | 228    |
| 울산광역시 | 2,950  | 화순군  | 373    |
| 중구    | 663    | 장흥군  | 250    |
| 남구    | 720    | 강진군  | 179    |
| 동구    | 502    | 해남군  | 430    |
| 북구    | 437    | 영암군  | 335    |
| 울주군   | 628    | 무안군  | 287    |
| 경기도   | 44,760 | 함평군  | 278    |
| 수원시   | 3,856  | 영광군  | 240    |
| 성남시   | 3,326  | 장성군  | 238    |
| 고양시   | 2,904  | 완도군  | 216    |
| 부천시   | 3,243  | 진도군  | 195    |
| 안양시   | 1,567  | 신안군  | 217    |
| 안산시   | 5,904  | 경상북도 | 8,057  |
| 용인시   | 1,795  | 포항시  | 1,091  |
| 의정부시  | 1,479  | 경주시  | 853    |
| 남양주시  | 1,721  | 김천시  | 471    |
| 평택시   | 1,972  | 안동시  | 457    |
| 광명시   | 1,095  | 구미시  | 911    |
| 시흥시   | 2,229  | 영주시  | 351    |
| 군포시   | 1,351  | 영천시  | 363    |
| 화성시   | 1,905  | 상주시  | 440    |
| 파주시   | 1,010  | 문경시  | 296    |
| 이천시   | 641    | 경산시  | 622    |

| 시군구  | 결혼이민자수 | 시군구  | 결혼이민자수 |
|------|--------|------|--------|
| 구리시  | 549    | 군위군  | 104    |
| 김포시  | 798    | 의성군  | 262    |
| 포천시  | 1,140  | 청송군  | 129    |
| 광주시  | 1,158  | 영양군  | 86     |
| 안성시  | 801    | 영덕군  | 127    |
| 하남시  | 477    | 청도군  | 174    |
| 의왕시  | 354    | 고령군  | 187    |
| 양주시  | 816    | 성주군  | 244    |
| 오산시  | 674    | 칠곡군  | 316    |
| 여주군  | 442    | 예천군  | 284    |
| 양평군  | 342    | 봉화군  | 148    |
| 동두천시 | 546    | 울진군  | 127    |
| 과천시  | 105    | 울릉군  | 14     |
| 가평군  | 327    | 경상남도 | 9,586  |
| 연천군  | 233    | 창원시  | 1,023  |
| 제주도  | 1,444  | 마산시  | 945    |
| 제주시  | 1,006  | 진주시  | 918    |
| 서귀포시 | 438    | 진해시  | 397    |
|      |        | 통영시  | 466    |
|      |        | 사천시  | 364    |
|      |        | 김해시  | 1,422  |
|      |        | 밀양시  | 385    |
|      |        | 거제시  | 738    |
|      |        | 양산시  | 653    |
|      |        | 의령군  | 129    |
|      |        | 함안군  | 356    |
|      |        | 창녕군  | 272    |
|      |        | 고성군  | 227    |
|      |        | 남해군  | 217    |
|      |        | 하동군  | 195    |
|      |        | 산청군  | 202    |
|      |        | 함양군  | 221    |
|      |        | 거창군  | 237    |
|      |        | 합천군  | 219    |

[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시도   | 센터명  | 주소                                | 연락처                  | 운영형태        |
|------|------|-----------------------------------|----------------------|-------------|
| 서울   | 종로구  |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 02-764-3521,2        | 국비/병합형      |
|      | 용산구  | 용산구 한남2동 728-2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 02-797-9175          | 국비/독립형      |
|      | 광진구  | 광진구 광장동 47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내 3층       | 02-444-5882          | 국비/병합형      |
|      | 동대문구 |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223호        | 02-957-1073          | 국비/독립형      |
|      | 중랑구  | 중랑구 면목8동 51-2 건물 2층               | 02-435-4142          | 국비/병합형      |
|      | 성북구  | 성북구 보문동 5가 14 노동사목회관 5층           | 02-953-0468          | 국비/독립형      |
|      | 강북구  | 강북구 번2동 318 강북웰빙스포츠센터 3층          | 02-945-7381          | 국비/병합형      |
|      | 노원구  | 노원구 공릉동 659-19 4층                 | 02-979-3501          | 국비/병합형      |
|      | 은평구  | 은평구 신사동 26-45 건물 3층               | 02-376-3761          | 국비/병합형      |
|      | 서대문구 | 서대문구 연희동 79-31 예림빌딩 4층            | 02-322-7595          | 국비/병합형      |
|      | 마포구  | 마포구 합정동 388-19                    | 02-3142-5482         | 국비/병합형      |
|      | 강서구  | 강서구 화곡동 1159-4 우장산주민센터 3          | 02-2606-2017         | 국비/병합형      |
|      | 구로구  | 구로구 구로3동 777-22 구 구로3동사무소         | 02-869-0317          | 국비/병합형      |
|      | 금천구  | 금천구 시흥본동 841 시흥본동자치센터             | 02-803-7747          | 국비/병합형      |
|      | 영등포구 | 영등포구 신길1동 동사무소 4층                 | 02-846-5432          | 국비/독립형      |
|      | 부산   | 동작구                               | 동작구 사당2동 1136-1번지 3층 | 02-599-3260 |
| 관악구  |      | 관악구 봉천4동 1571-1 관악구청내             | 02-883-9383,4        | 국비/병합형      |
| 송파구  |      | 송파구 마천동 127-1                     | 02-403-3844          | 국비/독립형      |
| 강동구  |      | 강동구 천호2동 358 천호2동주민센터 5층          | 02-471-0812          | 국비/병합형      |
| 부산진구 |      | 부산진구 전포동 653-14 2층                | 051-817-4313         | 국비/독립형      |
| 남구   |      | 남구 수영로 530 여성회관                   | 051-610-2027         | 국비/독립형      |
| 북구   |      | 북구 효열로 21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층           | 051-330-3472         | 국비/병합형      |
| 해운대구 |      | 해운대구 좌동 1458-2                    | 051-702-8002         | 국비/병합형      |
| 대구   | 사하구  | 사하구 신평동 545-2 1층                  | 051-205-8345         | 국비/독립형      |
|      | 사상구  | 사상구 보수로 795번지 여성문화회관              | 051-320-8344         | 국비/독립형      |
|      | 기장군  | 기장군 기장읍 기장중앙로 208 기장종합사회복지관       | 051-723-0419         | 국비/독립형      |
|      | 동구   | 동구 동호동 358 대구카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 4층 402호 | 053-961-2203         | 국비/독립형      |
|      | 서구   | 서구 월대동 3가 1115-5                  | 053-341-8312         | 국비/독립형      |
|      | 남구   | 남구 대명2동 19-1 2층                   | 053-475-2324         | 국비/독립형      |
|      | 수성구  | 수성구 중동 266-5                      | 053-795-4300         | 국비/병합형      |
| 대구   | 달서구  |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 제2백은관 207-1호     | 053-580-6819         | 국비/독립형      |
|      | 달성군  |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41 3층             | 053-282-4371         | 국비/독립형      |

| 시도 | 센터명  | 주소                                  | 연락처          | 운영형태   |
|----|------|-------------------------------------|--------------|--------|
| 인천 | 중구   | 중구 도원동 28-34                        | 032-881-1094 | 국비/병합형 |
|    | 남구   | 남구 주안5동 22-59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032-875-1577 | 국비/독립형 |
|    | 남동구  | 남동구 만수5동 894-21 2층                  | 032-467-3912 | 국비/독립형 |
|    | 부평구  | 부평구 갈산동 375-1                       | 032-511-1800 | 국비/독립형 |
|    | 계양구  | 계양구 계산동 906-1 3층                    | 032-552-1016 | 국비/독립형 |
|    | 서구   | 서구 공촌동 32-4                         | 032-569-1545 | 국비/병합형 |
|    | 강화군  |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구보건소 3층)          | 032-933-0980 | 국비/독립형 |
| 광주 | 서구   | 서구 양3동 385-20                       | 062-369-0073 | 국비/병합형 |
|    | 북구   | 북구 신안동 237-5 용봉회관 2층                | 062-363-2963 | 국비/독립형 |
|    | 광산구  | 광산구 월곡동 696-10                      | 062-954-8003 | 국비/독립형 |
| 대전 | 유성구  | 유성구 관평동 767번지                       | 042-252-9997 | 국비/독립형 |
|    | 대덕구  | 대덕구 오정동 74-4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관 3층         | 042-639-2664 | 국비/독립형 |
| 울산 | 남구   |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 052-274-3185 | 국비/독립형 |
|    | 동구   | 동구 서부동 582-5번지 미포복지회관 5층            | 052-232-3357 | 국비/독립형 |
|    | 울주군  |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6-3                   | 052-263-6881 | 국비/독립형 |
| 경기 | 수원시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2-1 수원대리구청 1층         | 031-257-8504 | 국비/독립형 |
|    | 성남시  |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61번지 신구대학 평생교육원 302호 | 031-740-1175 | 국비/독립형 |
|    | 고양시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번지 로데오탑 202호        | 031-938-9801 | 국비/독립형 |
|    | 부천시  |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509호       | 032-320-6391 | 국비/독립형 |
|    | 안양시  |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1번지 동안문화관 3층         | 031-389-5705 | 국비/병합형 |
|    | 안산시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늘법조빌딩 3층         | 031-439-2209 | 국비/독립형 |
|    | 용인시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 처인구청 3층            | 031-323-7133 | 국비/독립형 |
|    | 의정부시 |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4번지 경민빌딩 1층            | 031-878-7880 | 국비/독립형 |
|    | 남양주시 | 남양주시 지금동 159-7 남양주시청 제2청사           | 031-590-8214 | 국비/독립형 |
|    | 평택시  |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59-7                    | 031-650-2660 | 국비/독립형 |
|    | 광명시  | 광명시 한솔길 22                          | 02-2615-0453 | 국비/병합형 |
|    | 시흥시  | 시흥시 정왕동 1800-8                      | 031-319-7997 | 국비/독립형 |
|    | 군포시  | 군포시 청백리길 22번지                       | 031-392-1811 | 국비/병합형 |
|    | 화성시  | 화성시 병점동 734번지 4층                    | 031-267-8785 | 국비/병합형 |
|    | 파주시  | 파주시 금촌동 782-49 (신흥대학 파주교육원)         | 031-949-9161 | 국비/병합형 |
|    | 이천시  | 이천시 중리동 187번지 종합복지타운                | 031-637-5525 | 국비/병합형 |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 262 여성회관 1층                 | 031-980-5584 | 국비/병합형 |
|    | 광주시  | 광주시 송정동 115-4                       | 031-798-7141 | 국비/병합형 |

| 시도 | 센터명  | 주소                              | 연락처           | 운영형태   |
|----|------|---------------------------------|---------------|--------|
|    | 안성시  | 안성시 봉남동 349-2 안성종합사회복지관         | 031-677-7191  | 국비/독립형 |
|    | 양주시  | 양주시 남방동 2-22                    | 031-848-5622  | 국비/독립형 |
|    | 오산시  | 오산시 원동 374-5                    | 031-372-1335  | 국비/독립형 |
|    | 여주군  |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현대A상가 3층            | 031-886-0323  | 국비/병합형 |
|    | 동두천시 | 동두천시 지행동 722-1                  | 031-863-3802  | 국비/병합형 |
|    | 가평군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031-580-2204  | 국비/병합형 |
| 강원 | 춘천시  | 춘천시 죽림동 189 브라운가 6동 6303호       | 033-251-8014  | 국비/독립형 |
|    | 원주시  | 원주시 명륜2동 705 명륜종합사회복지관          | 033-765-8135  | 국비/독립형 |
|    | 강릉시  | 강릉시 교1동 1785                    | 033-648-3019  | 국비/독립형 |
|    | 동해시  | 동해시 천곡동 808-1 동해시청 제1별관 1층      | 033-535-8378  | 국비/병합형 |
|    | 속초시  | 속초시 영랑동 234-2                   | 033-638-3523  | 국비/독립형 |
|    | 홍천군  |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1-20              | 033-433-1925  | 국비/독립형 |
|    | 횡성군  |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46                  | 033-344-3459  | 국비/독립형 |
|    | 영월군  | 영월읍 영흥리 896                     | 033-372-4769  | 국비/독립형 |
|    | 평창군  | 평창군 평창읍 하리 113-1번지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 033-330-2086  | 국비/독립형 |
|    | 철원군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710-4              | 033-452-7800  | 국비/독립형 |
|    | 양구군  |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9-7 양구행복나눔센터       | 033-481-8663  | 국비/병합형 |
|    | 인제군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3-1 내설악아파트 상가 1층   | 033-462-3651  | 국비/독립형 |
| 충북 | 청주시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 정우빌딩 3층        | 043-223-5253  | 국비/독립형 |
|    | 충주시  | 충주시 연수동 1454-1                  | 043-856-2253  | 국비/독립형 |
|    | 제천시  | 제천시 교동 90-14                    | 043-643-0050  | 국비/독립형 |
|    | 청원군  |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393-3               | 043-293-8887  | 국비/독립형 |
|    | 보은군  |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43-65 3층           | 043-544-5422  | 국비/독립형 |
|    | 옥천군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다목적회관2층         | 043-733-1915  | 국비/독립형 |
|    | 영동군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88-1               | 043-745-8489  | 국비/독립형 |
|    | 진천군  |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570-1 생거진천종합복지관     | 043-537-5431  | 국비/독립형 |
|    | 괴산군  |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75-2 여성회관 1층       | 043-832-1078  | 국비/독립형 |
| 충남 | 천안시  |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1519 백석대학빌딩 11층    | 070-7733-8305 | 국비/독립형 |
|    | 공주시  | 공주시 중동 321 3층                   | 041-856-0883  | 국비/독립형 |
|    | 아산시  | 아산시 온천동 1626 시청 별관              | 041-540-2972  | 국비/독립형 |
|    | 금산군  | 금산군 금산읍 상리 24-2                 | 041-750-3990  | 국비/독립형 |
|    | 서산시  | 서산시 동문동 207-11번지 5층             | 041-664-2710  | 국비/독립형 |
|    | 부여군  |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92-1 여성문화회관 2층     | 041-835-2480  | 국비/독립형 |

| 시도 | 센터명 | 주소                              | 연락처                               | 운영형태         |
|----|-----|---------------------------------|-----------------------------------|--------------|
|    | 서천군 |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3-35 3층           | 041-953-1911                      | 국비/독립형       |
|    | 청양군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3               | 041-944-2333                      | 국비/독립형       |
|    | 홍성군 |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홍성사회복지관내        | 041-634-7432                      | 국비/독립형       |
|    | 예산군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73번지 3층            | 041-334-1367                      | 국비/독립형       |
| 전북 | 전주시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34-9번지 예스더빌딩 3층  | 063-243-0333                      | 국비/독립형       |
|    | 군산시 | 군산시 신영동 6-30                    | 063-443-0053                      | 국비/독립형       |
|    | 익산시 |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층   | 063-850-6046                      | 국비/독립형       |
|    | 정읍시 | 정읍시 연지동 252-54 여성문화회관           | 063-531-0309                      | 국비/독립형       |
|    | 남원시 | 남원시 동충동 446-3                   | 063-635-5474                      | 국비/독립형       |
|    | 김제시 | 김제시 검산동 1031번지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      | 063-545-8506                      | 국비/독립형       |
|    | 완주군 |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우석대학교 종합관 3층 5310호  | 063-290-1298                      | 국비/독립형       |
|    | 장수군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4 민들레교실         | 063-352-3362                      | 국비/독립형       |
|    | 임실군 |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71-13              | 063-642-1837                      | 국비/독립형       |
|    | 순창군 |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38-6               | 063-653-8180                      | 국비/독립형       |
| 전남 | 고창군 |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09 3층              | 063-561-1366                      | 국비/독립형       |
|    | 여수시 | 여수시 미평동 591-9 여성문화회관            | 061-690-7158                      | 국비/독립형       |
|    | 순천시 | 순천시 저전길 9                       | 061-741-1050                      | 국비/독립형       |
|    | 나주시 | 나주시 이창동 162-6 우리빌딩 4층           | 061-331-0709                      | 국비/독립형       |
|    | 광양시 | 광양시 중동 1318-2 광양시의회청사 4층        | 061-797-6832                      | 국비/독립형       |
|    | 담양군 |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16-1               | 061-380-3655                      | 국비/독립형       |
|    | 곡성군 |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곡성군청 주민생활복지과  | 061-362-5411                      | 국비/독립형       |
|    | 고흥군 |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2                 | 061-832-5399                      | 국비/독립형       |
|    | 화순군 |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43 부영 3차상가 304호    | 061-375-1057                      | 국비/독립형       |
|    | 장흥군 |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1 장흥종합사회복지관 4층    | 061-864-4810                      | 국비/독립형       |
|    | 해남군 | 해남군 해남읍 해리 160-1 번지             | 061-534-0017                      | 국비/독립형       |
|    | 영암군 |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2 한마음회관 2층     | 061-463-2929                      | 국비/독립형       |
|    | 무안군 |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85-1               | 061-452-1813                      | 국비/독립형       |
|    | 함평군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 061-324-5431                      | 국비/독립형       |
|    | 영광군 |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29-4 2층            | 061-353-7997                      | 국비/독립형       |
|    | 장성군 |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388 문화센터내 노인복지회관 1층 | 061-393-5420                      | 국비/독립형       |
|    | 경북  | 포항시                             |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구획 정리지구 4B 1L 여성문화회관 | 054-270-5556 |

| 시<br>도 | 센터명    | 주 소                              | 연락처                 | 운영형태         |
|--------|--------|----------------------------------|---------------------|--------------|
|        | 경주시    | 경주시 사정동 101-7                    | 054-743-0770        | 국비/독립형       |
|        | 김천시    | 김천시 대광동 1000-11 종합사회복지관 2층       | 054-439-8279        | 국비/독립형       |
|        | 안동시    | 안동시 옥동 974 안동종합사회복지관             | 054-853-3111        | 국비/독립형       |
|        | 구미시    | 구미시 형곡동 314-3번지                  | 054-464-0545        | 국비/독립형       |
|        | 영주시    | 영주시 가흥1동 1385 영주가흥종합사회복지관내       | 054-634-5431        | 국비/독립형       |
|        | 영천시    | 영천시 문외동 38-6 대원빌딩 4층 내 우측사무실     | 054-334-2882        | 국비/독립형       |
|        | 상주시    | 상주시 무양동 1-161 상주교회 4층            | 054-535-1341        | 국비/독립형       |
|        | 문경시    |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산6번지 문경대학 내          | 054-554-5591        | 국비/독립형       |
|        | 경산시    | 경산시 서상동 143-8 여성회관               | 053-810-6221        | 국비/독립형       |
|        | 의성군    | 의성군 의성읍 호죽리 502 의성성당내            | 054-832-5440        | 국비/독립형       |
|        | 성주군    |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61-1 성주군문화예술회관내     | 054-931-0537        | 국비/독립형       |
|        | 예천군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64-12 2층             | 054-654-4321        | 국비/독립형       |
|        | 봉화군    |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85 결혼이주여성 전용<br>쉼터내 | 054-679-6192        | 국비/독립형       |
|        | 울진군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3 울진종합복지회관       | 054-789-5411        | 국비/독립형       |
| 경<br>남 | 창원시    | 창원시 용호동 5-3                      | 055-274-8337        | 국비/독립형       |
|        | 마산시    | 마산시 중앙동 3가 4-190 마산YWCA회관        | 055-245-8746        | 국비/독립형       |
|        | 진주시    | 진주시 신안동 419-4                    | 055-749-2325        | 국비/독립형       |
|        | 사천시    | 사천시 동금동 405-6                    | 055-834-1253        | 국비/독립형       |
|        | 김해시    | 김해시 부원동 623-2 구 보건소 2층           | 055-329-6349        | 국비/독립형       |
|        | 밀양시    | 밀양시 가곡동 455 가곡종합사회복지관            | 055-356-8875        | 국비/독립형       |
|        | 거제시    | 거제시 아주동 290 근로자복지회관 2층           | 055-682-4958        | 국비/독립형       |
|        | 양산시    | 양산시 중부동 656-15                   | 055-382-0988        | 국비/독립형       |
|        | 함안군    |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21-1 함안군새마을지회       | 055-583-5430        | 국비/독립형       |
|        | 고성군    |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                | 055-673-1466        | 국비/독립형       |
|        | 남해군    |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60                  | 055-864-6965        | 국비/독립형       |
|        | 함양군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67-4                | 055-962-2013        | 국비/독립형       |
|        | 거창군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83번지                | 055-945-1365        | 국비/독립형       |
|        | 합천군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 055-930-3282        | 국비/독립형       |
|        | 제<br>주 | 제주                               | 제주시 노형동 727 은혜빌딩 6층 | 064-712-1140 |
| 서귀포    |        | 서귀포시 서귀동 298-1                   | 064-762-1141        | 국비/독립형       |

[표 3] 시·도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시<br>도 | 사업명                   | 사업내용                                 | 수행기관         | 2008  | 2009   | 2010  | 2011   |     |
|--------|-----------------------|--------------------------------------|--------------|-------|--------|-------|--------|-----|
| 총 예산   |                       |                                      |              | 5,973 | 14,262 | 9,736 | 10,766 |     |
| 서울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생활정보지 발행<br>(다국어 생활정보 수록)            | 서울시          |       | 100    | 50    | 50     |     |
|        |                       | 다문화정책협의회 운영                          | 서울시          |       |        | 5     | 5      |     |
|        |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        | 80    | 80     |     |
|        |                       | 한국어 특별반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        | 38    | 38     |     |
|        |                       |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 민간단체 공모      |       |        | 245   | 160    | 160 |
|        |                       | 다문화가족지원 홈페이지 운영                      | 서울시건강 가정지원센터 |       |        | 40    | 40     | 40  |
|        |                       | 다문화가족 관련 포럼                          | 서울시          |       |        | 15    |        |     |
|        | 계                     |                                      |              |       | 400    | 373   | 373    |     |
| 부산     | 다문화가족 모국서적 구입         | 다문화가정의 정기적인 모국소식과 시민들의 다문화 이해 활용도모   | 부산시          |       | 20     | 20    | 20     |     |
|        | 어울마당 행사지원             | 다문화가정의 모국 문화 체험 및 교류기회로 자긍심 고취       | 부산시          |       | 8      | 8     | 50     |     |
|        | 다문화가정 대학생 멘토링사업       |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을 통한 다문화 친화적 분위기 조성      | 부산시          |       |        | 4     |        |     |
|        | 다문화정문가 양성 교육비 지원      | 사회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부산시          |       | 5      | 5     |        |     |
|        |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합동결혼식 지원            | 부산시          |       |        | 40    | 40     |     |
|        |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사업          |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        | 부산시          |       |        | 35    | 70     |     |
|        | 다문화가족지원 민간 우수 프로그램 공모 | 다문화가정의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   | 부산시          |       | 28     | 35    | 45     |     |
|        |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운영         |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센터 이용자들에게 대한 정보 공유        | 부산시          |       | 20     | 1     | 5      |     |
| 계      |                       |                                      |              | 81    | 148    | 230   |        |     |
| 대구     | 결혼이민자 방송통신교육 사업       | 방송통신고·통신대 학업 지원 1인당 50만원내 등록금지원      | 대구시          |       |        | 20    | 44     |     |
|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수시책개발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수시책교육 등 수행 센터별 7,500천원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45    | 52     |     |

|    |                       |  |            |      |       |     |     |
|----|-----------------------|--|------------|------|-------|-----|-----|
|    | 다문화가족 사회봉사단 운영        | 센터별로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자 조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10  | 21  |
|    | 다문화가족 신문발행            | 월1회(15일) “무지개세상” 발행  | 매일신문       | 14.4 | 40.8  | 70  | 70  |
|    | 다문화가족 리더스쿨운영          | 다문화여성 리더양성 연26주, 주1회, 3시간 35명                                    | 영남대학교      |      | 76    | 50  | 50  |
|    |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협력 사업       | 교육대생과 문화가족자녀간의 멘토링 사업  | 대구교육대학교    |      |       | 20  | 40  |
|    | 다문화가정 사랑의 책보내기        |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68명  | 매일신문       |      |       | 30  | 30  |
|    |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쌓기        | 다문화가족 인성캠프 문화체험 등  | 대구경북홍익여성연합 | 8    | 6     | 6   | 6   |
|    |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엄마 땀어주기    | 다문화가족 정착과정 방송제작 주1회 10분 방송                                       | 대구방송국      | 38   | 42.7  |     |     |
|    | 지역주민의 다문화이해증진교육 프로그램  | 대학생 다문화교육, 다문화학술제, 지역주민 다문화교육                                    | 경북대학교      | 12.3 |       |     |     |
|    | 계                     |  |            | 72.7 | 165.5 | 251 | 313 |
| 인천 |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 센터 미설치 군구 지원   | 군구         |      | 60    | 34  | 21  |
|    | 다문화가족 상담 및 관리         | 군구 홍보물 제작 및 전달 등   | 군구         |      | 20    | 21  | 22  |
|    | 다문화가족지원자 문 위원 회 운영    | 2009.8.31 구성(10명)  | 시          |      | 0.4   | 4   | 3   |
|    |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멘토링     | 대학생 자원봉사단 구성 및 연계를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서비스(인하대-인천대와 MOU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인하대 인천대    |      | 25    | 50  | 80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 군구         | 16   | 22    | 30  |     |
|    |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 결혼식 미시행 가족 대상  | 시          |      | 118   | 80  | 100 |
|    | 다문화포럼                 | 2010년부터 격년제 운영   | 시          |      | 50    | 20  |     |
|    |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 산모도우미, 다문화강사, 통역도우미 양성, 운전면허 교실 운영                               | 시          |      |       |     | 140 |
|    | 계                     |  |            | 16   | 295.4 | 239 | 366 |

|           |  |  |  |     |     |     |     |
|-----------|--|--|--|-----|-----|-----|-----|
| 광주        | 다문화가족지원 민간단체 및 자치구 지원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취·창업 지원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후)<br>다문화전문가, 다문화지원협의 회개최  | 08-단체 1개소<br>09년~2011년<br>자치구5,단체8<br>개소   | 12  | 82  | 92  | 90  |
|           | 다문화가족인권 보호 및 지원                            | 민관합동특별지원단(20명)과<br>인권지킴이(85명) 운영<br>다문화가족 상담, 의료법률지원 등   | 사)광주범죄<br>피해자지원센<br>터 및 자치구  |     | 18  | 18  | 18  |
|           | 다문화가족행 복장터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 창업, 일자리 창출<br>지원<br>기간:2010.5 ~ 2012.12월<br>장소/규모 : 광주양동시장5개매장<br>- 일본, 중국, 베트남식당<br>- 장신구 및 식자재 판매장                   | 5개소권소사업<br>사.북.광산구다<br>문화,다문화가<br>족지원센터,어<br>울림센터<br>사)다문화네트<br>워크협의회                            |     |     | 210 | 30  |
|           | 이주여성산모 도우미양성파견                             | 결혼이민자대상 이주여성<br>출산도우미 양성파견 - 15명   | 북구다문화가<br>족지원센터<br>(11년 미정)  |     |     | 45  | 100 |
|           | 이주여성원어민 강사취업지원                             | 이주여성 원어민강사 양성 파<br>견 : 20명(어린이집, 지역아동<br>센터 등)   | 호남대다문 화<br>교육센터  |     | 50  |     |     |
|           | 다문화가족실 태조사                                 | 이주여성1,000여명대상, 일반특성<br>경제,생활,가족문제,복지욕구 조사  | 전남대학생활<br>과학연구소  | 18  |     |     |     |
|           | 다 문화 가 족<br>한 마 음 축 제<br>(11년부터 축<br>제 통합) | 다문화가족, 시민 등 1,000여명<br>참석<br>민속경연, 의료봉사, 무료전화 등  | 사) 광주 범 죄<br>피해자지원센터   | 22  | 25  | 25  |     |
|           | 다문화가족인 식전환홍보                               | 안내책자제작배포, 영상물 배포<br>방송캠페인 전개 등   | 광주MBC,<br>KBC방송<br>명성광고  | 27  | 18  | 18  | 20  |
|           | 이주여성광주 알기프로그램 운영                           | 이주여성 광주문화 체험 관람<br>지원  | 미정   |     |     |     | 10  |
|           | 자녀학습 능력 증진지원                               | 기초학습 강사 및 학습지 지원   | 미정   |     |     |     | 74  |
|           |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 건강요구도조사, 관리, 암검진<br>지원   | 자치구, 전남<br>대산학협력단  |     | 150 | 140 | 90  |
|           | 계  |  |  | 79  | 343 | 548 | 432 |
|           | 대전   | 다문화가족 축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별 음식축제, 가요경연, 무료진료, 국것취득 및 사업기관안내, 가족문제 상담 등</li> </ul> | 대전시 | 19  |     |     |
| 다문화가족 워크숍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응 사례발표 후 우수사례<br/>고국방문비용지원(5명/각 300만원)</li> <li>정책포럼(다문화정책 활성화<br/>화방안)</li> </ul> | 대전시  |     | 0.5 |     |     |

|                      |  |                |                    |      |       |       |     |
|----------------------|--|----------------|--------------------|------|-------|-------|-----|
| 다문화가족 축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별 음식축제, 가요경연, 무료진료, 국것취득 및 사업기관안내, 가족문제 상담 등</li> </ul> | 대전시            |                    |      | 19    | 19    |     |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br>위촉위원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별 음식축제, 가요경연, 무료진료, 국것취득 및</li> </ul>                   | 대전시            |                    | 0.96 | 0.96  | 0.96  |     |
| 다문화가족상담실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 중국어 상담용원 배치 = 2명(지방시간제 계약직 라급)</li> </ul>             | 대전시            |                    |      | 31    | 31    |     |
| 계                    |  |                | 19                 | 1.01 | 50.96 | 50.96 |     |
| 울산                   | 센터개소   | 울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22   | 12    | 20    |     |
|                      | 한글교육, 문화체험   | 울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16   |       |       |     |
|                      | 차량운영비 지원   | 울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12    | 16    |     |
|                      | 다문화가족캠프  | 울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4     |     |
|                      | 한국문화학교운영   | 한글, 문화 교실      |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      | 12    | 34    | 34  |
|                      | 어울림 한마당 행사   | 다문화가족 행사       |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      | 12    | 18    | 18  |
|                      | 다문화체험 및 친정가족초청   | 문화체험, 친정가족초청   |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      |       |       | 25  |
|                      | 한국어 교육   | 한국어 방문교육       | 희망을나누는집, 동구다문화복지센터 |      |       | 24    | 24  |
|                      | 한국요리교실   | 명절음식 등 기초요리    |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19    |     |
|                      | 다문화가족우수 프로그램지원   | 공모를 통한 지원      | 민간단체               |      | 20    | 20    | 20  |
|                      | 방문교육지도사 정책연수   | 선진지 견학         |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20    |     |
|                      | 다문화전문강사 양성   | 이민자를 통한 사회인식개선 |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15    | 15  |
|                      | 다문화가족 교육   | 배우자, 시부모 교육    |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4     | 10    | 10  |
|                      | 다문화사회통합분위기조성   | 다문화인식개선        | 울산 문화방송            |      | 150   | 150   | 150 |
|                      | 한국어 강사 양성교육  | 한국어강사 국어교육     |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20    | 20  |
|                      | 다문화가족 문화프로그램   | 자녀 음악프로그램      |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10    | 10    | 10  |
|                      | 자녀 공부방 운영  | 학습지원           |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20    | 40  |
|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사업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   |       |       |     |
|                      | 계  |                |                    | 20   | 246   | 384   | 406 |

|    |                          |  |                     |     |       |       |       |
|----|--------------------------|--|---------------------|-----|-------|-------|-------|
|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연계  | 전문직업 훈련기관           | 50  | 100   | 136   | 136   |
|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국내 조기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실시 수준별 학습을 위한 보조강사 배치 국적별 학습교재 제작                    |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등 | 846 | 916   | 718   | 718   |
|    |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노후에 따른 개보수 등 지원을 통한 입소자의 생활환경 개선 도모                                     | 이주여성보호 시설           |     |       | 33    | 33    |
|    | 결혼이민자 소식지제작              |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소개, 생활법률 상식, 한글의료상담기관 등 국내정책에 필요한 정보제공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5개 국어 발간 | 평택대학교               | 50  | 50    | 50    | 50    |
| 경기 | 다문화가족 부부워크숍              | 관계와 소통, 다문화 이해, 부부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웃음학강의, 체험활동을 통한 갈등 해결상담 등            | 평택대학교               |     |       | 50    | 40    |
|    |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 개선사업        | 권역별 및 대상별 실시(외국인 주민 수 및 공단지역을 고려하여 지역별 실시) 독일광부, 간호사의 실증 사례를 통한 역지사지 관점 함양         | 시흥시 외국인 주민센터        |     |       | 50    |       |
|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 구입          |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습교재 구입   | 자체                  |     |       | 39    | 39    |
|    | 다문화가족 한마당                |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퀴즈대회, 정보제공 부스 등  | 경희대학교               | 30  |       | 25    | 30    |
|    | 다문화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       | 이중언어대회, 기 경연대회, 다문화 한가족 걷기대회 등   | 석 프로젝트              |     |       | 200   |       |
|    | 계                        |  |                     | 976 | 1,066 | 1,301 | 1,046 |
| 강원 |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모국 방문비 지원  | 18개 시군              | 20  | 25    | 25    | 17    |
|    | 결혼이민자가족 강·열·한 이웃 사촌결연 지원 | 이웃사촌결연 프로젝트 시행으로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  | 18개 시군              |     | 54    | 11    | 11    |
|    | 방과후 외국어 양성 과정 교육         | 여성결혼이민자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한 방과후 외국어 교사 활동 양성  | 18개 시군              |     | 20    | 18    | 15    |
|    | 다문화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구축 등  | 도분청                 |     | 5     | 4     | 3     |

|           |   |  |                    |       |       |       |       |
|-----------|---|--|--------------------|-------|-------|-------|-------|
|           | 계   |  |                    | 20    | 104   | 58    | 46    |
| 충북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도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소 운영비 지원                              | 도시군(센터)            | 1,140 | 150   | 120   | 210   |
|           | 취창업 프로그램운영  | 이주여성 지역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 도시군(센터)            |       | 50    |       | 120   |
|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이주여성의 취창업 능력 제고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 1/2지원                     | 도시군(센터)            |       |       | 49    | 49    |
|           | 한국어교재구입   | 교육용 교재구입   | 도시군(센터)            |       | 29    | 15    | 25    |
|           | 다문화소식지 발간   | 다문화 종합매거진 제작 배포  | 도시군(센터)            |       |       | 12    | 15    |
|           | 실무자연수   | 공무원 및 센터 종사자 워크숍                                       | 도시군(센터)            | 10    | 10    | 10    | 10    |
|           |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 다문화가족 문화 인식개선 및 전통문화 접목 한마음 축제                         | 도시군(센터)            | 10    | 12    | 12    | 12    |
|           | 다문화가족 부부연수  | 모범부부 가족교육 등 워크숍  | 도시군(센터)            | 5     | 7     | 7     | 7     |
|           | 다문화 체험교실  |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강좌 운영                              | 도시군(센터)            | 10    | 10    | 10    | 10    |
| 계         |   |  | 1,175              | 268   | 235   | 458   |       |
| 충남        |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 부부·고부간 교실운영, 한글·전통문화·요리교실, 우리문화체험 및 이해, 고충 상담, 합동결혼식 등 | 16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1,000 | 1,000 |       |       |
|           |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사업 등 추진                            | 16 시군              | 80    | 80    |       |       |
|           | 쌍방향언어문화 교육 운영   | 결혼이민자 부부와 가족들이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 제공              | 여성정책개발원, 선문대학교     | 60    | 30    |       |       |
|           | 다문화어울림 사업 (행복가꾸기,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쌍방향 언어문화교육 운영 통합)                     | 요리강습, 운전면허 취득지원,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점 추진        | 16 시군              |       |       | 1,190 | 1,370 |
|           | 다문화축제   |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위한 화합 한마당                                  | 대전TJB,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 79    | 50    |       |       |
| 다문화 활성화사업 | 다문화 한국어강사 교육, 사회서비스 종사자 다문화 업무능력 배양, 센터장 및 종사자 워크숍 개최, 결혼이주여성 리더 양성 등 | 충남여성 정책개발원   |                    | 50    | 39    | 90    |       |

|    |                     |   |                |       |       |       |                |
|----|---------------------|---|----------------|-------|-------|-------|----------------|
|    | 생활길잡이 책자발간          | 다문화 한국어강사 교육, 사회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 업무능력 배양, 센터장 및 종사자 워크숍 개최, 결혼이주여성 리더 양성 등                | 충남여성 정책개발원     |       | 31    |       |                |
|    | 다문화이해 DVD 제작        | 프로덕션  |                |       | 20    |       |                |
|    | 다문화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다문화 포털 사이트 운영   | 충남여성 정책개발원     |       | 85    | 30    | 30             |
|    | 계                   |   |                | 1,219 | 1,346 | 1,259 | 1,490          |
| 전북 | 지원센터종사자 워크숍         |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한 정보공유 및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연 2~3회)   | 전라북도           |       | 35    | 24    | 20             |
|    | 다문화가족지원 협의체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기구 운영   | 전라북도           |       | 10    | 10    | 10             |
|    |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재 지원    | 한국어 방문교육 및 집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한국어 교재 추가 보급   | 전라북도           |       | 20    | 18    | 20             |
|    | 결혼이주여성 무료건강검진       |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검진 지원   | 도 및 시군         |       | 219   | 74    | 70             |
|    | 센터 통역요원 양성·활용       |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결혼이민자를 통역요원으로 양성하여 전문통역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 지원(센터당 5명씩 14개소)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 61    | 56    | (관련 국비 사업과 통합) |
|    | 다문화가족 차별과 편견 해소 캠페인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홍보   | JTV 전주방송       |       | 30    |       |                |
|    | 다문화인식제고 기획특집 제작     | 이주여성 출신국 현지 결혼중개 실태 취재 홍보 및 지원협약 체결   | 기자협회           |       | 20    |       |                |
|    |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 운영   |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월례회의 운영비 지원                                    |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 |       | 3     | 3     | 5              |
|    |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 다문화가족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별 문화체험 및 장기자랑 등 가족간의 화합의 장 개최                                      |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 |       | 30    | 27    | 30             |
|    | 다문화 포럼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시책 발굴을 위해 학계전문가와 다문화가족 현장활동가가 함께 포럼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4개 분과 47명) | 전북발전 연구원       |       |       | 20    | 30             |

|     |                    |  |                  |     |     |     |     |
|-----|--------------------|--|------------------|-----|-----|-----|-----|
|     | 이주여성 국제 운송비 지원     | 고유 명절을 전후하여 이주여성 이 모국 친정에 선물을 보낼 때 소요되는 국제운송비를 지원                                | 지원센터 및 지역우체국     |     |     | 132 | 205 |
|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      | 이주여성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이들의 특성을 활용한 직업 교육을 실시(직업훈련비 지원/4개월간)                            | 전문 훈련기관          |     |     |     | 120 |
|     | 외국인주민 정보제공사업       | 이주여성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해 생활정보 및 지원정책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정보지를 제작하여 도내 전체 이주여성에게 제공 | 전북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협의회 |     |     |     | 42  |
|     | 계                  |  |                  |     | 428 | 364 | 552 |
| 전 남 |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 국어교육  | 이주여성 본국에서 입양한 아동 한국어교육   | 시군               |     |     | 20  | 20  |
|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 요금 지원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70% 지원  | 시군               | 106 | 271 | 271 | 271 |
|     | 다문화가정 배우자교육        | 다문화가정 남편 교육  | 도                |     | 8   | 8   | 8   |
|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 국제결혼 관련법규 교육 및 상담 등  | 도                |     |     | 8   | 8   |
|     | 다문화대축제             | 유공자 시상, 민속춤 경연, 어울 마당 등  | 도                | 30  | 30  | 25  |     |
|     | 다문화가족 온라인요리강좌      | 6개 국어로 요리방법 제공 등   | 영암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 36  | 40  |     |
|     | 다문화가정 부부공동체 훈련     | 국제결혼 부부교육 및 자녀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 10  | 10  | 10  |
|     | 계                  |  |                  | 136 | 355 | 382 | 317 |
| 경 북 |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재발간      |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재 발급   | 도자체              | 10  | 10  | 10  | 10  |
|     | 결혼이민여성 상담기능강화      | 여성긴급전화1366에 결혼이민 여성을 상담원으로 채용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 여성긴급전화 1366      | 30  | 30  | 30  | 30  |
|     | 열린다문화 정책포럼         | 다문화가족지원방안 및 정책대안모색을 위한 포럼개최  | 여성정책개발원          |     | 15  | 15  | 15  |
|     | 국제결혼중개업종사자교육       |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여성긴급전화 1366      | 10  | 5   | 5   | 5   |
|     | 다문화가족어울림한마당        | 인식개선 및 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과 도민의 어울림한마당  | 안동시다 문화센터        | 100 | 50  | 30  | 30  |
|     | 다문화음식 문화축제         |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각국 음식과 문화체험 마당 개최   | 구미시다 문화센터        | 20  |     | 30  | 30  |

|                             |  |               |     |     |     |     |
|-----------------------------|--|---------------|-----|-----|-----|-----|
| 다 문화 가 족<br>소식지발행           | 결혼이민여성에게 필요한 정보<br>제공을 위한 소식지발행 배포         | 매일신문          |     | 96  | 140 | 140 |
| 다문화가족 지<br>원실무 추진협<br>의회 운영 | 다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br>관련기관실무추진협의회 운영           | 구미시다 문화<br>센터 | 10  | 10  | 30  | 30  |
| 농촌결혼이민<br>여 성 농 업 인<br>가족캠프 | 농촌다문화가족과 농업인이 함<br>께하는 가족캠프                | 한국여성농업<br>인협회 | 80  | 40  | 30  | 30  |
| 결혼이민여성<br>우리말공부방<br>운영      | 센터와 방문교육 수혜를 받지<br>못하는 이주여성들에게 집합교<br>육 실시 | 시군            | 720 | 800 | 800 | 800 |
| 다문화 저소득<br>초등학생자녀<br>학습지원   | 다문화초등학생자녀의 기초학습<br>및 인성지도를 위한 교육지원         | 시군            |     | 120 | 120 | 120 |
| 결혼이민여성<br>교육지원              |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br>한 학위취득지원                | 도자체           |     |     | 30  | 30  |
| 다문화가족정<br>책모니터운영            | 도 다문화사업의 평가와 발전<br>방향 모색을 위한 모니터운영         | 구미시다 문화<br>센터 |     |     | 5   | 5   |
| 다 문 화 가 족<br>인식개선사업         | 도민에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br>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운영         | TBC 방송국       |     |     | 50  | 50  |
| 다 문 화 가 족<br>복지시설 종<br>사자수당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종사자들의<br>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 시군            |     |     | 72  | 100 |
| 다문화가족맞<br>춤형취업지원            | 결혼이민여성의 욕구에 맞는<br>취업교육 실시                  | 시군            |     |     | 100 | 100 |
| 원어민 유학생<br>다문화가족자<br>녀교육지원  | 원어민유학생이 다문화자녀에<br>게 엄마나라 언어와 문화교육<br>실시    | 한동대학교         |     |     | 10  | 10  |
| 다문화가족<br>미취학자녀<br>한글학습지원    | 전문방문학습지 교사가 미취학<br>자녀에게 한글학습 실시            | 시군            |     |     | 108 | 108 |
| 다문화가족지<br>원 센 터 운 영<br>(자체) | 국비다문화센터가 없는 시군에<br>지방비 다문화센터 운영            | 시군            |     |     | 70  | 280 |
| 다문화가족<br>방문지도사<br>유류비지원     | 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 유류비<br>지원                       | 시군            |     |     | 140 | 180 |
| 다문화가족지<br>원기금출연금            |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정된 사<br>업비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 도자체           |     |     | 240 | 240 |
| 다문화가족자녀<br>이중언어대회           | 다문화가족자녀의 이중언어역량<br>개발을 위한 이중언어대회개최         | 구미시다 문화<br>센터 |     | 20  | 20  | 20  |
| 다문화가족방<br>문지도사역량<br>강화사업    | 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 역량강<br>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 구미시다 문화<br>센터 |     | 30  | 30  | 40  |

|    |                          |   |            |       |       |         |         |
|----|--------------------------|---|------------|-------|-------|---------|---------|
|    | 다문화가족자녀 온라인 멘토링교육        | 교육소외지역 다문화자녀와 대학생간 온라인 멘토링 교육실시                   | 영남대학교      |       |       | 35      | 35      |
|    | 다문화가족 행정인턴채용             | 결혼이민여성을 도행정인턴으로 채용                                | 도자체        |       | 10    | 24      |         |
|    | 다문화가족자녀 독서지도교육           | 다문화가족자녀에게 도서지도 교육실시                               | 매일신문       |       |       | 40      |         |
|    | 다문화국제 심포지엄               |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대회개최                    | 대구교육대      |       | 150   |         |         |
|    | 결혼이민여성 상해보험지원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 LIG 보험회사   | 100   | 100   |         |         |
|    | 다문화가족미취학자녀지원<br>결연대학생활동비 | 다문화미취학자녀와 대학생 결연을 위한 활동비                          | 시군         | 60    | 65    |         |         |
|    |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사업 추진         |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사업                                     | 시군         | 100   | 110   |         |         |
|    | 결혼이민여성 쉼터                | 피해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쉼터 운영                               | 죽향 쉼터      | 50    | 120   |         |         |
|    | 폭력피해이주 여성보호시설 기자재구입      | 피해 결혼이민여성보호시설 기자재 구입                              | 죽향 쉼터      |       | 20    |         |         |
|    | 다문화가족자녀교육용 가이드북발간        |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을 위한 가이드 북 발간                   | 대구교육대      |       | 30    |         |         |
|    | 다문화가정주거환경개선사업            | 취약한 다문화가정의 화장실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 공동모금회      |       | 120   |         |         |
|    | 다문화가족자녀놀이방설치지원           | 다문화가족자녀를 위한 놀이방 설치                                | 경주시        |       | 100   |         |         |
|    | 계                        |   |            | 1,290 | 2,051 | 2,214.4 | 2,438.8 |
| 경남 | 다문화가족복지지원사업              | 시군별 다문화가족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 전 시군       | 200   | 200   | 200     | 200     |
|    |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관계유지     | 여성자원봉사자와 결혼이민자 1:1 결연을 통해 친정어머니 역할 부여로 한국생활 적응 지원 | 전 시군       | 184   | 100   | 100     | 100     |
|    |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교사 양성     | 결혼이민자 자녀에게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기 위한 교사 양성                  | (사)창원여성의전화 | 10    | 10    | 10      | 10      |
|    |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강사수당 지원   | 한국어교사가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교육시 수당 지원                       | 전 시군       | 130   | 144   | 180     | 325     |

|                         |   |  |  |       |       |       |    |
|-------------------------|---|--|--|-------|-------|-------|----|
|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       | 우수한 결혼이민자를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고자 강사 양성                            | 전문교육기관 위탁  | 50   | 60    | 60    | 60    |    |
|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     | 결혼이민자를 원어민 강사로 양성후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하여 수당 지원                   | 전 시군   | 237  | 326   | 463   | 598   |    |
| 다문화가족 행복한 가정 추진 사업      |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워크숍, 취업 박람회 등 개최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착 지원      |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25   | 60    | 60    | 60    |    |
|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턴채용 |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으로 채용하여 센터 업무 보조 수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개소   |  |       | 151   | 154   |    |
| 제3회 경남 다문화가족 한마당 대축제 개최 |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한마당 대축제 실시로 도민 화합 도모                |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00  | 200   | 202   | 200   |    |
| 경상남도 이동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군지역에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가족복지 사각 해소         |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190   | 200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200천원/인·월), 명절격려수당(100천원/인·연2회)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개소   |  |       | 118   | 177   |    |
| 결혼이주여성 대형할인매장 취업        | 저학력 결혼이민자를 할인매장 등에 5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원으로 채용 장려            | 전 시군   |  |       | 150   |       |    |
| 계                       |   |  | 936  | 1,100 | 1,884 | 2,084 |    |
| 제주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와 하나되기 위한 만남의 장 결혼이민자 건강체력 만들기 가족 및 부부상담 워크숍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다문화가정 체육대회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 국제가정문화원,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다문화가정제주특별자치도협회, 국제가정문화원 | 4.5   | 5     | 20    | 50 |
|                         | 다문화가정부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ME프로그램  | 월드와이드 매리지앤카운터 제주협의회                          | 10    |       |       |    |
|                         | 중간입국 및 학교이탈자녀 교육지원  | 중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 교육지원  |  |       |       |       | 40 |
|                         | 다문화가정문화 역사 언어 교육지원  | 다문화가정 문화역사 언어교육 지원   |  |       |       |       | 30 |

|                           |                               |                   |      |    |    |     |
|---------------------------|-------------------------------|-------------------|------|----|----|-----|
| 다 문화 가족<br>사회통합 프<br>로그래  | 어린이집 방문 다문화교육<br>다문화아카데미교실 운영 | 다문화가정센<br>터 외 1개소 |      | 2  | 7  | 20  |
| 다문화가정과<br>자매결연추진          | 다문화가정과 자생단체간 자매<br>결연 멘토사업 추진 | 읍면동               |      |    |    | 24  |
| 다문화가족지<br>원사업             | 일상생활교육, 부부교육, 가족<br>문화체험 등    | 서귀포종합사<br>회복지관    |      | 18 |    |     |
| 다 문 화 가 족<br>세미나 등        |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14 |    |     |
| 결혼이민자요<br>리교실, 자녀<br>문화체험 |                               |                   |      |    | 18 |     |
| 계                         |                               |                   | 14.5 | 39 | 45 | 164 |

[표 4]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시<br>도 | 사업명                  | 사업내용                        | 수행기관         | 2008  | 2009   | 2010   | 2011   |
|--------|----------------------|-----------------------------|--------------|-------|--------|--------|--------|
| 총 예산액  |                      |                             |              | 4,593 | 10,999 | 12,739 | 16,698 |
| 서울     | 다문화 가정지원             | 한국어교육 및 방과 후 학교<br>교육활동 지원  | 초·중등학교       | 480   | 907    | 907    | 820    |
|        |                      | 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 초·중등학교       | 21    | 21     | 21     | 135    |
|        |                      | 장학자료 발간 보급                  | 교육청          | 48    | 51     | 33     | 27     |
|        |                      | 한국문화체험캠프(초·중)               | 교육청          | 37    | 83     | 80     | 134    |
|        |                      | 다문화가정 어울마당(초)               | 교육청          | 26    | 26     | 26     | 40     |
|        |                      | 한국어반 운영                     | 초등학교         | 80    | 120    | 125    | 150    |
|        |                      | 지역교육청 연수 지원                 | 지역청          | 33    | 33     | 33     | 0      |
|        |                      | 교원 연수 지원                    | 교육청          | 6     | 6      | 6      | 17     |
|        | 이중언어 교수요원 배치         | 교육청                         | 200          | 670   | 1,005  | 2,136  |        |
| 계      |                      |                             | 931          | 1,917 | 2,236  | 3,459  |        |
| 부산     | 장학자료발간               | 다문화이해교육지원 장학자료<br>개발        | 시교육청         | 5     | 8.7    | 13     | 13     |
|        | 한국어교실 및<br>문화체험활동    | 한국어교실 운영 및 문화체험<br>활동       | 단위학교         | 50    | 50     | 50     | 98.6   |
|        | 다문화교육센터<br>지원        | 다문화교육센터 2기관 운영<br>지원        | 다문화교육센<br>터  | 15    | 15     | 30     | 30     |
|        | 대학생멘토링 활<br>동지원      | 대학생 1:1 멘토링                 | 다문화교육센<br>터  | 270   | 447.5  | 840    | 921    |
|        | 문화체험 프로그<br>램 및 캠프운영 | 토요문화체험 및 어울림 캠프             | 다문화교육센<br>터  | 42    | 157.5  | 217    | 235.6  |
|        | 미인가대안 학교<br>지원       | 아시아공동체학교 방과후활동<br>지원        | 아시아공동체<br>학교 | 5     | 5      | 5      | 5      |
|        | 교사연수운영               | 초·중등교사 다문화이해직무연<br>수 운영     | 대학           |       |        | 116.4  | 116.4  |
|        | 다문화교육 거점<br>학교운영지원   | 거점학교운영 지원                   | 단위학교         |       |        | 20     | 30     |
|        | 다문화교육이해<br>교실운영지원    | 이해교실 운영 지원                  | 단위학교         |       |        | 25     | 40     |
|        | 다문화교육연구<br>학교 운영지원   | 연구학교 1교 운영 지원(연중)           | 단위학교         | 10    | 10     | 10     | 10     |
|        | 기초학력신장드<br>림교실운영     | 담임교사 1:1 학습지도 및 생<br>활상담    | 단위학교         |       | 700    | 488    | 488    |
|        | 찾아가는 연수<br>운영        | 학교방문 다문화이해 교사 연<br>수        | 시교육청         |       |        | 10.6   | 12.6   |
|        | 다문화이해순회<br>교육 운영     | 국제결혼가정 학부모 강사활<br>용 다문화이해교육 | 민간단체         |       | 4.5    | 9      | 30     |

|    |                     |   |                                      |       |         |       |         |
|----|---------------------|---|--------------------------------------|-------|---------|-------|---------|
|    | 교과연구회 지원            | 다문화연구회 연구비 지원   | 연구회                                  | 2.2   |         |       |         |
|    | 사이버연수 콘텐츠 개발        | 다문화이해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외부기관                                 | 37.8  |         |       |         |
|    | 다문화가정 지원 교육모듈 개발    | 다문화가정학생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교사 매뉴얼 개발  | 동아대학교                                |       | 23.4    |       |         |
|    | 다문화이해 교육 워크숍운영      | 다문화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원 워크숍 운영   | 시교육청                                 | 9.2   |         |       |         |
|    | 한국문화이해 도서구입         | 한국문화이해를 돕는 도서구입배부(다문화가정학생)  | 시교육청                                 |       | 9.5     |       |         |
|    |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프로그램운영   | 다문화가정학생 생활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시교육청                                 | 4.5   |         |       |         |
|    | 계                   |   |                                      | 450.7 | 1,431.1 | 1,834 | 2,021.2 |
| 대구 | 연구학교운영              | 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 시교육청                                 | 5     | 10      | 32    | 40      |
|    | 거점학교운영              | 시교육청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 시교육청                                 |       | 15      | 15    | 60      |
|    | 다문화교육 연수            | 다문화이해 교육 연수 학생, 학부모, 교원   | 시교육청                                 |       | 2       | 24    | 104     |
|    | 다문화교육 지원 협력 네트워크 운영 | 다문화 홈페이지 구축·운영<br>다문화 유관기관 협의체 조직·운영  | 시교육청                                 |       | 3       | 5     | 9       |
|    | 장학자료 개발·보급          | 다문화교육 관련 장학자료 개발·보급   | 시교육청                                 |       | 7       | 10    | 80      |
|    | 다문화 캠프·페스티벌 운영      | 거점학교 중심 다문화 캠프 운영<br>다문화 페스티벌 개최  | 시교육청                                 |       | 1       | 37    | 36      |
|    | 다문화교육 활성화 사업        | 다문화이해교육<br>다문화가정 학생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시교육청                                 |       | 90      | 90    | 90      |
|    |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 1:1 대학생 멘토링제<br>온라인 대학생 멘토링제  | 시교육청                                 |       |         |       | 83      |
|    | 계                   |   |                                      | 5     | 128     | 213   | 502     |
| 인천 | 다문화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운영<br>지역교육청별 연합 체험활동<br>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br>다문화교육 연구회 운영<br>지역별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중심학교<br>거점학교<br>연구학교<br>연구회<br>지역교육청 | 80    | 194     | 244   | 267     |
|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 대학생 멘토링 지원<br>다문화 이중언어 캠프 운영  | 경인교대학<br>인하대                         |       |         | 70    | 70      |

|                 |  |                         |         |      |       |      |      |
|-----------------|--|-------------------------|---------|------|-------|------|------|
| 다문화교육 연수        | 다문화교육 관리자 연수<br>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연수<br>다문화교육 직무연수                | 본청<br>본청<br>경인교대<br>인하대 | 3       | 3    | 45    | 45   |      |
| 다문화학부모 자원봉사단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상담 및 가족결연 등 중심학교 운영을 돕는 학부모 봉사단 운영           | 본청                      | 5       | 6    | 4     | 5    |      |
| 통역도우미 자원봉사단운영   | 통역도우미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및 교육 활동(38명)                | 본청 및<br>거점학교            |         |      | 2     |      |      |
| 무지개가족결연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 및 문화 교류                          | 본청 및<br>거점학교            |         |      | 3     |      |      |
| 다문화교육우수 사례발표대회  |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지원,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일반화 | 본청                      |         | 2    | 2     | 2    |      |
| 다문화교육학생 체험수기공모전 | 다문화가정 학생 및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체험 수기 공모                          | 본청                      |         | 2    | 1     | 1    |      |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집발간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및 학생 체험수기를 책자로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부(500부)              | 본청                      |         | 4    | 3     | 4    |      |
| 다문화교육 지도자료 발간   |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자료 개발 보급 : 무지개 예비초등학교 운영 길라잡이(2010)             | 본청                      | 7       | 7    | 5     | 14   |      |
| 다문화교육 사이버지원센터운영 | 다문화교육 홈페이지 운영  | 본청                      |         | 3    | 8     | 10   |      |
| 유관기관 연계         | 인친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협의회 운영                                       | 본청                      |         | 2    | 6     | 8    |      |
| 다문화교육 동영상제작     | 다문화사회 이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배부                            | 본청 및<br>연구회             |         | 3    |       |      |      |
| 계               |  |                         | 95      | 226  | 393   | 426  |      |
| 광주              | 다문화 가정자녀 교육지원  | 다문화중심학교운영지원             | 교육청/지역청 | 50   | 120.5 | 134  | 52   |
|                 |  | 다문화연구학교지원               | 교육청/지역청 | 21.8 |       |      |      |
|                 |  | 다문화겨울방학 캠프운영            | 교육청/학교  |      | 20    | 20   |      |
|                 |  | 다문화거점학교지원               | 교육청/학교  |      | 15    |      |      |
|                 |  |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향상지원        | 교육청     |      | 48    |      |      |
|                 |  | 다문화이해교육도서구입비지원          | 교육청/학교  |      | 28    |      |      |
|                 |  | 다문화가정학생멘토링지원            | 교육청/학교  |      |       | 20   | 50   |
|                 |  | 다문화가정자녀지원교재개발           | 교육청     | 240  | 133.9 | 92.3 | 89.4 |
|                 |  | 다문화교육강사지원               | 교육청/학교  |      | 48    |      | 120  |
|                 |  | 다문화학부모연수                | 교육청     | 0.86 | 11.26 |      | 1.23 |

|         |                 |                                       |          |        |        |        |      |
|---------|-----------------|---------------------------------------|----------|--------|--------|--------|------|
|         |                 | 다문화홈페이지운영                             | 교육청      | 1.11   | 0.72   | 0.72   | 0.72 |
| 다문화이해교육 |                 | 다문화가정자녀지원 지역사회연계사업지원                  | 교육청      | 40     | 50     | 160    | 25   |
|         |                 | 새날학교지원(다문화학생교육)                       | 교육청      |        | 50     | 50     | 50   |
|         |                 | 다문화교육대토론회                             | 교육청      |        |        |        | 10   |
|         |                 | 다문화사업학부모상담지원                          | 교육청      |        |        |        | 19.2 |
|         |                 | 다문화연구회지원                              | 교육청      |        | 10     | 10     | 10   |
|         |                 | 다문화가정장학금지원                            | 교육청      |        |        |        | 50   |
|         |                 | 다문화가정자녀담임교사연수                         | 교육청      | 0.89   | 15.56  | 4.46   | 3.24 |
|         |                 | 다문화관련교사직무연수                           | 교육청/위탁기관 |        | 12     | 34.6   | 20   |
|         |                 | 일곱빛깔무지개청소년축제                          | 교육청/청소년  |        |        |        | 50   |
| 계       |                 |                                       | 354.67   | 562.94 | 526.08 | 550.79 |      |
| 대전      | 다문화교육센터운영       | 권역별 다문화교육센터운영                         | 대전광역시교육청 | 50     | 200    | 200    | 200  |
|         | 거점학교운영          | 다문화가정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거점학교 운영          | 대전광역시교육청 |        | 36     | 36     | 36   |
|         | 다문화교육실천 발표대회    | 다문화교육우수사례공모 및 발표대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 5.9    | 5.9    | 5      | 4.4  |
|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운영 | 다문화이해 교육(교실운영)                        | 대전광역시교육청 |        | 10     | 15     | 15   |
|         | [2+2+2행복문화만들기]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과 함께 어울리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 대전광역시교육청 |        |        | 100    | 100  |
|         | 다문화교육워크숍        | 교사 및 관리직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워크숍              | 대전광역시교육청 |        |        | 0.88   | 0.4  |
|         | 대학생 멘토링         | 다문화가정학생을 위한 학력 증진 대학생 멘토링             | 대전광역시교육청 |        |        |        | 16   |
|         | 다문화연구학교지원       |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                           | 대전광역시교육청 |        | 24     | 8      | 16   |
|         |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지원   | 다문화가정학생을 위한 방과 후 이중언어교육               | 대전광역시교육청 |        |        |        | 65   |
|         | 다문화교육전문요원연수     | 전문가 교원 직무연수                           | 대전광역시교육청 |        |        |        | 10   |
|         | 학습지도용교재개발       | 다문화이해교육자료 개발                          | 대전광역시교육청 | 15     |        |        |      |
|         | 거점학교 컨설팅 지원     | 거점학교 운영 컨설팅 지원                        | 대전광역시교육청 |        |        |        | 1    |
|         | 다문화교육지원용역사업     | 다문화교육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을 통한 다문화교육 정책발전 방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        |        | 20     |      |

|        |                          |  |                                 |      |       |         |         |
|--------|--------------------------|--|---------------------------------|------|-------|---------|---------|
|        | 탈북주민<br>학력인정<br>심의위원회    | 탈북주민 학력인정심의  | 대 전 광 역 시<br>교육청                |      | 2.9   | 1.8     | 1       |
|        | 탈북학생 멘토링<br>운영           |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br>운영(대학생 및 교사)   | 대 전 광 역 시<br>교육청                |      | 18    | 22.5    | 30      |
|        | 후견인제                     | 탈북학생 지원  | 대 전 광 역 시<br>교육청                |      |       | 15      |         |
|        | 청소년캠프운영                  | 탈북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운영  | 대 전 광 역 시<br>교육청                |      |       | 6       | 6       |
|        | 상담프로그램운영                 | 탈북학생 1:1상담프로그램운영   | 대 전 광 역 시<br>교육청                |      |       |         | 15      |
|        | 계                        |  |                                 | 70.9 | 296.8 | 430.18  | 515.8   |
| 울<br>산 | 교육지원                     | 다문화이해교육연수<br>다문화교육지원팀 운영<br>연구학교 운영<br>다문화교육거점유치원운영<br>(2009부터)                                  | 본청/지역교<br>육지원청<br>학교 및 유 치<br>원 | 23   | 34    | 41      | 30      |
|        | 자료 개발 및 보급               | 한국어교재개발<br>홍보자료개발보급  | 본청                              | 43   | 9     | 9       | 3       |
|        | 체험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캠프<br>우리문화탐방<br>국제이해체험교육장 설치 및<br>운영(2009부터)  | 본청<br>학교                        | 18   | 72    | 79      | 31      |
|        | 학력향상지원                   | 거점학교 운영<br>방과 후 학습 - 학급교실 운영<br>외국인문화교실  | 본청<br>학교                        |      | 42    | 80      | 80      |
|        | 계                        |  |                                 | 84   | 157   | 209     | 144     |
| 경<br>기 | 외국인 근로자<br>자녀 특별학급<br>운영 |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br>운영<br>다문화가정 학부모 활용 이<br>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 도교육청<br>경인교대                    | 94   | 57    | 412     | 1,116   |
|        | 다문화이해 교육<br>직무연수         | 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br>초·중·고등학교 관리자 다문<br>화교육 연수   | 도교육청<br>경인교대<br>경기대<br>신흥대      | 212  | 100   | 80      | 96      |
|        | 다문화 체험수기                 | 다문화체험수기 공모전 실시   | 도교육청                            | 60   | 47.1  | 22.6    | 22.8    |
|        | 다문화 교육센터<br>운영           |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br>등 7~10개 프로그램 운영   | 경기대<br>신흥대                      | 90   | 300   | 190     | 190     |
|        | 오색 다문화공동<br>체학교 운영       | 오색 다문화공동체 운영<br>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br>적용 지도<br>다문화학생(가정)일반학생(가<br>정) 상호 멘토링<br>다문화교육 사례중심 장학자<br>료 개발 | 각급학교                            | 0    | 306   | 306     | 375     |
|        | 계                        |  |                                 | 456  | 810.1 | 1,010.6 | 1,730.8 |

|        |                   |  |           |    |     |     |     |
|--------|-------------------|--|-----------|----|-----|-----|-----|
| 강<br>연 | 지역청별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가정 학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초학력, 문화체험, 캠프 등) | 17개 지역교육청 | 34 | 17  | 34  | 64  |
|        | 학교생활 적응교재 개발 보급   |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 적응교재 개발 보급                         | 도교육청      |    |     |     | 30  |
|        | 다문화가정 우리 문화 체험    | 사임당교육원 1박 2일 우리 문화 체험 과정(총 80명 기별 40명)           | 사임당교육원    | 6  | 6   | 6   | 34  |
|        | 다문화가정 학부모 안내자료 발간 | 다문화가정 학부모 활용 안내 자료 발간 보급                         | 도교육청      | 10 |     | 10  | 30  |
|        | 다문화가족 사랑 워크숍      | 다문화가족 사랑 야외활동 및 계입(120가족)                        | 3개 지역교육청  |    | 12  | 12  | 17  |
|        | 다문화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지원                  | 17개 지역교육청 |    | 6   | 17  | 17  |
|        |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 도교육청      |    | 10  | 10  | 116 |
|        | 다문화교육 우수 사례 발표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                                    | 도교육청      |    | 5   | 5   |     |
|        | 다문화교육 중심 학교 운영 지원 |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운영 지원(초등학교)                           | 초등학교      |    | 38  | 116 |     |
|        | 대학생멘토링            | 춘천교생-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 춘천교대      |    |     | 20  |     |
| 계      |                   |  | 50        | 94 | 210 | 308 |     |
| 추<br>진 |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료 지원  | 초·중·고 462교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료 지원                      | 각급 학교     |    | 46  |     |     |
|        | 한국어 기초능력 향상 도서 보급 | 초등 다문화 학생 기초 한국어 도서 1,200부 구입·보급                 | 지역교육청     |    | 12  |     |     |
|        |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 지역 11개 교육청 다문화 학부모 다국어 교육상담 코너 운영                | 지역교육청     |    | 7   | 13  |     |
|        | 다문화 이해 동영상 자료 제작  | 다문화 이해 교육용 애니메이션 개발·보급                           | 충북교육청     |    | 11  | 10  |     |
|        | 방학중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 초등 다문화 학생 150명 기초 부진 과목 집중 학습 지원                 | 각급 학교     |    |     | 30  | 30  |
|        | 재혼 동반 입국 자녀 교육지원  | 부모 재혼 동반 입국 자녀 15명 한국어·교과 학습 지원                  | 각급 학교     |    |     | 18  | 18  |
|        | 다문화·일인가정 공동 문화체험  | 다문화가정 학생 10명 이상 재학 18교 체험학습비 지원                  | 각급 학교     |    |     | 36  | 36  |
|        | 다국어 교육 소식지 발간     | 다국어(일, 중, 영, 베트남어) 교육 소식지(계간지) 발간·보급             | 충북교육청     |    |     | 19  | 31  |
|        | 다문화 교육 홈페이지 개발·운영 | 다문화 다국어(일, 중, 영, 베트남어) 홈페이지(mc.cbe.go.kr) 운영     | 충북교육청     |    | 10  | 4   | 4   |

|    |                      |   |         |    |       |       |       |
|----|----------------------|---|---------|----|-------|-------|-------|
|    |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센터 운영     | 결혼이주여성 60명 초·중·고급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운영        | 충북교육청   |    | 10    | 10    | 19    |
|    | 찾아가는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 다문화가정 상담 및 학습지원 1:1 멘토링 운영              | 각급 학교   |    | 125   | 195   | 277   |
|    | 다문화 체험 수기 공모전        | 초·중등 별 학생 22명 시상, 작품집 600부 발간·보급        | 충북교육청   |    | 7     | 7     | 7     |
|    | 다문화 이해교육 연구학교 운영     | 다문화 이해 교육 연구학교 운영('09년 2교, '10~'11년 5교) | 각급학교    |    | 16    | 40    | 40    |
|    | 지도 우수사례 발표대회         | 다문화 교육 우수 교직원 12명 시상, 작품집 600부 발간·보급    | 충북교육청   |    | 9     | 8     | 8     |
|    | 지도교사 연수              | 지도교사교감 900여명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연수            | 충북교육청   | 4  | 7     | 6     | 7     |
|    | 지도자료 발간              | 교사 다문화 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                    | 충북교육청   | 6  | 7     | 6     | 6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비(보조금) 지원               | 충북교육청   | 55 | 55    | 55    | 55    |
|    | 계                    |   |         | 65 | 322   | 457   | 538   |
| 충남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교생활 안내자료를 7개 국어로 개발                    | 충청남도교육청 | 10 | 9     | 13    | 15    |
|    | 다문화가정 교사용 지도자료 개발·보급 | 다문화 이해 교육자료                             | 충청남도교육청 | 10 | 10    | 10    | 10    |
|    | 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반 운영   | 한글 이해를 위한 능력별 개별지도                      | 충청남도교육청 | 50 | 90    | 90    | 90    |
|    | 농산어촌 한글선생님           | 한글이해교육                                  | 충청남도교육청 |    | 1,410 | 1,066 | 1,200 |
|    | 사랑의 한글 배움터 운영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한국어 특별 보충                   | 충청남도교육청 | 25 | 100   | 50    | 50    |
|    |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 학력증진 지도                        | 충청남도교육청 | 40 | 75    | 25    | 25    |
|    | 찾아가는 교사 봉사 동아리       | 다문화가정 학생 방문 지도                          | 충청남도교육청 | 30 |       |       |       |
|    | 학부모 문화 사랑방 운영        | 다문화가정 및 마을 방문 지도                        | 충청남도교육청 | 45 | 25    | 25    | 25    |
|    | 에듀스 충남 사이버스쿨 운영      | 학력증진 사이버스쿨                              | 충청남도교육청 |    |       |       |       |
|    | 다문화 학생멘토링제 운영        | 학생지도를 위한 멘토링제 운영                        | 충청남도교육청 |    |       |       |       |
|    | 지역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다문화가정 지원                                | 충청남도교육청 | 45 | 35    | 120   | 120   |

|     |                       |                                      |          |       |       |       |       |
|-----|-----------------------|--------------------------------------|----------|-------|-------|-------|-------|
|     | 우리는 하나로 형제·자매 프로그램운영  | 또래학생 결연 공동체 의식 함양                    | 충청남도 교육청 | 25    | 20    |       |       |
|     | 우리문화 이해교육             | 한국문화, 풍습 이해                          | 충청남도 교육청 | 10    | 149   | 69    | 100   |
|     | 글로벌 행복교실              | 다문화가정 지원                             | 충청남도 교육청 | 10    |       |       |       |
|     |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연수과정 편성·운영 | 다문화 이해교육과정                           | 충청남도 교육청 |       |       | 30    | 30    |
|     | 다문화 우수사례 발표           | 다문화교육활동 우수 사례                        | 충청남도 교육청 |       | 4     | 6     | 6     |
|     | 다문화이해 공동 캠페인          | 다문화 이해를 위한 캠페인 전개                    | 충청남도 교육청 |       | 40    | 40    | 40    |
|     | 다문화가정 지원 MOU          | 대전mbc, 국제로타리 3620지구 다문화 가정 지원 mou 체결 | 충청남도 교육청 |       |       |       |       |
|     | 다문화 가정 학부모 컴퓨터교실 운영   | 컴퓨터사용능력 함양                           | 충청남도 교육청 | 45    |       |       |       |
|     | 학습준비물 지원              | 학습준비물 지원                             | 충청남도 교육청 |       | 3     | 75    | 75    |
|     | 계                     |                                      |          | 345   | 1970  | 1619  | 1786  |
| 전 북 | 다문화가정 교육지원강화          | 다문화가정교육 전담실운영                        | 전라북도 교육청 | 19    | 19    | 16    | 11    |
|     |                       | 다문화가정 사랑방운영                          | 전라북도 교육청 | 255   | 255   | 255   | 255   |
|     |                       | 다문화가정 연구학교지원                         | 전라북도 교육청 | 5     | 5     | 10    | 5     |
|     |                       | 다문화가정 초등학교신입생 장학금지급                  | 전라북도 교육청 | 63    | 63    | 70    | 120   |
|     | 다문화가정 수기공모            | 수기집발간                                | 전라북도 교육청 | 5     | 5     | 5     | 0.7   |
|     |                       | 공모당선자시상                              | 전라북도 교육청 | 5     | 5     | 5     | 4.5   |
|     | 다문화가정지도 우수실천 사례집 발간   | 우수사례집발간                              | 전라북도 교육청 | 5     | 5     | 5     | 0.5   |
|     |                       | 지도교사표창                               | 전라북도 교육청 | 0.5   | 0.5   | 0.5   | 0.5   |
|     | 다문화 이해교재발간            | 자료개발                                 | 전라북도 교육청 | 8.6   | 8.6   | 8.6   | 8.6   |
|     |                       | 신입생 입학 전 안내 자료제작보급                   | 전라북도 교육청 | 6     | 6     | 6     | 6     |
|     | 계                     |                                      |          | 372.1 | 372.1 | 381.1 | 411.8 |

|        |                                    |  |               |      |       |       |       |
|--------|------------------------------------|--|---------------|------|-------|-------|-------|
| 전<br>남 | 다문화교육 특설<br>반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무학년제로 한글반, 학습 보충반, 한국문화 체험반, 다국적 문화 이해 상담활동, 결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br>초등학교 |      | 110   | 110   | 110   |
|        | 다문화가정 우리<br>말 교실                   |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말 학습, 기초 수학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 교육지원청<br>초등학교 | 82.5 | 82.5  | 82.5  | 82.5  |
|        | 다문화 학부모<br>모국 문화 교실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강사로 임용하여 모국문화를 일반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육시킴  | 교육지원청<br>초등학교 | 26.5 | 109.1 | 109.1 | 109.1 |
|        | 다문화가정 캠프<br>운영                     | 방학기간중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캠프활동을 실시하고 일반 및 다문화 학부모의 자녀 교육관련 정보 습득 및 공유 지원                    | 교육지원청<br>초등학교 | 33   | 112.2 | 112.2 | 112.2 |
|        | 다문화 가정 상<br>담 활동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글, 정보화 교육 등 가족단위 학습 지원하는 프로그램  | 교육지원청<br>초등학교 |      |       |       | 44    |
|        | 다문화 이해교육<br>교원 연찬회                 | 다문화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연찬회를 통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제고                                       | 도교육청          |      |       | 46    | 47.4  |
|        | 다문화교육연구<br>학교 운영 지원                | 다문화 교육의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                                     | 도교육청          | 15   | 13    | 13    | 20    |
|        | 교사, 강사를 활<br>용한 다문화가정<br>학생 멘토링 지원 | 교사 및 강사를 활용하여 방과 후,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 교육지원청<br>초등학교 |      |       |       | 136.5 |
|        | 대학생을 활용한<br>다문화가정 학생<br>멘토링 지원     | 광주교대와 연계하여 교육대학교 재학생을 활용하여 방학(여름·겨울)기간동안 다문화 학생 상담 및 지원                                | 도교육청          |      |       |       | 37    |
|        | 다문화 이해교육<br>장학자료 개발 보급             | 다문화 관련 자료 개발 보급으로 일선 학교 지원   | 도교육청          |      |       | 12    | 12    |
|        | 다문화 교육 담당<br>자 국외체험연수              | 초, 중등 다문화 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선진시 연수를 통한 전문성 함양                                      | 도교육청          |      | 68    | 68    | 105   |
|        | 다문화 유아교육                           | 유치원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문해교육, 기초셈하기 능력 함양  | 교육지원청<br>유치원  | 5    | 5     | 5     | 5     |
|        | 계                                  |  |               | 157  | 494.8 | 552.8 | 815.7 |

|    |                    |  |                   |         |       |         |       |
|----|--------------------|--|-------------------|---------|-------|---------|-------|
| 경북 | 교원 직무연수            |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여비<br>지역교육청 자체 연수                       | 도 및 지역<br>교육청     |         | 46    | 134     | 134   |
|    | 연구학교 운영비           | 도지정 다문화교육 연구학교<br>운영비 지원                           | 학교                | 200     | 220   | 220     | 220   |
|    | 다문화교육 워크숍          | 지도 방향 설정 및 토의                                      | 도교육청              |         | 15    | 17.3    | 19    |
|    | 1:1 맞춤형 멘<br>토링    | 다문화 학생 개별 지도                                       | 학교                | 5.3     | 119   | 201     | 237   |
|    | 지원협의회              | 다문화교육정책추진협의회                                       | 도교육청              |         | 150   | 2       | 2     |
|    | 우수사례 발표회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발표회                                      | 도교육청              |         | 2.9   | 4.8     | 4.8   |
|    | 장학자료 개발            | 다문화교육 장학자료 개발<br>학부모용 지도 자료 개발<br>다문화교육 자료 보급      | 도 및 연구원           | 1.4     | 59    | 229     | 229   |
|    | 다숨이가족 캠프           | 캠프 및 문화 체험   | 도교육청              | 3.5     | 47    | 49.9    | 62    |
|    | 다숨이사랑방 운영          | 다문화 가정 상담 및 지도                                     | 학교                | 600     | 600   | 600     | 400   |
|    | 상담지원네트워크           |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지원                                     | 학교                |         | 137   | 208     | 208   |
|    | 체험학습               | 전통문화 체험학습  | 지역교육청             |         |       | 105     | 105   |
|    | 시범교육청운영            | 다문화교육 시범교육청  | 지역교육청             |         | 61    | 61      | 61    |
|    | 다숨이학교 운영           | 다문화교육 선도적 실천                                       | 학교                |         | 115   | 115     | 115   |
|    | 다문화교육지원<br>센터      | 다문화가족 학생, 학부모 지원<br>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br>가족상담 및 생활적응 지원 | 지역교육청             |         | 150   | 20      | 243   |
|    | '다시모' 동아리<br>조직·운영 | 다문화가족 자생적 동아리<br>조직·운영<br>동아리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 지역교육청,<br>학교, 학부모 |         |       |         | 200   |
| 계  |                    |  | 810.2             | 1,721.9 | 2,125 | 2,239.8 |       |
| 경남 | 지역중심학교 운영          | 다문화 이해교육   | 해당학교              | 60      | 60    | 60      | 60    |
|    | 자료개발               | 신입생학부모 길라잡이  | 도교육청              | 30      | 30    | 30      | 280   |
|    | 방문교사제 운영           | 학력 및 특기적성 신장                                       | 해당학교              | 40      | 60    | 60      | 370   |
|    | 어울마당운영             | 자아정체감 형성   | 도교육청              | 62      | 60    | 60      | 111   |
|    | 담당자 연수             | 다문화 이해교육   | 도 및 지역<br>교육청     | 35      | 15    | 34      | 80    |
|    | 사례집 발간 보급          | 다문화 교육 우수 사례                                       | 도교육청              | 15      | 12    | 12      | 30    |
|    | 탈북학생 지원            | 학력심의 및 어울마당  | 도교육청              |         | 1     | 1       | 44    |
|    | 이해교실 운영            | 학부모 한국어교실  | 해당학교              |         | 100   | 100     | 100   |
|    | 부모나라 체험            | 동남아 위주의 체험   | 도교육청              |         |       | 80      | 80    |
|    | 계                  |  |                   | 242     | 338   | 437     | 1,155 |

|                  |                                      |                                      |                            |       |       |      |      |
|------------------|--------------------------------------|--------------------------------------|----------------------------|-------|-------|------|------|
| 제주               | 다문화가정이해교육 세미나 개최                     | 다문화국제이해교육 연찬회 개최                     | 도교육청                       | 7.2   | 5.82  | 5.42 | 5.51 |
|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자료개발                     | 다문화가정자녀교육자료 개발(2종)                   | 도교육청                       | 37.75 |       |      |      |
|                  | 제주외국인근로자 문화학교운영                      | 다문화가정자녀 방과 후 교육 강사료 지원               |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 20    |       |      |      |
|                  |                                      |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자료 개발                    |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 5     |       |      |      |
|                  |                                      | 다문화관련행사지원                            |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 5     |       |      |      |
|                  |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공모사업                     |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관련기관보조                     | 국제가족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10    |       |      |      |
|                  | 다문화가족 초청의 날 행사                       | 다문화가정자녀기념품, 다문화가족 초청의 날 만찬, 초빙강사수당 등 | 도교육청                       | 14.45 |       |      |      |
|                  | 다문화관련 업무추진여비                         | 다문화관련 업무추진여비                         | 도교육청                       | 3.9   | 4.8   | 3.42 | 4.26 |
|                  |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추진                        | 다문화 교육관련 업무추진                        | 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 1.2   | 1.2   | 1.4  | 1.7  |
|                  |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자료개발                      | 제주 전통문화 이해자료(영어, 일본어)개발·보급           | 도교육청                       |       | 24.95 |      |      |
|                  |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공모사업                     |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관련기관보조                     | 서부사회종합복지관, 서귀포이주민센터        |       | 20.5  |      |      |
|                  | 수준별보충프로그램 지원                         | 한국어 수준별 보충프로그램 지원                    | 도교육청                       |       | 1     |      |      |
|                  | 다문화체험교실 운영                           | 다문화체험교실운영(5개팀)                       | 제주이주민센터                    |       | 15    |      |      |
|                  | 다문화교육연구회지원                           | 다문화교육연구회지원                           | 제주다문화교육협의회                 |       | 2     | 2    | 2    |
|                  |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사업                      | 다문화가정자녀멘토링사업 (초 71교, 멘토 100명)        | 도교육청                       |       | 32    |      |      |
| 즐거운 다문화가족 한마당    | 다문화가족한마당개최                           | 제주시교육지원청                             |                            |       | 5.99  | 5.99 |      |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자료개발 | 제주 전통문화 이해자료(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합본) 개발·보급 | 도교육청                                 |                            |       | 16.5  | 10   |      |

|                  |                               |                  |       |        |        |       |
|------------------|-------------------------------|------------------|-------|--------|--------|-------|
|                  | 다문화사례집 발간                     | 도교육청             |       |        | 4.52   | 4.67  |
| 다문화교육우수 사례발표대회   | 다문화교육우수사례발표대회                 | 도교육청             |       |        | 1.77   | 1.77  |
| 다문화교육교원 직무연수     | 다문화교육직무연수위탁교육비(교원 40명 60시간연수) | 도교육청             |       |        | 21.54  | 21.54 |
|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공모사업 |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관련기관보조              | 국제가족문화원, 제주외국인쉼터 |       |        | 20.15  | 20.15 |
| 다문화체험교실 운영       | 다문화체험교실운영                     | 제주다문화가정센터        |       |        | 15     | 15    |
| 탈북학생 멘토링 운영      | 탈북학생멘토링 운영                    | 도교육청             |       |        | 6.6    |       |
| 다문화교육 자문 교수검토수당  |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자문교수 운영     | 도교육청             | 0     | 0      | 1      | 1     |
| 계                |                               |                  | 104.5 | 107.27 | 105.31 | 93.59 |

[표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창업지원 연계실적

| 센터  | 취·창업교육 실시과목                           | 교육 인원   | 연계 인원 | 연계과목    | 취업처      |                          |
|-----|---------------------------------------|---|-------|---------|----------|--------------------------|
| 서울  | 동대문구                                  | 기초소양, 정보화, 다문화강사양성, 원어민강사양성                                   | 91    | 3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초등학교               |
|     |                                       |   |       | 2       | 원어민강사    | 어린이집, 초등학교               |
|     |                                       |   |       | 12      | 콜센터상담원양성 | 동대문구센터 [해피콜센터]           |
|     | 성북구                                   | 컴퓨터자격증, 쉼트, 산후도우미양성   | 67    | 10      | 산후도우미    | 닥터맘                      |
|     | 영등포구                                  | 다문화강사양성, 운전면허자격증, 통번역서비스, 요리교실                                | 126   | 31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린이도서관       |
| 동작구 | 기초소양, 명품한국어, 산모도우미양성, 한식조리            | 90  | 2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                          |
| 부산  | 남구                                    | 기초소양, 정보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능교육, 취업상담 및 연계                         | 147   | 0       |          |                          |
|     | 사하구                                   | 기초소양, 컴퓨터, POP, 비즈공예  | 34    | 0       |          |                          |
|     | 사상구                                   | 기초소양, 정보화   | 122   | 0       |          |                          |
|     | 기장군                                   | 기초소양, 이미용(헤어)   | 16    | 0       |          |                          |
| 대구  | 서구                                    | 기초소양, 검정고시, 공인한국어능력시험준비, 컴퓨터, 제과·제빵, 직장체험, 미디어, 운전면허자격증       | 111   | 1       | 제과제빵     | 제과점                      |
|     |                                       |   |       | 5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
|     | 남구                                    | 정보화   | 77    | 0       |          |                          |
|     | 달서구                                   | 기초소양, 영어지도사양성, 다문화홍보교사양성, 원어민강사양성, 다언어(영어)교육, 바리스타양성, 중국어교사양성 | 125   | 20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
| 달성군 | 기초소양, 간병사양성, 조리기술과정, 베이비시터양성, 상시취창업지원 | 44  | 0     | 11      | 중국어강사양성  | 중국어학원, 방과후교실, 복지관, 달서구센터 |
| 인천  | 남구                                    | 기초소양, 컴퓨터, 취업연계, 다문화강사뱅크                                      | 60    | 17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
|     | 계양구                                   | 정보화   | 27    | 0       |          |                          |
|     | 강화군                                   | 기초소양, 컴퓨터, 취창업연계  | 14    | 0       |          |                          |
| 광주  | 북구                                    | 기초소양, 베이커리, 컴퓨터, 통번역, 취업 연계 및 안내                              | 83    | 11      | 통번역      | 전남대병원, 북구센터              |
|     | 광산구                                   | 컴퓨터, 기초영어, 내일아트, 원어민강사양성, 다문화의식주컨텐츠                           | 115   | 0       |          |                          |

| 센터 | 취·창업교육 실시과목             | 교육<br>인원  | 연계<br>인원 | 연계과목           | 취업처                |            |
|----|-------------------------|---|----------|----------------|--------------------|------------|
| 대전 | 중구(유성구)<br>수공예강좌, 영상미디어 | 22  | 3        | 수공예강좌          | 한국수공예협회            |            |
|    | 대덕구                     | 밸리댄스, 컴퓨터, 다문화강<br>사양성  | 23       | 9              | 다문화강사양성            | 초등학교       |
| 울산 | 남구                      | 220   | 30       | 국적별공연다양성       | 축제및기관요청공연          |            |
|    |                         |   | 20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초등학교,<br>유치원 |            |
|    | 울주군                     | 컴퓨터, 리본공예, 용접, 제<br>과제빵, 홈패션, 네일아트                                | 118      | 0              |                    |            |
|    | 수원시                     | 컴퓨터, 한지공예, 비즈공예   | 70       | 0              |                    |            |
|    | 성남시                     | 기초소양, 여성취업박람회, 다<br>문화알리미, 다문화강사양성                                | 60       | 18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유치원  |
|    | 고양시                     | 202   | 13       | 다문화강사양성        | 유치원, 초중고           |            |
|    |                         |   | 7        | 원어민동화구연<br>지도사 | 도서관                |            |
|    | 부천시                     | 정보화, 다문화강사양성  | 34       | 0              |                    |            |
| 경기 | 안산시                     | 87  | 11       | 원어민영어지도사       | 어린이집               |            |
|    |                         |   | 6        | 양재전문가          | 한복연구실,<br>안산YWCA양재 |            |
|    | 용인시                     | 기초소양, 정보화, 운전면허,<br>네일아트  | 54       | 1              | 네일아트               | 네일아트숍      |
|    | 의정부시                    | 기초소양, 통번역사양성, 취<br>업정보제공, IT, 취업연계                                | 47       | 0              |                    |            |
|    | 남양주시                    | 기초소양, 이중언어강사양성,<br>컴퓨터자격증, 다문화강사양성                                | 77       | 15             | 다문화강사양성            | 유치원, 초등학교  |
|    | 평택시                     | 미술치료, 비즈, 쿼트교실,<br>풍선아트   | 41       | 0              |                    |            |
|    | 안성시                     | 정보화, 네일아트   | 37       | 0              |                    |            |
| 강원 | 춘천시                     | 정보화, 화훼장식사양성,<br>DIY인형만들기, 동화책만들<br>기, 네일아트, 다문화강사양<br>성, 운전면허자격증 | 128      | 0              |                    |            |
|    | 원주시                     | 운전면허자격증, 웰빙‘떡’만<br>들기, 다문화강사조직, 비즈<br>공예, 취업연계                    | 70       | 5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초등학교 |
|    | 강릉시                     | 정보화, 홈패션  | 27       | 0              |                    |            |
|    | 속초시                     | 운전면허자격증, 비즈, 압화<br>공예   | 38       | 0              |                    |            |

| 센터  | 취창업교육 실시과목 | 교육 인원  | 연계 인원 | 연계과목 | 취업처     |                       |
|-----|------------|--|-------|------|---------|-----------------------|
| 충청  | 홍천군        | 기초소양, 컴퓨터, 취·창업해어, 한국어강사양성, 수공예, 다문화강사양성, 관내기업통번역양성, 홍천다문화영화제영상대학교기초교육 | 67    | 5    | 다문화강사양성 | 초등학교, 어린이집            |
|     |            |  |       | 2    | 통번역사양성  | 보건소                   |
|     | 횡성군        | 기초소양, 이용교육   | 32    | 0    |         |                       |
|     | 평창군        | 운전면허자격증  | 36    | 0    |         |                       |
|     | 인제군        | 기초소양, 정보화, 에어로빅  | 43    | 0    |         |                       |
| 충북  | 청주시        | 창업교육, 취·창업자연계  | 79    | 0    |         |                       |
|     | 충주시        | 기초소양, 운전면허자격증, 봉제, 캐릭터만화그리기, 피부미용, 취·창업전문기관방문(노동부)                     | 86    | 10   | 봉제      | 충주센터 봉제공장             |
|     |            |  |       | 2    | 피부미용    | 미용실                   |
|     | 제천시        | 기초소양, 정보화, 오토바이면허자격증, 다문화강사양성, 이미용                                     | 66    | 12   | 다문화강사양성 | 도서관, 문화의집, 어린이집, 초등학교 |
|     |            |  |       | 1    | 이미용     | 미용실                   |
|     | 보은군        | 기초소양, 다문화강사양성, 다문화동화구연   | 46    | 4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
|     | 옥천군        | 산모도우미보수, 한지공예, 다문화강사보수, 폴리머클레이, 정보화, 운전면허자격증                           | 70    | 1    | 산모도우미   | YWCA-산모도우미            |
|     |            |  |       | 12   | 다문화강사양성 | 초등학교, 어린이집            |
|     | 진천군        | 운전면허자격증  | 14    | 0    |         |                       |
| 괴산군 | 일본·중국어강사양성 | 56   | 0     |      |         |                       |
| 충남  | 공주시        | 기초소양, 요양보호사양성, 한국음식, 운전면허자격증   | 124   | 0    |         |                       |
|     | 아산시        | 네일아트, 컴퓨터, 풍선아트  | 130   | 0    |         |                       |
|     | 서산시        | 기초소양, 정보제공   | 54    | 0    |         |                       |
|     | 금산군        | 정보화, 직업교육  | 31    | 0    |         |                       |
|     | 부여군        | 기초소양, 유아영어지도사 양성, 홈페이지, 영상디지털, 근월실무마사지, 영어캠프통역강사                       | 33    | 5    | 유아영어지도사 | 어린이집, 초등학교            |
|     | 홍성군        | 정보화, 한국어능력시험, 전문언어강사자격증, 운전면허자격증, 일자리은행운영, 전문언어강사자격증                   | 77    | 9    | 전문언어강사  | 어학원, 복지관, 방과후교실       |
|     | 예산군        | 기초소양, 다문화전문강사양성, 드라이빙클래스, 통번역사양성                                       | 38    | 12   | 다문화강사양성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
| 전북  | 전주시        | 기초소양교육, 다문화강사양성, 아시아음식점창업, 오색전지공예                                      | 55    | 8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초등학교            |

| 센터  | 취창업교육 실시과목                   | 교육<br>인원                              | 연계<br>인원 | 연계과목 | 취업처          |             |
|-----|------------------------------|---------------------------------------|----------|------|--------------|-------------|
| 전남  | 익산시                          | 기초소양, 정보화                             | 45       | 0    |              |             |
|     | 정읍시                          | 컴퓨터, 방과후교사, 운전면허자격증, 의류리폼, 네일아트, 철보공예 | 78       | 6    | 방과후교사양성      | 초등학교, 어린이집  |
|     | 남원시                          | 기초소양, 정보화, 원어민강사양성, 다문화강사양성           | 51       | 13   | 원어민강사양성      | 어린이집, 유치원   |
|     | 김제시                          | 기초소양, 운전면허자격증, 컴퓨터                    | 77       | 0    |              |             |
|     | 완주군                          | 기초소양, 운전면허자격증, 컴퓨터                    | 61       | 0    |              |             |
|     | 장수군                          | 정보화                                   | 25       | 0    |              |             |
|     | 순창군                          | 한국요리                                  | 37       | 0    |              |             |
|     | 고창군                          | 기초소양, 제과제빵, 정보화                       | 40       | 0    |              |             |
|     | 여수시                          | 다문화요리강사양성                             | 15       | 0    |              |             |
|     | 순천시                          | 운전면허자격증                               | 17       | 0    |              |             |
|     | 나주시                          | 기초소양                                  | 10       | 0    |              |             |
|     | 광양시                          | 기초소양                                  | 10       | 0    |              |             |
|     | 곡성군                          | 기초소양, 압화, 천연비누                        | 12       | 1    | 천연비누         | 자연의 향기 보조강사 |
|     |                              |                                       |          | 1    | 압화 강의        | 꽃바라기 보조강사   |
| 고흥군 |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 20                                    | 0        |      |              |             |
| 화순군 | 기초소양, 한국어능력, 피부관리자격증, 정보화    | 77                                    | 0        |      |              |             |
| 장흥군 | 기초소양, 컴퓨터, 제과제빵, 한국음식        | 57                                    | 1        | 한국음식 | we start 급식실 |             |
| 해남군 | 기초소양, 원어민강사양성, 정보화           | 46                                    | 0        |      |              |             |
| 영암군 | 기초소양, 영어, 정보화                | 39                                    | 0        |      |              |             |
| 함평군 | 운전면허자격증                      | 20                                    | 0        |      |              |             |
| 영광군 | 원어민영어강사양성, 아트플라워, 봉제         | 33                                    | 0        |      |              |             |
| 장성군 | 기초소양,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지도자양성, 정보화 | 28                                    | 0        |      |              |             |
| 경북  | 포항시                          | 한국어능력시험, 의류리폼, 원어민보조강사보수              | 89       | 38   | 원어민보조강사      | 초등학교, YWCA  |
|     | 경주시                          | 컴퓨터, 쉐트, POP                          | 46       | 0    |              |             |
|     | 김천시                          | 요리교실, 자격증취득                           | 27       | 0    |              |             |
|     | 안동시                          | 컴퓨터, 다문화리더양성                          | 32       | 0    |              |             |

| 센터  | 취창업교육 실시과목           | 교육<br>인원  | 연계<br>인원 | 연계과목  | 취업처          |                   |
|-----|----------------------|---|----------|-------|--------------|-------------------|
| 경상  | 구미시                  | 쇼핑몰운영, 다문화강사양성, 경제, 컴퓨터, 운전면허자격증, 간호조무                | 86       | 3     | 다문화강사양성      | 어린이집, 초등학교        |
|     | 영주시                  | 기초소양, 다문화강사양성   | 28       | 0     |              |                   |
|     | 영천시                  | 정보화   | 7        | 0     |              |                   |
|     | 상주시                  | 기초소양, 컴퓨터, 취·창업자 조모임, 모듬북, 미용                         | 81       | 0     |              |                   |
|     | 문경시                  | 운전면허자격증, 컴퓨터, 전통음식                                    | 45       | 0     |              |                   |
|     | 경산시                  | ITQ한글자격증, 샌드위치및 밀반찬가게창업                               | 46       | 0     |              |                   |
|     | 의성군                  | 다문화교사양성, 컴퓨터  | 18       | 0     |              |                   |
|     | 예천군                  | 기초소양, 취·창업자조모임, 비즈공예, 손뜨개                             | 49       | 0     |              |                   |
|     | 울진군                  | 풍선아트, 천연비누  | 24       | 0     |              |                   |
|     | 창원시                  | 기초소양, 취업특강, 컴퓨터                                       | 51       | 0     |              |                   |
| 경남  | 마산시                  | 이미지메이킹, 패션페인팅, 홈패션, 악세사리, 양재의류수선, 원어민교사교재교구제작연구       | 103      | 18    | 원어민교사        | 방과후교실, 영어교실-영어교사  |
|     | 진주시                  | 기초소양  | 45       | 2     | 헤어자격증반       | 미용실               |
|     | 김해시                  | 기초소양, 통역사양성, 네일아트, 비즈공예, 한국어교실 보조강사양성, 준사례관리자양성, 모니터링 | 81       | 2     | 준사례관리자양성     | 김해센터-센터모니터사업      |
|     |                      |   |          | 10    | 통번역사양성       | 김해센터-통번역사업        |
|     | 밀양시                  | 리본공예, 정보화, 통역   | 38       | 2     | 통역사양성        | 지역아동센터, 밀양센터-통번역사 |
|     | 거제시                  | 기초소양, 기술지원및취업연계                                       | 96       | 0     |              |                   |
|     | 양산시                  | 영어, 컴퓨터, POP, 요리                                      | 58       | 0     |              |                   |
|     | 함안군                  | 기초소양, 정보화, TOPIK4급                                    | 38       | 0     |              |                   |
|     | 남해군                  | 정보화, 토피어리, 유차청  | 49       | 0     |              |                   |
|     | 함양군                  | 기초소양, 원어민영어, 꽃꽂이, 이미용                                 | 27       | 1     | 이미용          | 미용실               |
| 거창군 | 전문인력양성, 한국어능력, 원어민강사 | 38  | 1        | 원어민강사 | 지역아동센터-원어민강사 |                   |
| 제주  | 제주시                  | 정보화   | 43       | 0     |              |                   |
| 계   |                      | 5,884   | 445      |       |              |                   |

## 예산현안분석 목록

|    | 제 목  | 집 필                | 발간일     |
|----|--|--------------------|---------|
| 1  | 복권기금의 수익금 운용과 문제점                                | 이덕만 윤용중<br>박인화 허문규 | 2004. 7 |
| 2  |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 방안 연구<br>- 2005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 임명현                | 2004.12 |
| 3  | 사전예산제도(Pre-budget)와 국회의 예산 심의<br>-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이덕만<br>최종덕 윤용중     | 2004.12 |
| 4  | 중앙관서별 예산편성 불일치 사례 분석                             | 천우정 김영일<br>구현우 나아정 | 2004.12 |
| 5  | 4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인화<br>허문규 이덕만     | 2004.12 |
| 6  | 공무원 인건비예산의 정책별 성과분석                              | 천우정 나아정            | 2005. 4 |
| 7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 김영일<br>배준식 최희경     | 2005. 6 |
| 8  | 유기성폐기물 처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br>-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중심으로 | 서세욱 최미희            | 2005.10 |
| 9  | 국방비의 경제연관성 분석                                    | 배준식 김영일            | 2005.11 |
| 10 | 재난관리 재정분석  | 천우정 나아정            | 2005.12 |
| 11 |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 박인화<br>김철회 김성은     | 2007. 4 |
| 12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재정지출 전망                               | 임명현 이재윤            | 2007. 7 |
| 13 | 경수로사업 청산과 시사점                                    | 문종열                | 2007. 8 |
| 14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 박석희                | 2007. 8 |
| 1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과제<br>-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강대훈                | 2007.12 |
| 16 | 성 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                                | 윤용중                | 2007.12 |
| 17 | 외국의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제도 개혁과 시사점                        | 임동완                | 2008. 3 |
| 18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김민재                | 2008. 4 |
| 19 | 공적연금의 연금부채 인식을 위한 향후과제                           | 이상호                | 2008. 9 |

|    | 제 목  | 집 필   | 발간일     |
|----|--|---|---------|
| 20 |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 문종열   | 2008. 9 |
| 21 | 재정수반법안의 예상비용 분석  | 정문종   | 2008.11 |
| 22 | 수익형 민자사업의 재정부담과 개선방안                                       | 이재철   | 2008.12 |
| 23 | 직접지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세욱   | 2008.12 |
| 24 | 2009년도 예산안 쟁점현안  | 김경수, 김민재,<br>김대철, 여은구,<br>이은경, 이진우,<br>한정수, 허가형,<br>황선호 | 2008.12 |
| 25 | 2009년도 예산부수법 분석  | 엄석진   | 2009. 3 |
| 26 |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전용수   | 2009. 4 |
| 27 | 예산부수법률의 지방재정영향과 개선과제<br>- 제 18대 국회 통과 법률을 중심으로             | 김경수   | 2009. 6 |
| 28 | 비용추계의 법안 심사에 대한 영향 분석                                      | 정문종   | 2009. 9 |
| 29 | 2009년도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정금희   | 2009. 9 |
| 30 |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br>- 지역별 지방재정 감소 및 지방소비세 세입<br>증가효과를 중심으로 - | 김경수   | 2009.10 |
| 31 |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 김경수   | 2009.12 |
| 32 |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 비용추계                                       | 김태완   | 2009.12 |
| 33 |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정부 자료제출 실태분석<br>- 국회예산정책처 사례를 중심으로             | 오세일   | 2010. 3 |
| 34 |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개혁사례  | 서세욱   | 2010. 4 |
| 35 |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 박인화   | 2010. 9 |
| 36 | 2009년 통과 재정수반 법률 분석  | 원종욱   | 2010. 9 |
| 37 |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 김성은, 이진우  | 2010.10 |

[예산현안분석 제38호]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발 간 일 2010년 11월 29일  
편 집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대한인쇄사 (TEL 02·2279·7834)

---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팀 (TEL 02·788·465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412-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0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